

# 상속·증여세제가 세대 간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2016. 12.

오종현 · 최승문 · 강성훈



## 서 언

최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증여세의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의 기본 논리는 고령의 부모세대에 묶여 있는 부(wealth)를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자녀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고안하여 젊은 자녀세대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요국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증여세제는 상속세제보다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요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증여세제가 세부담 측면에서 상속세제보다 더 유리하거나 무차별하게 설계되어 있어, 부모세대의 부가 자녀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는 과세환경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등 상속·증여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제도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보다는 위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기초연구라 할 수 있다. 위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제가 부의 이전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젊은 자녀세대로 이전된 자산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분석, 일반균형모형 분석, 실증분석을 통해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전자산이 젊은 자녀세대의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상속·증여세제의 잠재적 대상자인 고자산가의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자산 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상속·증여세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응답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국내 연구와 달리 이질적 경제주체를 가정한 중첩세대 일반균

형모형을 사용하여 상속·증여세제가 세대 간 자산이전 및 소비 등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특히 동 모형은 각 세대별 자산 등의 분포를 내생화하여 불평등도에 대한 분석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Joulfaian(2004)의 실증회귀분석 모형을 좀 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 자료를 사용하여 증여세제가 증여시점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가족 간 자산이전이 경제주체의 소비, 저축,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변화가 경제주체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더 나아가 향후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할 경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오종현 박사, 최승문 박사, 강성훈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완성을 위해 유익한 코멘트를 주신 한상국 교수, 김진 교수, 김우철 교수, 송헌재 교수, 그리고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도움을 준 권선정 연구원과 원고교정에 도움을 준 출판담당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명백히 밝힌다.

2016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 가운데 상속세 존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상속·증여세 반대론자들은 상속·증여세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비 및 저축행위 등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상속·증여세 찬성론자들은 상속·증여세제가 누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부(wealth)의 집중화를 막고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자본이득이 일반적으로 고소득자 및 고자산가에게 집중되고 경제주체의 상속재산 중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미실현 자본이득의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상속·증여세를 찬성한다. 즉, 상속·증여세제가 소득세제의 보완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와 부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며, 상속·증여세는 형평성 관점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상속·증여세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속·증여세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경제주체의 소비 및 저축 행위, 그리고 노동 공급에 왜곡이 발생하고 조세회피 전략을 통한 자본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저성장·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세대 부담 관점에서 상속세제와 증여세제 간의 차이에 주목한다. 고령의 부모세대보다 젊은 자녀세대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저성장·고령화 사회에서는 부모세대의 부가 자녀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과세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를 살펴보면, 자산이전을 고려할 경우 전반적으로 증여세가 상속세와 동등하거나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는 주요 국가들이 고령의 부모세대에서 젊은 자녀세대로 부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는 과세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과 법정한계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 국가들과 달리 공제제도에 있어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증여세 공제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자녀세대로 이전된 부가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분석, 일반균형모형 분석, 실증분석을 통해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이전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상으로 이전된 자산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은 상속세 완화가 국가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상속·증여세제가 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부담 차이가 증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전자산이 개인의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고자산가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무상으로 이전된 자산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한 점은 본 연구의 기여도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상속·증여세제에 잠재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자산가의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자산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상속·증여세제가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이전의 동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자산이전 동기는 기존 패널자료를 통해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설문조사를 통해 고자산가 부모세대의 상속 및 증여의 동기와 함께 현재까지의 자산이전, 향후 자산이전 계획 및 이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증여세 공제제도를 축소 및 확대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증여세 부담의 변

화가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자산가 부모의 자녀세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자산이전 및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향후 자산이전을 받을 경우 소비, 부채상황, 저축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였다.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시도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국내 연구와 달리 이질적 경제주체를 가정한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상속·증여세제가 세대 간 자산이전 및 소비 등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가 사용한 이론적 모형은 Nishiyama(2002)의 중첩세대를 가정한 일반균형모형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상속세의 인하가 국가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있으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부담 차이가 증여행위와 궁극적으로 소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특히 동 모형은 각 세대별 자산 등의 분포를 내생화하여 불평등도에 대한 분석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속·증여세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부의 재분배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상속세제의 경제효과를 추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모형을 통해 상속·증여세제가 자산, 소득, 소비의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기여도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Joulfaian(2004)의 실증회귀분석 모형을 좀 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 자료를 사용하여 증여세제가 증여시점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Joulfaian(2004)의 실증회귀분석 모형을 토대로 상속증여세제가 증여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 김진·원중학(2006)과 김진(2009)이 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김진·원중학(2006)과 김진(2009)의 연구를 발전시켰다. 첫 번째는 김진·원중학(2006)과 김진(2009)의 분석대상 기간인 1975~2007년을 1965~2014년으로 확대하였다. 두 번째는 증여행위에 대한 대리변수를 실질증여세수가 아닌 실질증

여재산가액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증여행위가 상속·증여세제에 의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실질증여세수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증여행위에 대한 대리변수로 실질증여세수 대신 상속·증여세제에 의한 증여행위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실질증여재산가액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는 김진·원종학(2006)과 김진(2009)과 달리 증여세의 과세체계 및 공제제도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한계세율을 사용하여 증여가격을 추정하였다. 김진·원종학(2006)과 김진(2009)은 유효세율(=세수/과세표준)을 사용하여 증여가격을 추정하고 있으나, 유효세율은 과세체계 및 공제제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증여세율과 공제제도가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등 외부요인에 의해 유효세율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세율이 인하(인상)될 경우 증여세수는 감소(증가)하지만 증여세를 인하(인상)로 인해 증여행위가 촉진(위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표준이 증가(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유효세율이 세수 변동분과 과세표준 변동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증여세제와 공제제도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가족 간 자산이전이 경제주체의 소비, 저축,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다소 자료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이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고 있던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전자산을 포함한 소득과 소비, 저축, 노동공급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상속·증여세제가 세대 간 자산이전과 소비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보여준다. 부모세대 응답자는 증여세 공제금액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향후 증여 계획 금액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을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결과는 고자산가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세대 응답자는 부모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을 경우 소비보다는 부채상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는 고령의 부모세대에서 젊은 자녀세대로 부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과세환경을 조성하여도 증여행위 및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는 이전자산이 근로시간 또는 근로행태 변화

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현실적으로 상속·증여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자산가의 응답을 기초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설문조사의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달리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과 증첩세대 일반균형모형 분석 결과는 상속·증여세제가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계세율 1%p 증가는 실질증여재산가액의 2.55%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증여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할수록 증여행위는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균형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증여세 실효세율이 인하되거나 공제규모가 증가하여 증여세 부담이 완화될 경우 고령의 부모세대에서 젊은 자녀세대로의 자산이전이 확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산이전에 대한 절대적인 세부담이 감소하여 증여의 증가 폭이 상속의 감소 폭보다 더 커 세대 간 자산이전의 규모도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 분석결과들은 증여세제가 완화될 경우 고령의 부모세대에 묶여있던 자산이 젊은 자녀세대로 이전되는 시점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실증분석과 일반균형모형 분석에서는 경제주체의 조세회피행위가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실증분석과 일반균형모형 분석결과는 부모세대의 자산이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녀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된다 하더라도 소비에 대한 이전자산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증분석 결과는 증여를 통한 소득 증가가 소비와 저축 증가와 관련이 있으나, 그 효과가 상당히 미미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전자산으로 인해 개인의 총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증여를 통해 자산이 증가할 경우 단기적인 소비증대효과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보다 더 낮게 나타나며, 저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소득의 증가가 소비보다 저축 및 부채상환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이 단

기적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균형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이전자산으로 인해 젊은 자녀세대의 소비는 증가하지만 고령의 부모세대의 소비가 감소하여 경제 전체적인 소비 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속·증여세제의 완화를 통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세대로의 자산이전을 증가시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논리를 강하게 뒷받침하지 못한다.

자산이전이 자녀세대의 단기적인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인 소비확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제의 공제제도를 확대한다고 해서 실제로 자녀세대로의 자산이전이 증가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실증분석과 일반균형모형 분석 결과 상속·증여세제가 자산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실증분석과 일반균형모형 분석에서는 경제주체의 조세회피행위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만약 조세회피를 분석모형에 반영시킬 경우 본 연구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상속·증여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응답에 기초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속·증여세제를 완화하더라도 자산이전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과거 자금지원의 규모와 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세대는 자녀에게 평균 1억 6,24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자녀세대는 부모로부터 평균 3억 1,208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대부분의 자금지원이 주택자금과 결혼자금에 대한 지원이었다. 응답자들이 자금지원과 함께 증여세를 납부하였는지는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만약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증여세제의 직계존속공제금액을 다소 증가시키는 것은 자산이전을 증가시키는 효과보다는 증여세제를 현실화시키는 측면이 더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제는 부의 대물림을 축소하여 자산 불평등도를 개선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일반균형모형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가정된 경우처럼 부모가 이타적인 동기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부모는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자산 수준을 고려해 자산이전의 규모

를 결정한다. 즉, 소득이 적거나 자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는 자녀에게 더 많은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 경우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증여세제의 완화는 오히려 이러한 자발적인 부의 재분배를 활성화시켜 자산 불평등도를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이론적 모형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킴으로써 도출된 결론일 수 있지만,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상속·증여세는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고 부의 집중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상속·증여세제가 자산이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전자산이 단기적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상속·증여세제의 개편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상속·증여세제를 단기적인 소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생각하기보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는 기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일반균형모형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속·증여세제의 강화가 반드시 부의 재분배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국은 고령의 부모세대에 묶여 있는 부가 젊은 자녀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과세환경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다른 주요 국가들의 상속·증여세제만을 분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상속·증여세제는 소득세, 그리고 자본이득세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가 잘 설계된 국가일수록 상속·증여세제의 부담이 낮거나 폐지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목 차

I. 서론 .....	23
II. 상속·증여세제의 현황 및 특징 .....	26
1.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	26
2. 상속·증여세 수입 현황 .....	38
3. 상속·증여세 국제비교 .....	44
가. 미국 .....	44
나. 독일 .....	46
다. 일본 .....	48
라. 프랑스 .....	51
마. 영국 .....	53
바. 시사점 .....	55
III. 선행연구 .....	58
1. 자산이전 동기 .....	58
2. 해외연구 .....	60
가. 자산이전 동기에 대한 실증연구 .....	60
나. 상속·증여세가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 .....	62
다. 자산이전이 자녀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66
3. 국내연구 .....	67
IV. 설문조사 분석 .....	69
1. 설문조사의 개요 .....	69
2. 부모세대 설문조사 .....	70

---

가. 응답자 특성 .....	70
나. 증여 성향 .....	73
다. 제도 변경 시 증여액 변화 .....	75
3. 자녀세대 설문조사 .....	77
가. 응답자 특성 .....	77
나. 부모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소비 변화 .....	79
다. 부모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 변화 .....	83
4. 설문조사 분석에 대한 소결 .....	87
<b>V.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이론적 분석 .....</b>	<b>89</b>
1. 일반균형모형 설정 .....	89
가. 중첩세대가계(overlapping generations households) .....	90
나. 가계의 분포 .....	97
다. 동질적 기업 .....	98
라. 정부 .....	99
마. 일반경쟁균형 .....	100
2. 모수(parameter) 설정 .....	102
가. 주요 모수 설정 .....	102
나. 조세제도 관련 모수 설정 .....	104
3. 상속·증여세제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07
가. 자산이전 .....	107
나. 자산수준 .....	109
다. 노동시간 .....	110
라. 소비 .....	111
4. 상속·증여세제의 변화가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 .....	112
가. 자산 .....	112

---

나. 소득 .....	115
다. 소비 .....	116
5. 일반균형모형 분석에 대한 소결 .....	118
VI. 실증회귀분석 .....	120
1.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증여행위에 미치는 영향 .....	120
가. 가설설정 .....	120
나. 분석모형 .....	121
다. 분석자료 및 결과 .....	127
2. 소득이 소비, 저축,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	132
가. 가설설정 .....	132
나. 분석모형 .....	133
다. 분석자료 및 결과 .....	137
3. 실증회귀분석에 대한 소결 .....	140
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43
참고문헌 .....	146
부록 I. 자산이전에 관한 설문조사(부모세대) .....	151
부록 II. 자산이전에 관한 설문조사(자녀세대) .....	166
부록 III. 설문조사를 통한 자산이전에 대한 인식 분석 .....	180

---

표목차

〈표 II-1〉 상속·증여세율 ..... 27

〈표 II-2〉 상속·증여세 결정세액 계산 흐름도 ..... 27

〈표 II-3〉 상속세 기초·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 30

〈표 II-4〉 상속세 물적공제 ..... 31

〈표 II-5〉 증여세 인적공제 ..... 32

〈표 II-6〉 증여세 물적공제 ..... 32

〈표 II-7〉 상속·증여세의 법정세율구조 ..... 33

〈표 II-8〉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변화 ..... 37

〈표 II-9〉 증여세 공제 변화 ..... 38

〈표 II-10〉 상속재산종류별 과세대상 인원 및 상속재산가액 ..... 41

〈표 II-11〉 증여재산종류별 과세대상 인원 및 증여재산가액 ..... 42

〈표 II-12〉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 ..... 43

〈표 II-13〉 상속세의 과세대상 피상속인 비중 ..... 44

〈표 II-14〉 미국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 45

〈표 II-15〉 연도별 증여세 기본 공제 한도 ..... 45

〈표 II-16〉 연도별 상속·증여세 통합세액공제 한도 ..... 46

〈표 II-17〉 독일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 47

〈표 II-18〉 독일의 인적공제 ..... 48

〈표 II-19〉 일본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 49

〈표 II-20〉 일본의 상속세 인적세액공제 ..... 49

〈표 II-21〉 일본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 50

〈표 II-22〉 프랑스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직계존속에게 상속 및 증여한 경우 ..... 52

〈표 II-23〉 프랑스의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배우자 간 증여 ..... 52

---

〈표 II-24〉 프랑스의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서울: 형제자매 간 상속 및 증여	53
〈표 II-25〉 생애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별 서울	54
〈표 II-26〉 주요 국가별 과세방식	55
〈표 III-1〉 자산이전 동기	59
〈표 IV-1〉 부모세대 응답자 특성	71
〈표 IV-2〉 본인의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72
〈표 IV-3〉 본인의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	72
〈표 IV-4〉 현재까지 자녀 1인당 평균 지원한 금액	74
〈표 IV-5〉 향후 5년간 자녀 1인당 평균 지원 계획	74
〈표 IV-6〉 증여세 공제제도 변화 시나리오별 향후 5년간 자녀 1인당 증여 계획	76
〈표 IV-7〉 증여세 공제제도 변화 시나리오별 증여 계획 변화 비율	76
〈표 IV-8〉 자녀세대 응답자 특성	78
〈표 IV-9〉 부모로부터 현재까지 지원받은 금액	79
〈표 IV-10〉 지원금액별 집단별 소비	80
〈표 IV-11〉 지원금액별 집단별 부채상환	81
〈표 IV-12〉 지원금액별 집단별 저축 및 투자	81
〈표 IV-13〉 지원금액별 집단별 사업자금	82
〈표 IV-14〉 지원금액 변화에 따른 용도별 평균 사용금액	83
〈표 IV-15〉 부모로부터 자산이전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 의향	84
〈표 IV-16〉 지원금액별 하루 평균 근로시간 단축 정도	84
〈표 IV-17〉 성별·지원금액별 하루 평균 근로시간 단축 정도	85
〈표 IV-18〉 지원금액별 근로시간 단축 방법	85
〈표 IV-19〉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이전을 받았을 때 근로시간 변화	86
〈표 IV-20〉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이전을 받았을 때 직업상의 변화	87

---

〈표 V-1〉 주요 모수 설정 .....	104
〈표 V-2〉 조세제도 관련 모수 설정 .....	105
〈표 V-3〉 상속·증여세제에 따른 자산이전 규모 변화 .....	109
〈표 V-4〉 상속·증여세제에 따른 기초자산 수준 변화 .....	110
〈표 V-5〉 상속·증여세제에 따른 노동시간 변화 .....	111
〈표 V-6〉 상속·증여세제에 따른 소비 수준 변화 .....	111
〈표 V-7〉 상속·증여세제에 따른 기초자산 지니계수 변화 .....	114
〈표 V-8〉 상속·증여세제에 따른 소득 지니계수 변화 .....	116
〈표 V-9〉 상속·증여세제에 따른 소비 지니계수 변화 .....	117
〈표 VI-1〉 기초통계량 I .....	127
〈표 VI-2〉 회귀분석 결과 I .....	130
〈표 VI-3〉 회귀분석 결과 II .....	131
〈표 VI-4〉 가구 총소득 .....	138
〈표 VI-5〉 기초통계량 II .....	138
〈표 VI-6〉 회귀분석 결과 III .....	139

---

---

## 그림목차

[그림 II-1] 상속세 세수입 추이 .....	39
[그림 II-2] 상속세 피상속인 수 .....	40
[그림 II-3] 주택매매가격지수(종합) 추이 .....	40
[그림 II-4] 증여세 세수입 추이 .....	42
[그림 V-1] 개인의 생애주기 .....	91
[그림 V-2] 가계의 세 가지 유형 .....	91
[그림 V-3] 소득세제의 모수 설정 결과 .....	106
[그림 V-4] 상속·증여세제의 모수 설정 결과 .....	107
[그림 VI-1] 연도별 상속·증여세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s) .....	126
[그림 VI-2] 연도별 실질증여재산가액: 1965~2014년 .....	128
[그림 VI-3] 연도별 실질증여재산가액: 1965~1990년 .....	128
[그림 VI-4] 연도별 상속가격과 증여가격 .....	129
[그림 VI-5] 증여가격과 실질증여재산가액 간의 관계 .....	131

---

**부록 표목차**

〈부표 III-1〉 자금지원을 더 많이 하지 않은 이유(자산규모별) ..... 181

〈부표 III-2〉 자금지원을 더 많이 하지 않은 이유(총지원규모별) ..... 181

〈부표 III-3〉 자녀가 결혼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 182

〈부표 III-4〉 자녀가 주택 마련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 182

〈부표 III-5〉 자녀가 창업이나 사업확장 및 전환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 182

〈부표 III-6〉 자녀가 생계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 ..... 183

〈부표 III-7〉 자녀의 재산 증식을 위하여 ..... 183

〈부표 III-8〉 자녀에게 자금 지원 이유(자산규모별) ..... 184

〈부표 III-9〉 자녀에게 자금 지원 이유(총지원규모별) ..... 184

〈부표 III-10〉 자금지원을 통해 자녀에게 바라는 대가 ..... 184

〈부표 III-11〉 자금지원을 통해 자녀에게 바라는 대가 ..... 185

〈부표 III-12〉 삶이 5년 정도 남았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 및 상속 계획 ..... 185

〈부표 III-13〉 삶이 5년 정도 남았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 및 상속 계획 ..... 185

〈부표 III-14〉 상속 동기(자산규모별) ..... 186

〈부표 III-15〉 상속 동기(총지원규모별) ..... 186

〈부표 III-16〉 증여와 상속 결정방식(자산규모별) ..... 187

〈부표 III-17〉 증여와 상속 결정방식(총지원규모별) ..... 187

〈부표 III-18〉 자문(컨설팅) 또는 직접 검색 경험(자산규모별) ..... 188

〈부표 III-19〉 자문(컨설팅) 또는 직접 검색 경험(총지원규모별) ..... 188

〈부표 III-20〉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 차이가 상속/증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자산규모별) ..... 189

〈부표 III-21〉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 차이가 상속/증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총지원규모별) ..... 189

〈부표 III-22〉 여유자금 5억원 사용방법(자산규모별) ..... 190

---

〈부표 Ⅲ-23〉 여유자금 5억원 사용방법(총지원규모별) .....	190
〈부표 Ⅲ-24〉 여유자금 10억원 사용방법(자산규모별) .....	190
〈부표 Ⅲ-25〉 여유자금 10억원 사용방법(총지원규모별) .....	191
〈부표 Ⅲ-26〉 여유자금 50억원 사용방법(자산규모별) .....	191
〈부표 Ⅲ-27〉 여유자금 50억원 사용방법(총지원규모별) .....	191
〈부표 Ⅲ-28〉 자금 지원을 받은 후 부모님과과의 관계 변화 .....	192
〈부표 Ⅲ-29〉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더) 받지 못한 이유 .....	193

---



---

# I. 서론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목 중 가장 논쟁이 많은 세목이라 할 수 있다.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논쟁의 주요 이슈는 세율과 과세기반의 조정이지만,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오간다. 상속세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이유는 형평성이다. 부자 부모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상속세를 통해 부의 집중 및 대물림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맞을 뿐 아니라, 상속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입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국가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또한 철강 재벌 카네기의 주장대로 막대한 부를 물려받은 자식은 본인의 재능과 에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동기를 잃어버려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를 통해 이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이 또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상속세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와 경제적 효율성을 내세운다. 국가가 사망한 사람의 재산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가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상속세는 자본축적 동기를 훼손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속세는 성실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제도이며 저축에 대한 보상을 낮춰 과소비를 유도할 수도 있다.

최근 소득불평등과 더불어 부의 집중화가 심해지면서 부의 대물림, 기회의 대물림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다. 또한 최근의 저성장 기조의 중요한 요인인 소비 및 투자저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령의 부모세대에 묶여 있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자

녀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쟁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속·증여세제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상속·증여세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상속·증여세제가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상속·증여로 인한 이전소득의 증가가 궁극적으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 분석, 이론적 분석, 실증분석 등 세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맞는 실증분석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고자산 계층을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상속과 증여는 주로 고자산 계층에서 이루어지지만 동 계층에 대한 표본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기존 자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적 분석은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현실을 단순화하여 분석한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세대 간 자산이전 및 개인의 의사결정을 내생화한 뒤 상속·증여세제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와 자산의 분포 등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실증분석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증여세제가 자산이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이전이 소비, 저축, 노동공급 등 개인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세대 간 자산이전 및 소비 등 경제주체가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상속·증여세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에 해당한다. 상속·증여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한다. 상속·증여세의 전체적인 세부담 확대 혹은 축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간의 선택, 기업상속 공제제도의 확대 혹은 축소, 상속세와 증여세의 조화 등 많은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별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

하기 보다는 상속·증여세제의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이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제도와 현황을 소개한다. 제III장에서는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제IV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상속·증여세가 자산이전과 소비, 근로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제V장에서는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상속·증여세제가 세대 간 부의 이전과 소비, 저축,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한다. 제V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과거 상속세, 증여세 통계와 재정패널 등 기존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상속·증여세의 변화가 자산이전, 소비, 저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V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 Ⅱ. 상속·증여세제의 현황 및 특징

---

### 1.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일반적으로 사람은 생애기간 동안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재산을 사망하면서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부(wealth)는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서민·중산층 계층이 상위계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의 집중화를 억제하고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사망으로 인한 무상이전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한편 재산의 무상이전은 생전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속세만 존재한다면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생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이전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과 공제제도가 상이하다. 다음의 “가.” 절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 가. 과세체계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과 각 구간에 적용되는 법정한계세율이 서로 동일하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체계를 가지며, 법정한계세율의 범위는 10~50%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그리고 최종 결정세액은 산출된 과세표준에 <표 II-1>에 제시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뒤 여기에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표 II-1〉 상속·증여세율

과세구간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표 II-2〉 상속·증여세 결정세액 계산 흐름도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 과세제외 재산	- 과세제외 재산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채무부담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10년 내 증여재산가산액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재산공제 등
	- 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상속분 할증세액(30%)	+ 세대생략상속분 할증세액(30%)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조특법」상 감면세액 등
- 세액공제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 연부연납, 몰납, 분납세액 등	+ 주식보유한도초과 가산세 등
= 고지세액	= 총 결정세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pp. 171~172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과세방식과 공제제도는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무상이전재산에 대해서도 결정세액이 다르게 산출된다. 우선 과세방식을 살펴보자. 과세방식은 크게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산세 방식은 부모 등이 무상이전재산 전부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총 무상이전재산 중 취득자가 실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며, 증여세는 수증인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증여세는 수증자의 취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따라서 상속세 총액은 상속인의 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증여세 총액은 수증인의 수에 영향을 받게 된다.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차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으로 부과한 경우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한 경우로 구분하여 예를 들어보자. 피상속인 A가 상속재산 1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1명에게 상속했다고 가정하자. 논의의 편의를 위해 상속공제와 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상속지분율은  $3/5(=1.5/2.5)$ 이고 자녀의 상속지분율은  $2/5(=1/2.5)$ 이다.<sup>1)</sup> 유산세 방식의 경우 <표 II-1>의 과세표준 구간과 상속세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상속세액 총액은 2억 4천만원이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세액은 상속세 총액에 상속지분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배우자의 상속세액은 1억 4,400만원이며, 자녀는 9,600만원이다. 상속인의 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상속세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유산취득세 방식의 경우를 살펴보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10억원이며 이를 배우자와 자녀 1명의 지분별로 안분하면 배우자와 자녀의 과세표준은 각각 6억원( $=10\text{억원} \times (3/5)$ )과 4억원( $=10\text{억원} \times (2/5)$ )이 된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세액은 각각 1억 2천만원과 7천만원이며, 상속세액 총액은 1억 9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속세액

1)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제시된 상속분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3&ccciNo=2&cnpClsNo=1\(접속일: 2016. 10. 19\).](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3&ccciNo=2&cnpClsNo=1(접속일: 2016. 10. 19).)

총액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한 경우보다 5천만원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세액 역시 각각 2,400만원과 2,600만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가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고 유산취득세 방식 하에서는 상속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명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각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과세방식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Mirrlees(2011, pp. 356~367)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을 근거로, 즉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은 나성길 외(2015, pp. 32~36)가 제시한 것처럼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한 위장분할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세무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어느 과세방식을 사용할 것인가는 상속·증여세의 목적과 세무행정 능력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무행정 비용 등을 감안하여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과세방식만을 보면, 세부담 측면에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제제도를 살펴보면,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속세 공제제도를 먼저 살펴보자.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 공제를 제외한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표 II-3>에서 제시된 것처럼, 자녀와 연로자는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장애자는 1천만원 × [기대여명의 연수의 공제혜택을 받는다. 배우자 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만약 배우자 공제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또한 정부는 정책목적의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그 대표적인 공제가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가업상속에 대해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영농상속공제는 농어민의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영농상속에 대해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상속공제제도와 영농상속공제제도는 다른 공제제도와 달리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기업상속공제제도는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즉, 기업영위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200억원을, 15년인 경우에는 300억원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영농상속공제제도는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그 밖에 상속인이 순금융재산과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했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화재,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도 손실가액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II-3〉 상속세 기초·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구분		공제액	한도	
배우자 공제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30억원	
공제 1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 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자 공제	1천만원 × 기대여명 <sup>1)</sup> 의 연수	
공제 2	일괄공제	5억원		
공제 적용 금액		배우자 공제 + 공제 1과 공제 2 중 큰 금액		

주: 1) 2010년 12월 27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0조 제1항 제4호 중 “75세까지의 잔여연수”를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로 함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

〈표 II-4〉 상속세 물적공제

구분	공제액	한도
기업상속공제	기업상속재산가액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 가업영위기간 15년 이상: 300억원 가업영위기간 20년 이상: 500억원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1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금융채무)	2천만원 초과시 (1)과 (2) 중 작은 금액: (1)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2) 2억원 2천만원 이하시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및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훼손된 손실가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액의 80%	5억원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2조~제24조

증여세제상의 공제제도는 상속세제상의 공제제도와 다르게 운영된다. 증여세제상 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된다. 그리고 인적공제는 배우자공제, 직계존속공제, 직계비속공제, 미성년자공제, 기타친족공제로 나누어진다. 상속세제에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제도가 있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배우자공제 제외)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하지만 증여세는 일괄공제제도가 없다. 또한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한다. 이때,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의 배우자공제액은 상속세의 경우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합산 5천만원을 공제받는다. 이는 상속세의 경우에도 자녀당 5천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자녀에 대한 공제제도는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상속보다 불리하다.

공제방법 역시 증여가 상속보다 다소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증여세제에서는 직계존속으로 분류된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총 재

산에 대해 총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제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이 발생할 때마다 자녀 1인당 5천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나성길 외(2015, p. 275)에서 제시된 예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성인이 된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증여세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으로서 동일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총 증여재산 2억원에 1억원이 아닌 5천만원만 공제금액에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으로서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총공제금액은 1억원이 아닌 5천만원이다.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세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망할 때마다 자녀 1인당 5천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직계비속 공제, 미성년자 공제, 기타친족 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II-5〉 증여세 인적공제

구분	공제액
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2천만원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제는 상속세제와 마찬가지로 재해손실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증여재산이 재난에 의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만큼 공제한다.

〈표 II-6〉 증여세 물적공제

구분	공제액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손실가액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나. 과세체계 변천

우리나라는 1996년 이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서로 다른 과세체계를 가졌다. 다시 말해, <표 II-7>에 제시된 것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이 서로 달랐다. 각 과세구간에 대한 임계치를 비교해보면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더 높게 설정되었다. 이는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증여세가 상속세에 비해 같거나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3천만원일 경우 증여세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상속세는 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1996년 이전에는 상속세의 경우 1억원의 기초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인적공제 규모 역시 상속세가 더 컸다. 따라서 1996년 이전에는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더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 1997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과세구간과 세율을 가지게 되며,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의 차이는 공제제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표 II-7> 상속·증여세의 법정세율구조

(단위: %)

1996.12.31. 이전		1997.1.1.~1999.12.31.		2000.1.1. 이후	
〈상속세〉		과세구간 및 세율 단일화		과세구간 및 세율 단일화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2억 5천만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5억 5천만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5억 5천만원 초과	40	50억원 이하	40	30억원 이하	40
〈증여세〉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2천만원 이하	10				
1억 5천만원 이하	20				
3억원 이하	30				
3억원 초과	40				

주: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와 같은 세대생략 상속·증여 시 30% 할증 과세  
 자료: 김진·원종혁(2006), <표 II-3>, p. 33

〈표 II-8〉과 〈표 II-9〉에 제시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제도를 연도별로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공제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상속세는 기초공제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상속세의 기초공제는 1993년까지는 기초공제액이 6천만원이었으며, 이는 1994년과 1997년에 각각 1억과 2억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액과 배우자공제액(배우자 제외)을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일괄공제는 1997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 일괄공제액은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5억원이었으며 이 금액은 지금까지 적용된다.<sup>2)</sup>

인적공제로는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로 구분된다. 배우자 공제는 1996년에는 결혼 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1996년부터 실제 상속받은 가액과 [1억원 + 결혼 연수 × 1,200] 중 하나를 상속인이 선택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게 되었으며, 1997년부터는 30억원을 한도로 하여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받는다.

자녀공제 금액은 1997년에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공제액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 5천만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미성년자 공제금액은 1994년에 [1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에서 [3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로, 1997년에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로, 2016년에는 [1천만원 × 19세까지의 연수]로 점차 확대되었다. 연로자 공제는 2015년까지 1인당 3천만원으로 유지되다가 2016년에 1인당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장애인 공제금액은 1997년에 [3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에서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로, 2016년에 [1천만원 × 기대여명까지의 연수]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장애인 공제금액 계산 시 사용되었던 75세까지의 연수는 1999년부터 기대여명까지의 연수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기대수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2) 도입 당시, 기업상속에 대해서는 일괄공제액이 6억원, 영농상속에 대해서는 2억원이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연혁 참조). 기업상속과 영농상속의 일괄공제액이 달랐던 이유는 기업상속과 영농상속의 기초공제액이 각각 1억원과 2억원으로 서로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인적공제는 배우자 공제, 직계존비속 공제, 미성년자 공제, 기타공제로 구분된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기초공제와 일괄공제가 없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연도 증여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과세 대상 증여를 고려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란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5년이었으며 1999년 이후부터는 10년을 의미한다.

배우자 공제액은 1990년 150만원이었으나 1991년에 [1,500만원 + (결혼 연수 × 300만원)]로 상향 조정되었고, 1994년, 1996년에 각각 [1,500만원 + (결혼 연수 × 300만원)], [3천만원 + (결혼 연수 × 300만원)], [5천만원 + (결혼 연수 × 300만원)]으로 다시 상향조정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결혼 연수와 상관없이 5억원을 공제해주었으나 2003년에 공제금액이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2008년에 공제액이 다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이 금액은 현재까지 적용된다. 직계존비속 공제액은 1990년 150만원이었으나 1991년, 1994년, 2014년에 각각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미성년자 공제액은 2013년까지 1,500만원이었으나 2014년에 2,000만원으로 증가한 후 현재까지 적용된다. 기타존속 공제액은 1990년에 150만원이었으며, 1991년에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2015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2016년에 공제금액이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증여세 공제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공제액은 상속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막기 위해 2001년에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2004년에는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증가하였다. 증여세 유형별 포괄주의와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증여행위에 대한 정의가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증여세 세부담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과 법정한계세율을 가지고 있으나 과세방식과 공제제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상속세는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증여세는 그렇지 않다. 과세방식과 공제제도를 감안해보면, 우리나라 세부담 측면에서 상속세제가 증여세제보다 더 유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1년과 2004년에 증여세 유형별 포괄주의와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어 증여세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되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부모 등의 상속 및 증여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부모가 자식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상속보다는 증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증여시점을 뒤로 연기하거나 증여계획을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제Ⅵ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표 II-8〉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변화

적용기간	기초 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료자공제	
91.1.1 ~ 93.12.31	6천만원	1억원+(결혼 연수×600만원)	1인당 2,000만원 (공제대상 자녀수 2인으로 제한)	1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1인당 3,000만원	3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94.1.1 ~ 95.12.31	1억원	1억원+(결혼 연수 × 1,200만원)	1인당 2,000만원 (공제대상 자녀수 2인으로 제한)	3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1인당 3,000만원	3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96.1.1 ~ 96.12.31	1억원	다음 중 선택제로 공제 (1) 1억원 + (결혼 연수 × 1,200만원) (2)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받은 가액	1인당 2,000만원 (공제대상 자녀수 2인으로 제한)	3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1인당 3,000만원	3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97.1.1 ~ 98.12.31	2억원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받은 가액 (30억원 한도)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99.1.1 ~ 15.12.31	2억원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받은 가액 (30억원 한도)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 기대여명의 연수 <sup>1)</sup>
16.1.1 ~ 이후	2억원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받은 가액 (30억원 한도)	1인당 5,000만원	1천만원 × 19세까지의 연수	1인당 5,000만원	1천만원 × 기대여명의 연수

주: 1) 2010년 12월 27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0조 제1항 제4호 중 "75세까지의 잔여연수"를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로 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law.go.kr/nwFvslslmi0R.do?isSeq=109453>, 접속일: 2015. 6. 22).

자료: 강성훈·윤지현(2015), 〈표 IV-14〉 p. 271

〈표 II-9〉 증여세 공제 변화

적용기간	합산 기간	공제내용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90.1.1 ~ 90.12.31	5년간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91.1.1 ~ 93.12.31	5년간	1,500만원 + (결혼 연수 × 1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94.1.1 ~ 95.12.31	5년간	3,000만원 + (결혼 연수 × 300만원)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96.1.1 ~ 96.12.31	5년간	5,000만원 + (결혼 연수 × 500만원)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97.1.1 ~ 98.12.31	5년간	5억원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99.1.1 ~ 02.12.31	10년간	5억원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03.1.1 ~ 07.12.31	10년간	3억원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08.1.1 ~ 13.12.31	10년간	6억원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14.1.1 ~ 15.12.31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 직계비속: 3,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500만원
16.1.1 ~ 이후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1,000만원

자료: 강성훈·윤지현(2015), 〈표 IV-15〉, p.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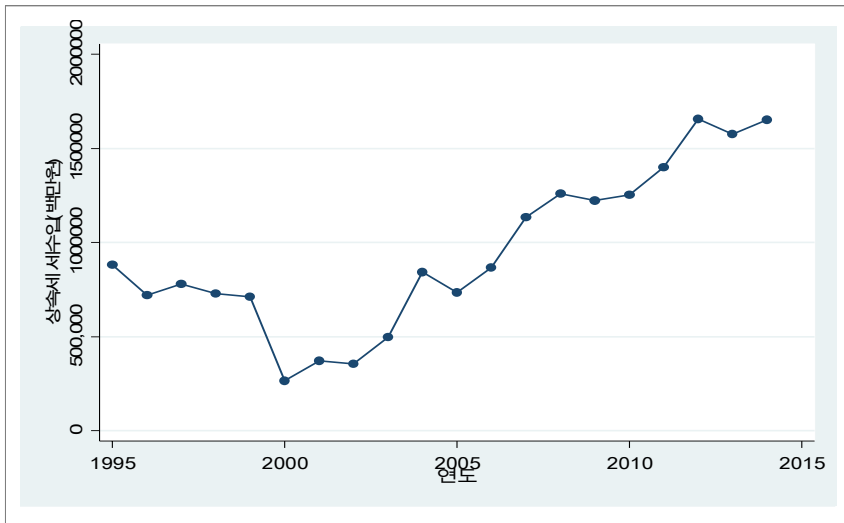
## 2. 상속·증여세 수입 현황

상속세 수입은 1995년 이후 완만한 하락추세에 있다가 2000년에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그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1997년 이후 상속세 수입의 감소추세는 상속세 공제제도 변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1997년부터 기초공제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배우자 공

제 제외)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혜택이 제공되었다. 1997년부터 상속공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과세대상이 1997년 이전과 비교하여 감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산가치의 하락도 과세표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상속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하락하였다. 2000년대 상속세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1)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였고, (2) 2004년부터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제도와 2006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로 인해 과세표준이 증가하였다(조명환, 2010; 강성훈·윤지현, 2015). <표 II-11>을 살펴보면, 2007년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2006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71.2% 증가하였으며, 이는 다른 상속재산 종류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1] 상속세 세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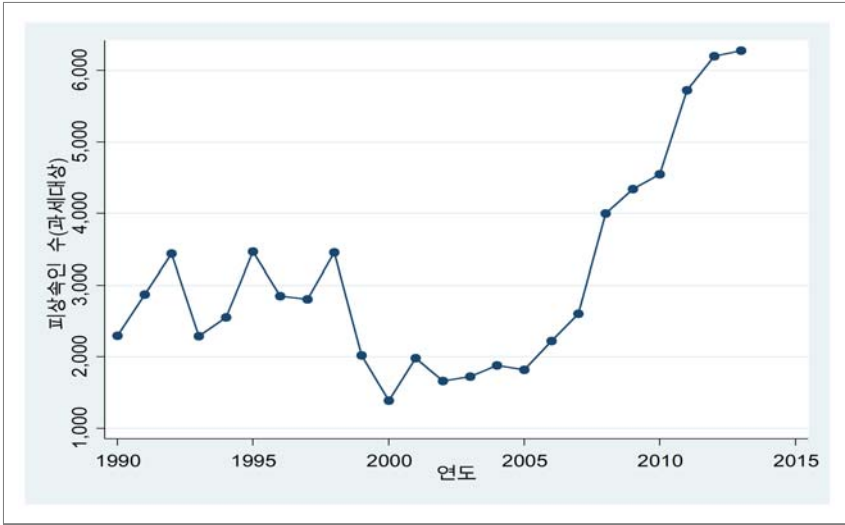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2] 상속세 피상속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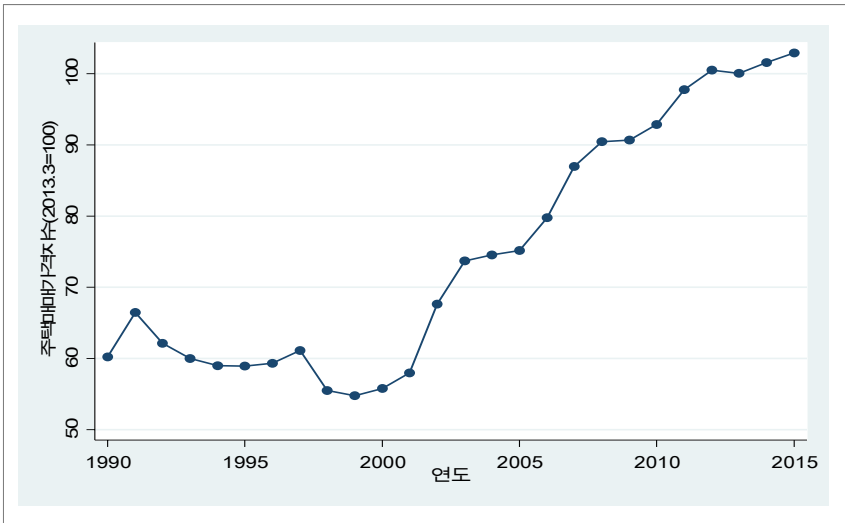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3] 주택매매가격지수(종합) 추이

(단위: 2013년 3월=100)



자료: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연도

〈표 II-10〉 상속재산종류별 과세대상 인원 및 상속재산가액

(단위: 천명,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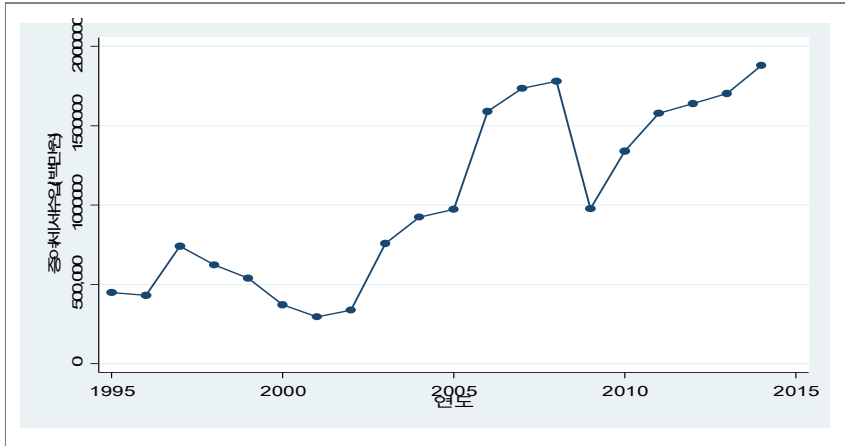
구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상속자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5	-	1,633.2	-	525.7	-	643.8	-	611.2	-	225.0
2006	-	1,839.8	-	<b>705.8</b>	-	575.9	-	647.9	-	252.0
2007	1.9	2,293.3	<b>1.8</b>	<b>1,208.2</b>	0.5	905.2	2.3	931.5	1.1	301.3
2008	2.8	2,982.8	2.9	1,977.7	0.6	915.2	2.8	1,049.0	1.2	349.3
2009	3.1	3,408.8	3.1	2,254.2	0.8	879.9	3.0	1,299.1	1.4	507.2
2010	3.1	3,201.8	3.1	2,038.9	0.7	523.0	3.2	1,273.4	1.2	431.9
2011	3.6	3,544.0	3.6	2,389.4	0.8	804.0	3.7	1,402.6	1.3	396.2
2012	3.8	3,450.6	3.9	2,410.7	0.8	939.1	4.0	1,708.9	1.5	756.7
2013	4.2	3,385.5	4.0	2,375.5	0.9	724.0	4.2	1,621.6	1.6	410.7
2014	4.8	4,242.9	4.8	2,833.2	1.0	1,330.6	5.0	1,869.0	1.9	503.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증여세 수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다가 2002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 세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1997년 이후 증여세 수입의 감소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재산가치가 하락하였고 이와 더불어 1997년 배우자에 대한 공제액이 5억원으로 크게 상향조정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 초반 증여세 수입의 증가는 2001년과 2004년에 각각 유형별 포괄주의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조명환, 2010; 강성훈·윤지현, 2015). 증여세 유형별 포괄주의와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적 상속 및 증여행위를 막기 위해 실제 증여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 등이 수반되어 실제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기존에는 과세대상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였으나, 변칙적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증여세 수입은 2009년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배우자에 대한 공제액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여 유가증권과 금융자산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II-11>을 살펴보면, 2009년 유가증권과 금융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은 2008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51.9%와 11.5% 감소하였으며 이는 다른 증여재산종류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4] 증여세 세수입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11> 증여재산종류별 과세대상 인원 및 증여재산가액

(단위: 천명, 억원)

구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증여자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5	-	3,789.7	-	1,278.3	-	1,293.8	-	1,225.8	-	268.7
2006	-	4,368.4	-	2,691.1	-	1,489.1	-	1,831.2	-	410.7
2007	58.8	4,905.6	35.7	4,393.7	5.4	2,736.4	28.5	2,715.8	2.6	416.7
2008	45.5	3,598.9	23.3	2,908.2	<b>9.9</b>	<b>4,282.7</b>	<b>22.7</b>	<b>2,540.5</b>	2.4	380.9
2009	45.5	3,459.4	25.2	2,859.0	<b>6.5</b>	<b>2,062.1</b>	<b>23.2</b>	<b>2,247.6</b>	3.2	428.2
2010	39.5	3,663.7	24.6	3,202.7	8.5	2,334.7	27.6	3,078.8	4.2	786.4
2011	47.9	4,819.6	29.4	3,686.1	14.1	3,365.4	36.3	3,637.4	9.3	1,014.0
2012	32.2	3,534.9	19.5	2,248.0	10.6	3,298.2	31.8	2,889.7	4.9	965.3
2013	35.9	4,064.6	20.9	2,507.6	12.0	3,743.6	32.3	3,490.5	16.6	1,851.1
2014	35.6	4,226.5	21.4	2,777.7	12.6	3,038.8	34.2	3,995.7	10.4	1,186.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상속세와 증여세 수입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국세에서 차지하는 세수입 비중이 높지 않다. 2014년 기준으로 국세 대비 상속세와 증여세 세수입 비중은 각각 0.84%와 0.96%이며, 이는 2005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각각 0.23%p와 0.15%p 증가한 수준이다. 국세 대비 상속세 수입 비중은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증여세 수입 비중은 2006년에 0.41%p 증가한 후 2009년까지 하락추세에 있다가 2010년부터 상승추세로 전환되었다. 최근 5개년 동안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국세의 증가속도보다 상속·증여세 수입의 증가속도가 더 빠름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고 2008년 금융위기로 침체했던 증권시장 역시 2009년부터 서서히 회복하였기 때문이다.

〈표 II-12〉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상속세		증여세	
	금액	국세 대비 비중	금액	국세 대비 비중
2005	735,098	0.61	972,564	0.81
2006	866,508	0.67	1,591,740	1.22
2007	1,134,452	0.74	1,736,154	1.13
2008	1,260,256	0.80	1,778,804	1.13
2009	1,223,105	0.79	977,525	0.63
2010	1,252,745	0.76	1,341,183	0.81
2011	1,399,607	0.78	1,577,421	0.88
2012	1,657,394	0.86	1,639,184	0.85
2013	1,575,509	0.83	1,702,562	0.90
2014	1,652,829	0.84	1,878,801	0.9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상속세 수입 증가의 또 다른 이유는 과세대상 피상속인 비중의 증가이다. 2014년 과세대상 피상속인 비중은 2.64%이며, 이는 2010년의 경우와 비교하

여 1.24%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각 상속세 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액 한도가 동일하게 유지된 반면 상속재산의 가치는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해 증가하여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표 II-13〉 상속세의 과세대상 피상속인 비중

(단위: 명, %)

연도	총 피상속인 수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	비과세대상 피상속인 수	과세대상 피상속인 비중
2010	325,045	4,547	320,498	1.40
2011	276,972	5,720	271,252	2.07
2012	287,094	6,201	280,893	2.16
2013	282,232	6,275	275,957	2.22
2014	285,723	7,542	278,181	2.6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3. 상속·증여세 국제비교

본 장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상속·증여세에는 일반적으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 분석에서는 인적공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가. 미국<sup>3)</sup>

미국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미국은 과세구간을 12개로 구분하고 각 구간별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표 II-14〉에서 제시된 것처럼, 최저법정한계세율은 18%, 최고법정한계세율은 40%이며 이는 각각 1만달러와 100만달러 초과 시 적용된다.

3) 미국의 상속·증여세 공제제도에 대한 설명은 EY(2016)의 『미국편』과 미국 국세청(IRS)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하였다.

〈표 II-14〉 미국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단위: 달러, %)

과세구간	세율
0 초과 ~ 10,000 이하	18
10,000 초과 ~ 20,000 이하	20
20,000 초과 ~ 40,000 이하	22
40,000 초과 ~ 60,000 이하	24
60,000 초과 ~ 80,000 이하	26
80,000 초과 ~ 100,000 이하	28
100,000 초과 ~ 150,000 이하	30
150,000 초과 ~ 250,000 이하	32
250,000 초과 ~ 500,000 이하	34
500,000 초과 ~ 750,000 이하	37
750,000 초과 ~ 1,000,000 이하	39
1,000,000 초과	40

자료: IBFD, *Individual Taxation-United States*, 2016, p. 25

미국의 주요 공제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부부 간의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매년 수증자 1인당 2016년 기준 1만 4천달러를 기본 공제한다. 이는 증여자가 수증인에게 생활비 목적 등으로 1년에 1만 4천달러를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도 상속세는 장례비용, 의료비, 재해손실 등이 기본 공제되고, 증여세는 교육비, 의료비 등이 기본 공제되며, 공익성 기부금은 공통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표 II-15〉 연도별 증여세 기본 공제 한도

(단위: 달러)

연도	한도
2011	13,000
2012	13,000
2013	14,000
2014	14,000
2015	14,000
2016	14,000

자료: IR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whats-new-estate-and-gift-tax> (접속일: 2016. 8. 12).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통합세액공제(unified estate and gift tax credit)라는 독특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한다. 통합세액공제 제도란 평생 동안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 세 부담 없이 상속 또는 증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평생 동안 세액공제의 총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미국은 상속·증여세에 대한 통합된 하나의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총납부세액 중 통합세액공제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세액공제 한도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재설정되며, 배우자의 미사용한 통합세액공제액은 기본 통합세액공제액에 합산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2016년 현재 통합세액공제 한도액은 545만달러이다(〈표 II-16〉 참조).

〈표 II-16〉 연도별 상속·증여세 통합세액공제 한도

(단위: 달러)

연도	한도
2011	5,000,000
2012	5,120,000
2013	5,250,000
2014	5,340,000
2015	5,430,000
2016	5,450,000

자료: IR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whats-new-estate-and-gift-tax>  
(접속일: 2016. 8. 12).

#### 나. 독일<sup>4)</sup>

독일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이는 상속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총 상속재산가액에 상관없이

4) 독일의 상속·증여세 공제제도에 대한 설명은 EY(2016)의 『독일편』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하였다.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토대로 납부세액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독일은 과세 구간을 7개로 구분하고 각 구간별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다른 국가들과 달리 상속인·수증자를 크게 다음의 3 조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피상속인·증여자와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표 II-17〉 참조).

- 조세그룹(Tax Group) I: 배우자, 자녀, 손주, 부모 및 조부모 등
- 조세그룹(Tax Group) II: 형제, 자매, 조카, 의붓 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이혼한 배우자 등
- 조세그룹(Tax Group) III: 그 밖의 기타

〈표 II-17〉 독일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단위: 유로, %)

과세구간	세율		
	조세그룹 I	조세그룹 II	조세그룹 III
0 초과 ~ 75,000 이하	7	15	30
75,000 초과 ~ 300,000 이하	11	20	30
300,000 초과 ~ 600,000 이하	15	25	30
600,000 초과 ~ 6,000,000 이하	19	30	30
6,000,000 초과 ~ 13,000,000 이하	23	35	50
13,000,000 초과 ~ 26,000,000 이하	27	40	50
26,000,000 초과	30	43	50

자료: IBFD, *Individual Taxation-Germany*, 2016, p. 17

독일의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증여자와의 친족관계가 가까울수록 인적공제액이 크다. 인적공제 중 배우자 등이 50만유로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자녀 등과 손주, 부모 및 조부모 등 순서로 크게 나타난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최대 25만 6천유로와 52만유로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sup>5)</sup>

5) 27세 이전 자녀에게 추가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액은 상속 및 증여 시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표 II-18〉 독일의 인적공제

(단위: 유로)

구분		공제액
조세그룹 I	배우자 등	500,000
	자녀 등	400,000
	손주, 부모 및 조부모 등	200,000
	그 밖의 기타	100,000
조세 그룹 II		20,000
조세 그룹 III		20,000

자료: IBFD, *Individual Taxation-Germany*, 2016, p. 17

#### 다. 일본<sup>6)</sup>

일본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일본의 상속세 납부세액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EY, 2016).

- (1) 총상속재산에서 기본공제 등을 차감하여 총과세표준 산출
  - 2016년 기준 기본공제액: 3천만엔과 [600만엔 × 법정 상속인의 수의 합
- (2) 법정상속비율을 적용하여 각 법정 상속인의 과세표준 산출
- (3) 〈표 II-19〉에 제시된 과세표준구간별 법정한계세율을 적용하여 각 법정상속인의 상속세액 산출
  -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한계세율에 20%를 추가하여 상속세액 산출
- (4) 각 법정 상속인의 상속세액을 합산하여 총상속세액 산출
- (5) 실제 상속재산비율(각 법정 상속인이 취득한 과세가격/과세가격 합계액)을 적용하여 각 법정 상속인의 상속세액 다시 산출
- (6) 각 법정상속인의 납부세액에서 인적세액공제(예: 배우자세액공제, 미성년자세액공제, 장애인세액공제 등) 등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 산출

6) 일본의 비과세·감면제도와 공제제도에 대한 설명은 EY(2016)의 『일본편』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하였다.

〈표 II-19〉 일본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단위: 백만엔, %)

과세구간	세율
0 초과 ~ 10 이하	10
10 초과 ~ 30 이하	15
30 초과 ~ 50 이하	20
50 초과 ~ 100 이하	30
100 초과 ~ 200 이하	40
200 초과 ~ 300 이하	45
300 초과 ~ 600 이하	50
600 초과 ~	55

자료: EY,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6, p. 171

일본의 인적세액공제는 배우자, 미성년자, 장애인 세액공제가 있다. 배우자는 총산출세액에서 총상속재산금액 대비 [1억 6천만엔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금액 중 큰 금액과 [실제 취득한 자산금액] 중 작은 금액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10만엔을 곱한 금액만큼, 장애인은 85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10만엔(특수 장애인인 경우에는 20만엔)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표 II-20〉 일본의 상속세 인적세액공제

(단위: 백만엔, %)

구분	세액공제액
배우자 세액공제	- 총산출세액 × (Min [Max [1억 6천만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금액], 실제 취득 재산금액] ÷ [총상속재산금액])
미성년자 세액공제	- [20-상속인 나이] × 10만엔
장애인 세액공제	- [85-상속인 나이] × 10만엔(특수 장애인인 경우에는 20만엔)
단기 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상속인의 상속세액을 조정
국외재산 세액공제	- 상속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아 해당 국가에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 이 납부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자료: EY,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2016, p. 17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납부세액 산출 시 피상속인이 납부한 상속세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고려해준다. 일본은 상속인이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해당 국가에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고려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일본의 증여세제는 상속세제보다 세부담 관점에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법정한계세율을 살펴보면, <표 II-21>에서 제시된 것처럼 각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되는 법정한계세율의 범위(10~55%)는 동일하나 각 법정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 임계치가 상속세의 경우보다 증여세가 낮다.

〈표 II-21〉 일본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단위: 백만엔, %)

과세구간	세율
0 초과 ~ 2 이하	10
2 초과 ~ 3 이하	15
3 초과 ~ 4 이하	20
4 초과 ~ 6 이하	30
6 초과 ~ 10 이하	40
10 초과 ~ 15 이하	45
15 초과 ~ 30 이하	50
30 초과 ~	55

자료: EY,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6, p. 173

일본은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불리하게 과세체계가 설계되었으나, 부(wealth)가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비과세 또는 감면제도와 다양한 공제제도를 운영한다. 첫째, 일본은 60세 이상이 된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 또는 손주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2,500만엔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2,500만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증여세,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받은 증여재산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때,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는 상속세액 산출 시 차감된

다. 둘째, 일본은 증여에 대하여 매년 110만엔을 기초공제하며 이와 더불어 주택취득, 교육지원 등을 목적으로 증여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한다. 20세 이상 수증자가 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500만엔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천만엔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700만엔을 공제한다. 2014년도에 주택자금공제액은 500만엔이었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법개정을 통해 소비세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에 공제금액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주택자금공제액이 상향조정된 것이며, 그 공제액은 서서히 2013년 수준(700만엔)으로 하락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에너지절약주택자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일반주택보다 더 높은 공제혜택을 제공하여,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천만엔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500만엔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200만엔을 공제한다. 또한 30세 이하 수증인에게 교육자금을 증여한 경우에 2013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500만엔까지 공제한다. 셋째, 결혼이나 자녀양육비를 목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까지 1천만엔까지 공제한다. 그 밖에도 일본은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가 실제 거주한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주택가격의 2천만엔까지 공제하는 등의 공제 제도를 가진다.

## 라. 프랑스<sup>7)</sup>

프랑스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프랑스의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공제는 피상속인·증여자와 상속인·수증인의 친족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프랑스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과 법정한계세율을 가지며, 직계존속에게 상속 및 증여한 경우에는 <표 II-22>에 제시된 과세표준 구간과 법정한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되고, 증여한 경우에는 <표

7) 프랑스의 상속·증여세 공제제도에 대한 설명은 EY(2016)의 『프랑스편』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하였다.

II-23)에 제시된 과세표준 구간과 법정한계세율을 적용되며, 이는 직계존속에  
 계 증여한 경우보다 2~4단계의 과세표준 임계치가 더 높다. 이는 배우자  
 간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체계가 직계존속 간 상속·증여의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형제자매 간 상속 및 증여는  
 <표 II-24>에 제시된 2단계 과세표준 구간과 35~45%의 세율범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친척 중 4촌까지는 5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  
 는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상속·증여세제  
 는 친족관계가 멀수록 더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2> 프랑스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직계존속에게 상속 및 증여한 경우**

(단위: 유로, %)

과세구간	세율
0 초과 ~ 8,072 이하	5
8,072 초과 ~ 12,109 이하	10
12,109 초과 ~ 15,932 이하	15
15,932 초과 ~ 552,324 이하	20
552,324 초과 ~ 902,838 이하	30
902,838 초과 ~ 1,805,677 이하	40
1,805,677 초과	45

자료: EY,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6, p. 103

**<표 II-23> 프랑스의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배우자 간 증여**

(단위: 유로, %)

과세구간	세율
0 초과 ~ 8,072 이하	5
8,072 초과 ~ 15,932 이하	10
15,932 초과 ~ 31,865 이하	15
31,865 초과 ~ 552,324 이하	20
552,324 초과 ~ 902,838 이하	30
902,838 초과 ~ 1,805,677 이하	40
1,805,677 초과	45

자료: EY,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6, p. 103

〈표 II-24〉 프랑스의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형제자매 간 상속 및 증여

(단위: 유로, %)

과세구간	세율
0 초과 ~ 24,430 이하	35
24,430 초과 ~	45

자료: EY,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6, p. 103

프랑스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동일한 인적공제제도를 가진다. 상속·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만유로를 기초 공제한다. 그리고 형제자매 간 상속 및 증여의 경우에는 15만 9,325유로를, 조카에게 상속 및 증여를 한 경우에는 7,967유로를, 장애인에게 상속 및 증여를 한 경우에는 15만 9,325유로를 공제한다. 상속세 부과 시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15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증여세의 경우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혜택은 상속 및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5년 합산된 증여재산에 적용된다. 또한 배우자, 손자, 증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8만 724유로를,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한 명당 3만 1,865유로를, 증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한 명당 5,310유로를 공제한다.

마. 영국<sup>8)</sup>

영국은 기본적으로 부(wealth)의 무상이전에 대해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증여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7년 이내 발생한 증여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와 함께 과세한다.

영국은 2016년을 기준으로 32만 5천파운드 이하의 상속재산은 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은 초과금액에 대해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선단체 등에 상속한 경우에는

8) 영국의 상속·증여세 공제제도에 대한 설명은 EY(2016)의 『영국편』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하였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32만 5천 파운드 이하의 재산을 상속한 경우 [32만 5천파운드-상속재산가액만큼 다음 배우자 사망 시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영국은 증여세가 없지만, 생애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시기에 따라 <표 II-25>에 제시된 것처럼 8~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표 II-25> 생애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별 세율

(단위: %)

사망연도-증여연도	세율
3년 이하	40
3~4년	32
4~5년	24
5~6년	16
6~7년	8
7년 초과	0

자료: EY,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6, p.103

영국의 공제제도를 살펴보면, 영국 역내 주소지를 둔 배우자 간의 상속과 영국 역외 주소지를 둔 배우자 간의 상속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영국 내 주소지를 둔 한 배우자가 영국 역외 주소지를 둔 다른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32만 5천파운드까지만 공제된다.

생애증여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에 3천파운드까지 공제된다. 이와 더불어 결혼자금 등을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1년에 한 사람당 1천파운드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5천파운드까지, 손주 또는 증손주인 경우에는 2,500파운드까지 가능하다. 또한 일반소득범위 내에서 발생한 일반적 증여(예: 크리스마스 선물 등)는 과세가 되지 않으며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도 과세되지 않는다. 예컨대, 고령자나 장애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공제제도는 사

망시점을 기준으로 7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에 대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당 연간 250파운드까지 증여공제가 되지만, 이는 다른 공제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영국은 배우자에게 주거용 주택을 상속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 증여시점에 배우자가 서로 함께 살고, (2) 사업용으로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을 양도받은 배우자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바. 시사점

주요 국가별로 과세방식을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은 피상속인·증여자의 이전자산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독일, 일본, 프랑스는 상속인·수증인의 취득자산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모든 주요 국가들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과세방식을 가진다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표 II-26〉 주요 국가별 과세방식

국가	상속세	증여세
미국	유산세	유산세
독일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
일본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
프랑스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
영국	유산세	-

자료: “가.” 절에서 “마.” 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영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과세체제를 가지지만 피상속인·증여자와의 친족관계가 가까울수록 상속·증여세제가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은 증여세가 없는 대신 상

속세가 부과될 때 생애증여재산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생애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년까지는 상속세율과 동일한 40%를 적용하나, 3년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4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요 국가들은 상속세제와 증여세제가 세부담 관점에서 동일하게 설계되거나 증여세제가 다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서로 상이하고,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임계치가 더 낮아 상대적으로 증여세제가 상속세제보다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세부담은 과세체계뿐만 아니라 공제제도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주요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제도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미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제도는 상속 또는 증여를 거의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세율과 “통합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 통합세액공제 제도와 별도로 매년 2016년 기준으로 1만 4천달러만큼 기본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통합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 수준만큼은 상속을 하는 것보다는 증여가 더 유리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세액을 산출할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공제제도가 적용된다. 일본은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부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주택취득, 교육자금, 결혼이나 자녀 양육비 등을 목적으로 증여를 한 경우에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영국도 일본과 유사하게 결혼자금,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증여를 한 경우에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및 공제제도를 살펴본 결과, 증여세가 상속세와 동등하거나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운영된다. 이는 주요 국가들이 고령의 부모세대에서 젊은 자녀세대로 부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는 과세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 국가들과 달리 공제제도 면에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불리하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증여세의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등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이것이 상속·증여세 과세체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9)</sup> 그리고 상속·증여세제가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무상으로 이전된 자산이 소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분석은 향후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나, 본 연구는 후자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상속·증여세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주요 이슈들을 논의한다.

---

9) 상속세의 논쟁 중 하나는 이중과세문제이다. 즉, 자산을 축적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축적된 자산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다시 과세하여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은 이중과세문제를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거나 소득세율보다 낮게 상속세율을 정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본 연구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

## Ⅲ. 선행연구

---

### 1. 자산이전 동기

상속·증여세가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산이전의 동기(motive)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산이전 동기에 따라 조세와 같은 정책 또는 부모와 자식의 소득과 같은 경제적 환경의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sup>10)</sup>

첫 번째는 우발적(accidental) 상속이다. 엄밀히 말하면 우발적 상속은 자산이전의 동기 중 하나라기보다는 자산이전의 동기가 없음을 뜻한다. 즉 개인은 수명의 불확실성, 소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유자산을 축적해놓을 동기가 있다. 즉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 죽기 전에 자산이 바닥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저축이 있어야 한다. 또한 남은 생애동안에 발생할 소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의료비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인들은 고령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저축을 가지고자 하며, 저축한 금액을 다 소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남은 재산을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타적(altruistic) 동기이다.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위해 본인들 몫을 희생하면서 자식에게 자산을 이전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부모의 효용함수에 자식의 효용이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산이전을 통해 본인들 고유의 효용이 감소하더라도 자식의 효용증가로부터 인하여 얻는 효용증가가 더 클 경우 자산을 자식들에게 이전할 동기가 있다.

세 번째는 자기만족적(joy-of-giving 또는 warm-glow) 동기이다. 자식을

---

10) 자산이전 동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rrondel and Masson(2006) 참고

위해서가 아니라 주는 행위 자체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자산이전으로 인한 자녀의 효용 증가가 부모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전 행위 자체로서 효용을 얻는다는 점에서 이타적 동기와 차이점이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만족적 동기라 칭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적(strategic 또는 exchange) 동기이다. 자식에게 자산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자식으로부터 일종의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즉 부모는 자식에게 자산을 이전해주거나 미래에 이전해주기로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자식은 부모를 좀 더 자주 방문하거나 직접 봉양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동기들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소비적 관점이다. 자기만족적 동기와 전략적 동기는 소비의 성격을 지닌다. 자기만족적 동기의 경우 돈을 지불하여 즐거움을 사는 것이며, 전략적 동기의 경우 돈을 지불하여 자식에게 서비스를 사는 것이다. 우발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는 직접적으로 소비의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 또 하나의 차원은 세대 간 연계 여부이다. 이타적 동기와 전략적 동기의 경우 세대 간 연계가 존재한다. 이타적 동기의 경우 자식의 효용이 부모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며, 전략적 동기의 경우 자식의 서비스 제공이 부모의 효용을 증가시킨다. 반면 우발적 동기와 자기만족적 동기의 경우 세대 간 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발적 동기처럼 자산이전 자체가 부모의 효용과 상관이 없거나, 자기만족적 동기처럼 자식이 받게 되는 자산에 관계없이 부모가 주는 금액만이 부모의 효용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분류는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III-1〉 자산이전 동기

		소비적 관점 여부	
		O	X
세대 간 연계 여부	O	전략적 동기	이타적 동기
	X	자기만족적 동기	우발적 동기

자료: 저자 작성

자산이전의 동기에 따라 상속·증여세제가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달

라질 수 있다. 자산이전이 우발적 상속에 의해 일어날 경우 상속·증여세는 자산이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모가 자산이전 자체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고, 수명과 소비의 불확실성으로 저축을 해두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 다 못 쓰고 남기는 재산에 대해 얼마를 과세하든 부모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이타적인 고려에 의해 자산을 이전할 경우 상속·증여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율이 높아지면 자산이전의 비용 또는 가격이 높아지기에 자식의 효용 증가로부터 부모가 얻는 효용 증가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자산을 이전하게 될 것이다. 이타적 동기가 현실적으로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전체적인 상속·증여세율의 변화와 별도로 상속세 부담과 증여세 부담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식을 위해 자산을 이전할 경우 자식에게 더 많이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상속세와 증여세 중 더 유리한 제도가 존재한다면 의도적으로 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자기만족적 동기의 경우 부모가 본인이 이전하게 되는 자산의 총 규모로부터 효용을 얻는다면 상속·증여세는 자산이전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신의 자산이 자식에게 가든지, 정부에 가든지 부모는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실제로 자식이 얻게 되는 금액으로부터 효용을 얻을 경우 ‘이타적’ 동기와 비슷하게 상속·증여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전략적 동기의 경우 소비적 성격이 가장 강한 동기이기에 상속·증여세는 소비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상속·증여세가 높아지면 소비재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산이전을 덜 하게 될 것이며, 정확한 규모는 수요탄력성에 달려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란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얻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이다.

## 2. 해외연구

### 가. 자산이전 동기에 대한 실증연구

자산이전의 동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다.<sup>11)</sup>

11) 가족구성원 간 자산이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모형과 실증분석은 Laferrere and

전략적 동기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Bernheim, Shleifer, and Summers (1985)의 논문이 있다. Longitudinal Retirement History Survey의 1969, 1971, 1973, 1975 웨이브(wave)를 사용한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구에서는 부모가 이전 가능한 재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전화 또는 방문 횟수가 다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금과 같이 이전이 가능하지 않은 자산이 많은 경우와 한 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자녀로부터의 서비스, 즉 좀 더 잦은 방문과 관심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자료를 사용한 Perozek(1998)의 연구에서는 자녀와 가구의 특성을 좀 더 정교하게 통제할 경우 이전 가능한 자산이 자녀의 전화 또는 방문 횟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이타적인 동기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부모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녀의 소득이 감소할 경우 자녀에게 더 많은 자금을 이전하게 된다. 이타적 동기에 대한 실증연구는 주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부모와 자녀 각각의 소득 또는 자산 변화가 상속 또는 증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Wilhelm(1996)의 연구에서는 1982년 사망자의 상속세 과세자료와 상속을 받은 자녀들의 소득세 과세자료를 매칭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은 자녀가 좀 더 많은 상속을 받긴 하였지만 그 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와 스웨덴의 Level of Livings Survey를 이용한 Laitner and Ohlsson(2001)의 연구에서도 생애소득이 적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좀 더 많은 상속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Wilhelm (199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효과의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이용한 Altonji, Hayashi, Kotlikoff (1997)의 연구에서는 부모 소득이 1달러 증가하고 자녀 소득이 1달러 감소할 경우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지원되는 증여는 0.13달러 증가하는 데 그쳐, 부모의 자산이전행위를 이타적 동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Wolff(2006)과 Arrondel and Masson(2006) 참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 방법론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공통적인 결론은 하나의 동기만으로 모든 자산이전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향후 좀 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마다 자산이전의 동기가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동기를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한 동기에 대해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동기가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어떤 동기를 좀 더 가지게 되는지, 즉 자산이전 동기의 이질성(heterogeneity) 및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나. 상속·증여세가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

상속·증여세가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실제로 세금을 내는 시점과 세금에 대비한 경제적 활동이 벌어지는 시기가 상이하기에 상속·증여세로 인한 경제적 활동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의 절세를 위해 생전에 미리 계획하지만 미래의 상속세 제도가 현재와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그 기대(예상)도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적 행위가 미래의 상속세를 대비한 행위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행위인지에 대해 관측자 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보유한 재산의 규모, 형태 등은 지금 현재의 상속·증여세 제도뿐만 아니라 수년, 수십 년 전의 상속·증여세 제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기에, 현재의 행위가 현재의 제도뿐만 아니라 과거의 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효과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분석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상속·증여세 대상이 되는 고자산가들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잘 공개되지 않으며, 일반 패널조사에서 고자산가 샘플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주로

세율과 세입 간의 관계와 같은 총량 단위의 분석 또는 미국의 Survey of Consumer Finances와 같이 고자산가들의 표본을 과다추출(oversample)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상속·증여세제가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였기에 선행연구 소개에 앞서 간략하게 미국의 증여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증여세제는 1976년까지는 상속세와 별도로 운영되었으며, 과세표준은 생애 증여 합산금액이고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1977년부터는 상속세와 통합되어 운영되었으며, 따라서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사망 시 상속한 금액과 생애 증여규모를 합산한 총액이다. 상속과 비교하여 증여의 큰 장점은 연간공제를 통한 절세이다. 2013년 기준 1인당 연간 1만 4천달러(주기적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조절) 이하 규모의 증여는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2자녀 가정인 경우에는 부모가 따로 두 자녀에게 각각 1만 4천달러씩 증여할 경우 매년 5만 6천달러(=4×1만 4천달러)를 세금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보다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할 경우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다만 구입 후 가치가 오른 자산을 상속할 경우 향후 자산을 매각하여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부과될 때 자산을 처음 매입했을 때의 가격이 상속시점에서의 가격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향후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속·증여세가 증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이 같은 과세체계 차이에 주목하였다.

Poterba(2001)의 논문에서는 Survey of Consumer Finances(SCF)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부유층 가구에서 향후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만큼의 충분한 증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매년 특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5년 당시 상속세 면세한도보다 4배 많은 자산을 가진 가구의 45%만이 증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상대로 유동자산의 비율이 높은 가구에서 증여가 많이 나타났으며, 취득 후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상속 시 적용되는 'basis step-up'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증여가 적게 나타났다. 이 같은 점

은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와 Asset and Health Dynamics Study(AHEAD)의 자료를 사용한 McGarry(2001)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부유층 가구에서 사전 증여를 하고는 있지만, 과세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규모보다 훨씬 적게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절약할 수 있는 향후 조세부담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다. 또한 HRS 설문조사와 1992년 상속세 과세 자료를 이용한 Joulfaian and McGarry(2004)의 논문에서도 궁극적으로 상속세를 내게 될 사람들이 총자산의 10% 미만을 사전에 증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Page(2003)의 논문에서는 Survey of Consumer Finances(SCF)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상속세율이 생전 증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주(state)마다 상속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였으며, 주 상속세의 경우 연방 상속세보다 공제한도가 낮아 더 많은 사람들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이 분석을 용이하게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속세율이 높을수록 생전증여가 많았으며 이러한 효과는 특히 고령가구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Joulfaian(2004)에서는 1933년부터 1998년까지의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증여세율의 변화가 증여세 수입, 따라서 증여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Joulfaian(2004)은 증여세 수입의 단기와 장기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단기 가격탄력성은 장기 가격탄력성보다 상당히 높게 추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 가격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증여세율 변화가 생애 총증여의 규모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증여의 시기 선택에는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증여세가 상속세와 통합되기 직전인 1976년에 향후 증여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로 증여가 크게 늘어나 증여세 수입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Bernheim, Lemke, and Scholz(2004)에서는 Survey of Consumer Finances(SCF)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1989년과 2001년 사이 상속세 공제한도의 증가가 생전 증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속세 공제한도가 커질수록 상

속세 부담이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증여의 장점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증여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산규모에 따라 개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상속·증여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적은 규모의 자산을 가진 가구에서는 이러한 상속세 변화가 증여를 포함한 경제적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제도 변화 이전에는 상속·증여세 적용 대상이었지만 상속세가 완화되면서 더 이상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적용되더라도 세액 규모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 규모의 자산을 가진 가구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라 증여세의 매력력이 감소하여 증여가 줄어들 것이다. 셋째, 상속세 적용한도가 증가하더라도 여전히 큰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는 많은 규모의 자산을 가진 가구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일부 완화되면서 자산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증여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Bernheim, Lemke, and Scholz(2004)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중간 규모의 자산을 가진 가구에서는 증여가 줄어들었고, 많은 규모의 자산을 가진 가구에서는 증여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많은 규모의 자산을 가진 가구의 경우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Joulfaian(2005)의 논문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세가 생전증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과거에 취득한 자산의 가치가 생전에 많이 상승하였을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989년의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이 연구에서는 주(state)마다 상속·증여세율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세율도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속·증여세율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세율도 생전증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납세자들은 증여를 결정할 경우에 상속·증여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따라서 증여가 상속에 비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 증여와 관련된 연구의 결론은 대체로 유사하다. 증여의 규모와 빈도, 시기는 상속세와 증여세, 자본이득세 등 조세체계

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되는 규모는 상속·증여세를 최소화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즉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상당 부분의 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는 앞서 언급한 자산이전 동기 중 ‘이타적’ 동기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 다. 자산이전이 자녀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철강재벌 앤드류 카네기는 ‘자식에게 막대한 부를 물려주는 것은 자식의 재능과 에너지를 말살하는 것이며, 자식이 덜 유용하며 가치가 덜한 삶을 살게 만든다.’<sup>12)</sup>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공급이다. 즉 막대한 부를 물려받은 자녀는 더 이상 열심히 일할 동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재능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Holtz-Eakin, Joulfaian, and Rosen(1993)의 논문에서는 이 같은 가설을 검증하였다. 1982년 상속세 과세자료와 당시 상속을 받은 자들의 1982년과 1985년 소득세 과세자료를 비교한 결과 15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2만 5천달러 이하의 자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에 비해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이 4배나 높았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도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노동공급을 줄이게 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반면, 상속세 과세자료와 Michigan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설문조사를 이용한 Joulfaian, Wilhelm(1994)의 논문에서는 Holtz-Eakin, Joulfaian, and Rosen(1993)의 연구와는 달리 상속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자료를 이용한 Brown, Coile, and Weisbenner(2010)의 논문에서는 상속을 받았을 경우 은퇴 확률이 높아지며, 특히 기대하지 못했던 상속을 받았을 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주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사용한 자료와 분석방법에 따라 노

---

12) “the parent who leaves his son enormous wealth generally deadens the talents and energies of the son, and tempts him to lead a less useful and less worthy life than he otherwise would...” (Carnegie(1891/1962, p. 56); Holtz-Eakin, Joulfaian, and Rosen(1993, p. 413)에서 재인용)

동공급에 대한 자산이전의 효과가 다르게 추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이전자산과 노동공급 간의 관계가 미국의 연구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이전자산이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이전자산과 노동공급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는 제Ⅳ장과 제Ⅵ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 3. 국내연구

상속·증여세에 관한 국내연구는 주로 상속·증여세 포괄주의에 관한 논쟁<sup>13)</sup>,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sup>14)</sup> 등 법학 및 세무·회계학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업상속에 관한 연구도 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의 초점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하지 않는다.<sup>15)</sup>

상속·증여세가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진(2009)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조정방안(세율, 공제 등), 재산평가방법, 기업상속제도 등 자산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도별 평균유효세율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여세수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증여세수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적으로 5.99, 장기적으로 1.38로 추정되어 꽤 높은 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증여세 과세체계의 조정,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의 상대적 유효세율 조정으로 증여 규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명근·조경엽(2006), 조경엽(2007), 조경엽(2015)의 연구에서는 상속세 과세체계의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경제적 분석을 위해 중첩세대(overlapping generations)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상속세 개편이 개인의 소비 및 소득, 그리고 거시경제에 미치는

13) 차진아(2013), 김동수·윤태화(2016) 등 참고

14) 이대규·노준화(2014), 안재환·전영준·전규안(2013), 김명희·김주희(2009) 등 참고

15) 전병욱(20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 등 참고

영향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상속세 개편안이 상속, 소비, 노동 시간 등 개인의 경제활동과 고용, 경상수지, 내수, GDP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최명근·조경엽(2006), 조경엽(2007)에서는 상속세를 40% 인하할 경우 GDP가 0.06% 증가하며, 상속계층뿐만 아니라 무상속계층의 후생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조경엽(2015)에서는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미국식 개편안, 공제금액 한도를 17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독일식 개편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캐나다식 개편안을 기준 시나리오와 대비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이 같은 개편안들은 상속, 소비,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 IV. 설문조사 분석

---

### 1. 설문조사의 개요

제Ⅲ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두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상속·증여와 관련된 현재의 행위가 현재의 상속·증여세 제도뿐만 아니라 미래, 특히 본인이 수명이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존재하게 될 상속·증여세 제도에 대한 기대에도 영향을 받으며, 반대로 현재까지 축적된 자산은 현재와 미래의 상속·증여세 제도뿐만 아니라 과거 제도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상속·증여세 제도가 경제적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보다 큰 문제는 데이터의 부재이다. 일반 설문조사에서는 상속·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자산가들의 샘플(sample)이 많지 않다. 따라서 많지 않은 관측치로부터 일반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산이전의 동기와 상속·증여세가 경제적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전문업체인 TNS에 의뢰하여 전국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모세대 250표본, 자녀세대 250표본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부모세대의 경우 고자산가, 자녀세대의 경우 고자산가를 부모로 둔 응답자를 중점적으로 표집하도록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세대의 경우 순자산이 5억~10억원이라고 응답한 100가구, 10억~20억원이라고 응답한 100가구, 20억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5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녀세대의 경우 부모의 순자산이 5억~10억원이라고 응답한 100가구, 10억~20억원이라고 응답한 100가구, 20억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5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모세대의 경우 자산, 소득, 가족관계 등에 관한 문항과 함께 본인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자산, 본인의 자녀에게 이전한 자산의 규모와 종류, 자산이전의 목적,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활용방안 등에 대한 문항을 설문하여 자산이전의 현황 및 동기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증여세 공제금액이 변경될 경우의 자산이전 계획과 함께 상속·증여세가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문하여 향후 제도변화가 경제적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자녀세대의 경우 자산, 소득, 직업, 가족관계 등에 관한 문항과 함께 현재 까지 부모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의 규모와 종류에 관한 문항을 설문하였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은 후 부모와의 관계 변화 및 노동시간, 이직, 창업 등 경제적 변화가 있었는지도 설문하였다. 그리고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향후 부모로부터 큰 규모의 자산을 이전받았을 경우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노동공급의 형태 또는 근로시간을 변화시킬 의사가 있는지 설문하였다.

## 2. 부모세대 설문조사

### 가. 응답자 특성

〈표 IV-1〉은 부모세대 응답자의 특성을 보여준다. 부모세대의 총응답자 수는 250명이며, 응답자의 연령은 설문 표본의 특성상 최소 55세 이상이며 65세 이상이 약 49%를 차지한다. 95.6%의 응답자가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성별은 남녀가 비슷한 비중이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순자산 5억~10억원이 40%, 10억~20억원이 40%, 20억원 이상이 20%를 차지한다. 전체 자녀 수가 2명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명과 3명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각각 14.8%로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은 4천만원 이하가 25.2%, 4천만~7천만원이 28.8%, 7천만~1억원이 24.0%, 1억원 이상이 22.0%를 차지한다. 그리고 총응답자의 71.2%가 자녀에게 자금을 이

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력수준의 경우 대학재학 이상 응답자가 전체에서 42.0%를 차지한다.

〈표 IV-1〉 부모세대 응답자 특성

(단위: 건, %)

구분	사례 수	비중
전체	250	100
연령	55~64세	51.2
	65세 이상	48.8
배우자 유무	있음	95.6
성별	남자	50.4
순자산	5억~10억원	40.0
	10억~20억원	40.0
	20억원 이상	20.0
전체 자녀 수	1명	14.8
	2명	65.6
	3명	14.8
	4명	2.4
	5명	2.4
본인배우 자연소득	4천만 미만	25.2
	4천만~7천만원 미만	28.8
	7천만~1억원 미만	24.0
	1억원 이상	22.0
자녀에게 지원경험	있음	71.2
학력	중졸 이하	6.4
	고졸	51.6
	대학재학/졸업	40.4
	대학원재학 이상	1.6

자료: 저자 작성

〈표 IV-2〉는 본인의 부모로부터 과거에 지원받은 금액을 나타낸다.<sup>16)</sup> 평균적으로 약 1억 7,544만원가량의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 받았으며, 종류별로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 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10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표 IV-2〉 본인의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부동산 또는 부동산 구입 자금	14,722	33,595	0	186,686
주식	55	865	0	13,680
사업체 또는 사업 자금	1,146	8,375	0	112,251
기타 실물자산	87	649	0	8,282
기타 금융자산	1,534	6,306	0	56,894
총지원금액	17,544	38,245	0	203,318

자료: 저자 작성

〈표 IV-3〉은 부모세대 응답자가 본인의 자녀에게 이전한 금액을 나타낸다.<sup>17)</sup> 평균적으로 약 1억 6,240만원 정도를 자녀에게 이전하였으며 부동산 또는 부동산 구입 자금과 전월세 보증금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결혼 자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본인의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부동산 또는 부동산 구입 자금	5,130	10,669	0	54,640
전월세 보증금	4,145	8,869	0	45,418
주식	130	1,327	0	18,213
자동차 구입 자금	1,268	2,442	0	19,549
사업 자금	1,076	4,907	0	45,855
결혼 자금	3,503	5,290	0	32,054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563	2,579	0	24,500
기타 실물자산	17	116	0	1,101
기타 금융자산	407	2,027	0	18,213
총지원금액	16,240	19,242	0	110,424

자료: 저자 작성

17)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10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 나. 증여 성향

자산이전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세대의 특성이 증여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다. 구체적으로 부모세대의 소득, 자산, 연령 등의 특성이 본인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설문조사를 통한 증여 성향 파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현재까지 자녀에게 실제로 지원한 총금액을 통해 응답자의 증여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별 증여 계획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증여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증여세 합산기간과 공제한도를 기준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로 증여 계획을 물어보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인 증여세 합산기간 10년과 공제한도 5천만원 시나리오를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합산기간은 10년으로 동일하되, 공제한도를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시나리오와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시나리오를 각각 설정하였다. 또한 합산기간 10년 대신 매년 증여재산에 대해 2천만원을 공제해주는 시나리오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별로 향후 5년간 자녀에게 얼마를 증여할 계획인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현행 제도인 합산기간 10년 공제한도 5천만원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과 다른 시나리오들의 응답을 비교분석하여 부모세대의 증여 성향 및 증여세 공제제도가 증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IV-4〉는 현재까지 자녀 1인당 평균 지원한 금액을 부모의 소득, 자산 및 본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 규모로 나누어 보여준다. 가구소득의 경우 현재까지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현재까지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의 부모세대의 경우 과거에 소득이 높았더라도 현재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현재까지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은 누적금액이기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원금액도 늘어나고, 동시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져 소득은 줄어들 수 있어, 나이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상관관계만 분석한다면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현재까지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이 더 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산의 경우 예상대로 자산규모가 클수록 현재까지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롭게도 본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큰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 비해 본인의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현재까지 자녀 1인당 평균 지원한 금액

(단위: 만원)

집단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	전체 평균
가구소득	9,364	7,819	7,835	8,212
총자산	5,437	8,525	13,135	
본인 상속액	7,122	5,892	13,036	

주: 가구소득 저집단: 4천만원 미만(63명), 중집단: 4천만~1억원(132명), 고집단: 1억원 이상(55명)  
 총자산 저집단: 5억~10억원(100명), 중집단: 10억~20억원(100명), 고집단: 20억원 이상(50명)  
 본인 상속액 저집단: 0원(152명), 중집단: 0원 초과 2억원 미만(43명), 고집단: 2억원 이상(55명)

자료: 저자 작성

〈표 IV-5〉는 현재의 공제제도(10년 5천만원)가 유지될 경우 향후 5년간 자녀 1인당 평균 지원계획 금액을 나타낸다. 앞서 분석한 현재까지의 지원금액과는 달리 향후 지원계획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원계획 금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규모가 클수록, 본인의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클수록 향후 지원계획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향후 5년간 자녀 1인당 평균 지원 계획

(단위: 만원)

집단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	전체 평균
가구소득	4,588	7,782	12,972	8,119
총자산	3,349	8,701	16,493	
본인 상속액	5,427	4,277	18,562	

주: 가구소득 저집단: 4천만원 미만(63명), 중집단: 4천만~1억원(132명), 고집단: 1억원 이상(55명)  
 총자산 저집단: 5억~10억원(100명), 중집단: 10억~20억원(100명), 고집단: 20억원 이상(50명)  
 본인 상속액 저집단: 0원(152명), 중집단: 0원 초과 2억원 미만(43명), 고집단: 2억원 이상(55명)

자료: 저자 작성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부모세대의 현재 소득은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과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지만, 현재 소득이 클수록 향후 지원할

금액은 커지는 것으로 보이며, 자산규모가 클수록 과거 지원금액과 향후 지원할 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 본인의 부모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이 클수록 본인의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성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제도 변경 시 증여액 변화

부모세대 설문조사에서는 증여세 공제기준이 변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자녀에게 얼마를 증여할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현행 합산기간 10년과 공제한도 5천만원이 유지될 경우 ② 합산기간은 10년으로 동일하되 공제한도가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경우 ③ 합산기간은 10년으로 동일하되 공제한도가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④ 매년 1년 동안 공제한도가 2천만원으로 변할 경우에 대해 각각 향후 5년간 얼마를 증여할지에 대한 응답이다.

〈표 IV-6〉은 시나리오별 자산규모별 자녀 1인당 증여 계획 금액을 나타내며, 〈표 IV-7〉은 각 경우별 현행 제도하에서의 자녀 1인당 증여 계획 금액을 1이라고 하였을 경우 제도 변경 시 증여 계획 금액 변경 비율을 나타낸다. 우선 모든 시나리오에 공통적으로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증여 계획 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의 증여성향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제도별 평균 금액을 비교해보면 현행 10년간 공제한도 5천만원에서 10년간 공제한도 3천만원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증여금액이 8,119만원에서 5,403만원으로 약 3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자산이 20억원 이상인 계층에서는 공제금액이 감소할 경우 증여금액을 45% 가량 감소시키겠다고 응답하는 등 순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계층일수록 공제금액 감소에 따른 증여금액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제금액이 현행 제도로부터 10년간 공제한도 2억원으로 증가할 경우 설문대상자들은 증여금액을 평균적으로 28% 가량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공제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증여금액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제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와는

다른 결과이다. 순자산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계층은 증여금액을 9% 가량만 증가시킨다고 응답해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증여세 완화의 가장 큰 잠재적 수혜대상인 고자산가들이 공제금액의 확대에 크게 반응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증여세의 완화가 고자산가들의 증여 행위에 실제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설문조사상에서 정확히 나타나지 않으나, 이미 고자산가들은 전세자금 등으로 자녀들에게 2억원 이상의 증여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암암리에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고자산가들이 공제금액의 감소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증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IV-6〉 증여세 공제제도 변화 시나리오별 향후 5년간 자녀 1인당 증여 계획  
(단위: 만원)

공제제도	순자산 규모			평균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3천만원/10년	2,824	6,113	9,143	5,403
5천만원/10년(현행)	3,349	8,701	16,493	8,119
2억원/10년	4,861	12,093	17,903	10,362
2천만원/1년	3,796	8,172	12,963	7,380

자료: 저자 작성

〈표 IV-7〉 증여세 공제제도 변화 시나리오별 증여 계획 변화 비율

공제제도	순자산 규모			평균
	5억~10억원	10~20억원	20억원 이상	
3천만원/10년	0.84	0.70	0.55	0.67
5천만원/10년(현행)	1	1	1	1
2억원/10년	1.45	1.39	1.09	1.28
2천만원/1년	1.13	0.94	0.79	0.91

자료: 저자 작성

설문조사에서는 공제한도의 기간을 10년으로 고정하고 금액을 변경하는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공제한도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여 해당 연도 내에 공제금액만큼의 증여를 하지 않을 경우 다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은 바로 소멸

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도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증여세 공제한도가 1년간 2천만원일 경우 향후 5년간 증여 계획 금액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공제액의 소멸주기가 짧을수록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누적금액이 같은 10년간 공제한도 2억원과 1년간 공제한도 2천만원을 비교할 경우 후자의 시나리오에서 향후 5년간 자녀 1인당 증여 계획 금액이 평균적으로 20~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제기준 기간이 짧을 경우 소멸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여를 늘리는 효과보다는 공제기준 기간이 긴 경우 좀 더 유연하게 증여를 할 수 있기에 자식의 사정 등으로 증여가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부모세대의 소득보다는 자산이 증여에 미치는 효과가 크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증여세 공제제도 변화를 통해서도 증여 규모를 크게 늘리기가 어려워 보인다. 특히 증여성향이 높은 고자산가의 경우 증여세 공제제도 변화에 따른 증여 계획의 변화가 크지 않기에 증여세 공제제도 변화를 통한 증여 규모의 확대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3. 자녀세대 설문조사

#### 가. 응답자 특성

〈표 IV-8〉은 자녀세대 응답자의 특성을 보여준다. 자녀세대의 총 응답자 수는 250명이며, 30대가 53.2%, 40~45세가 나머지 46.8%를 차지한다. 전체의 약 83%가 배우자가 있으며, 남녀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부모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표본을 모집하였기에 부모 자산 5억~10억원 집단이 40%, 10억~20억원 집단이 40%, 20억원 이상 집단이 나머지 20%를 차지한다. 전체 응답자의 약 58%가 상용직 근로자이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1%이다. 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및 각각의 소득 구간별 비율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으며, 응답자 중 92.4%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자녀세대 응답자 특성

(단위: 건, %)

구분		사례 수	비중
전체		250	100.0
연령	30~39세	133	53.2
	40~45세	117	46.8
배우자 유무	있음	208	83.2
성별	남자	126	50.4
부모 순자산	5억~10억원	100	40.0
	10억~20억원	100	40.0
	20억원 이상	50	2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근로자	146	58.4
	임시직 근로자	7	2.8
	일용직 근로자	1	0.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6	22.4
	고용원을 둔 사업주	31	12.4
	무급 가족종사자	9	3.6
	배우자 경제활동	예	148
본인 및 배우자 순자산	5억원 미만	142	56.8
	5억~10억원	70	28.0
	10억~20억원	27	10.8
	20억원 이상	11	4.4
본인 연간 소득	4천만원 미만	114	45.6
	4천만~7천만원 미만	92	36.8
	7천만~1억원 미만	23	9.2
	1억원 이상	21	8.4
배우자 연간 소득	4천만원 미만	114	54.8
	4천만~7천만원 미만	68	32.7
	7천만~1억원 미만	17	8.2
	1억원 이상	9	4.3
학력	고졸	17	6.8
	대학재학/졸업	221	88.4
	대학원재학 이상	10	4.0
	모름/무응답	2	0.8

자료: 저자 작성

〈표 IV-9〉는 자녀세대 설문조사 응답자가 부모로부터 현재까지 지원받은 금액을 나타낸다. 평균적으로 약 3억 1천만원 정도를 지원받았으며, 이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 구입 자금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전월세 보증금과 결혼자금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IV-9〉 부모로부터 현재까지 지원받은 금액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부동산 또는 부동산 구입 자금	18,561	31,267	0	227,666
전월세 보증금	4,391	8,750	0	64,197
주식	73	1,152	0	18,213
자동차 구입 자금	753	3,241	0	42,307
사업 자금	1,425	5,710	0	50,000
결혼 자금	4,265	5,902	0	47,878
기타 실물자산	72	408	0	3,764
기타 금융자산	1,668	14,978	0	227,547
총지원금액	31,208	44,142	0	463,213

자료: 저자 작성

#### 나. 부모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소비 변화

자녀세대 설문조사에서는 부모로부터 1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을 지원받았을 경우 소비, 부채상환, 저축 및 투자, 사업자금, 그리고 기타에 각각 얼마를 쓸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IV-10〉~〈표 IV-13〉에서는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변함에 따라 가구소득, 총자산, 총부채를 기준으로 나눈 집단별로 소비, 부채상환, 저축 및 투자, 사업자금이 각각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었다. 우선 집단별로 비교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이 높을수록 지원받은 금액 중 소비에 쓰겠다는 금액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고자산 집단일 경우 이미 본인들의 소득으로 충분한 소비를 하고 있어 한계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채가 높을수록 소비에 쓰겠다는 금액이 줄어들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받은 금액 중

부채상환에 쓰겠다는 금액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추가적인 소비의 필요가 적기에 지원받은 금액을 부채상환에 쓸 여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채가 많을수록 부채상환에 많은 금액을 쓰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 및 투자에 쓰겠다는 금액은 소득과 자산이 높을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고자산 집단은 이미 충분한 정도의 저축 및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채가 높을수록 부채상환에 쓰겠다는 금액이 높은 대신 저축 및 투자에 쓰겠다는 금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금의 경우 지원금액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소득과 자산이 높을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소득·고자산 집단의 경우 이미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기에 추가로 지원받는 금액을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쓸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IV-10〉 지원금액별 집단별 소비

(단위: 만원)

지원금액	집단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	전체 평균
1억원	가구소득	1,432	1,353	833	1,261
	총자산	1,440	1,064	953	
	총부채	1,433	1,108	708	
5억원	가구소득	4,822	3,998	3,463	4,090
	총자산	4,201	4,057	3,737	
	총부채	4,373	3,819	3,250	
10억원	가구소득	9,794	7,759	7,630	8,244
	총자산	8,873	7,271	7,684	
	총부채	8,367	8,342	7,167	
50억원	가구소득	33,651	25,910	24,815	27,624
	총자산	29,444	22,143	30,921	
	총부채	28,041	28,380	22,583	

주: 가구소득 저집단: 5천만원 미만(63명), 중집단: 5천만~1억원(133명), 고집단: 1억원 이상(54명)  
 총자산 저집단: 5억원 미만(142명), 중집단: 5억~10억원(70명), 고집단: 10억원 이상(38명)  
 총부채 저집단: 0원(147명), 중집단: 0원 초과 1억원 미만(79명), 고집단: 1억원 이상(24명)

자료: 저자 작성

〈표 IV-11〉 지원금액별 집단별 부채상환

(단위: 만원)

지원금액	집단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	전체 평균
1억원	가구소득	1,476	1,628	2,370	1,750
	총자산	1,616	2,100	1,605	
	총부채	211	3,487	5,458	
5억원	가구소득	2,603	2,169	5,611	3,022
	총자산	1,923	4,543	4,329	
	총부채	313	5,310	12,083	
10억원	가구소득	3,794	3,218	6,315	4,032
	총자산	2,169	7,571	4,474	
	총부채	585	7,684	13,125	
50억원	가구소득	5,095	7,865	18,167	9,392
	총자산	3,592	21,686	8,421	
	총부채	721	22,240	20,208	

주: 1. 가구소득 저집단: 5천만원 미만(63명), 중집단: 5천만~1억원(133명), 고집단: 1억원 이상(54명)  
 총자산 저집단: 5억원 미만(142명), 중집단: 5억~10억원(70명), 고집단: 10억원 이상(38명)  
 총부채 저집단: 0원(147명), 중집단: 0원 초과 1억원 미만(79명), 고집단: 1억원 이상(24명)

2. 지원금액이 1억원인 경우 7명, 5억원과 10억원인 경우 8명, 50억원인 경우 10명의 응답자가 부채가 0원이지만 부채상환에 0원보다 큰 금액을 쓰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응답오류일 가능성이 있지만 가족 등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있기에 분석에 그대로 포함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표 IV-12〉 지원금액별 집단별 저축 및 투자

(단위: 만원)

지원금액	집단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	전체 평균
1억원	가구소득	5,703	5,383	4,593	5,293
	총자산	5,275	5,564	4,863	
	총부채	6,492	3,772	2,958	
5억원	가구소득	29,527	30,829	24,093	29,046
	총자산	29,518	30,957	23,763	
	총부채	32,056	25,510	22,250	
10억원	가구소득	52,889	61,474	50,870	57,020
	총자산	57,655	58,357	52,184	
	총부채	61,102	52,089	48,250	
50억원	가구소득	309,413	315,256	308,870	312,404
	총자산	317,394	334,843	252,421	
	총부채	322,680	300,405	288,958	

주: 가구소득 저집단: 5천만원 미만(63명), 중집단: 5천만~1억원(133명), 고집단: 1억원 이상(54명)  
 총자산 저집단: 5억원 미만(142명), 중집단: 5억~10억원(70명), 고집단: 10억원 이상(38명)  
 총부채 저집단: 0원(147명), 중집단: 0원 초과 1억원 미만(79명), 고집단: 1억원 이상(24명)

자료: 저자 작성

〈표 IV-13〉 지원금액별 집단별 사업자금

(단위: 만원)

지원금액	집단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	전체 평균
1억원	가구소득	1,270	1,346	2,074	1,484
	총자산	1,331	1,200	2,579	
	총부채	1,653	1,354	875	
5억원	가구소득	10,048	8,989	13,500	10,230
	총자산	9,683	9,014	14,513	
	총부채	9,088	11,715	12,333	
10억원	가구소득	24,365	18,707	26,852	21,892
	총자산	19,782	22,271	29,079	
	총부채	20,449	23,380	25,833	
50억원	가구소득	100,048	93,805	115,926	100,156
	총자산	92,472	103,286	123,105	
	총부채	96,803	101,152	117,417	

주: 가구소득 저집단: 5천만원 미만(63명), 중집단: 5천만~1억원(133명), 고집단: 1억원 이상(54명)  
 총자산 저집단: 5억원 미만(142명), 중집단: 5억~10억원(70명), 고집단: 10억원 이상(38명)  
 총부채 저집단: 0원(147명), 중집단: 0원 초과 1억원 미만(79명), 고집단: 1억원 이상(24명)

자료: 저자 작성

〈표 IV-14〉는 자금지원 규모별 각각의 용도로 사용되는 평균금액과 비중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1억원을 지원받았을 경우 12.6%를 소비에 사용하지만 지원금액이 커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채상환의 경우 부채 규모에 한도가 있기에 지원금액이 커질수록 부채상환에 쓰이는 금액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반면 저축 및 투자의 경우 지원금액이 커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1억원을 지원받을 경우 약 53%를 저축 및 투자에 쓰지만 50억원을 지원받을 경우 62.5%를 저축 및 투자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을 지원받을 경우 사업자금에 약 15%를 쓴다고 응답하였으며, 5억을 지원받을 경우 약 20%로 증가하지만 지원규모가 5억원보다 커지더라도 사업자금에 쓰이는 비율은 2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지원금액 변화에 따른 용도별 평균 사용금액

(단위: 만원, %)

구분	이전 금액			
	1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소비	1,260.8 (12.6)	4,090 (8.2)	8,244 (8.2)	27,624 (5.5)
부채상환	1,750 (17.5)	3,022 (6.0)	4,032 (4.0)	9,391.98 (1.9)
저축투자	5,293.2 (52.9)	29,046 (58.1)	57,020 (57.0)	312,404 (62.5)
사업자금	1,484 (14.8)	10,230 (20.5)	21,892 (21.9)	100,156 (20.0)
기타	212 (2.1)	3,612 (7.2)	8,812 (8.8)	50,424 (10.1)

주: 괄호 안은 전체 이전 금액 대비 비율

자료: 저자 작성

이상 결과를 요약하면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부채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응답자에게 현실적인 수준, 즉 지원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은 금액 중 소비에 사용하겠다는 금액의 비율은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 부모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 변화

부모로부터 큰 규모의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큰 변화 중 하나가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변화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큰 규모의 자산이전을 받을 경우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 자체를 중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세대 설문조사에서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부모로부터 특정 금액의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를 변화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우선 〈표 IV-15〉은 근로시간 단축 의향에 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중 약 41%가 지원받는 금액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예상과는 달리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줄어들

었다. 이는 고소득·고자산 응답자일수록 전문직 종사자 등 현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또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표 IV-15〉 부모로부터 자산이전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 의향

(단위: %)

구분		금액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금액과 관계없이 단축하지 않을 것이다
소득	5천만원 미만(63명)	44.44	55.56
	5천만~1억원(133명)	41.35	58.65
	1억원 이상(4명)	37.04	62.96
자산	5억원 미만(142명)	44.37	55.63
	5억~10억원(70명)	41.43	58.57
	10억원 이상(38명)	28.95	71.05
성별	남성	34.13	65.87
	여성	48.39	51.61
전체		41.20	58.80

자료: 저자 작성

〈표 IV-16〉은 지원금액별 하루 평균 근로시간 단축 정도를 보여준다. 지원금액이 10억원일 경우 33명, 30억원일 경우 64명, 50억원 경우 95명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3시간이며, 10억원, 30억원, 50억원을 지원받았을 경우 전체 응답자의 평균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0.4시간, 1시간, 1.7시간 정도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근로시간 단축 정도를 보면 지원금액이 10억원, 30억원, 50억원일 경우 각각 3.4시간, 4.3시간, 4.7시간 정도이다.

〈표 IV-16〉 지원금액별 하루 평균 근로시간 단축 정도

(단위: 건, 시간)

지원금액	근로시간 단축의사 응답자 수 (전체샘플 중 비율)	평균 근로시간 변화	
		전체 샘플	근로시간 단축 응답자
10억원	33 (13%)	-0.4	-3.4
30억원	64 (26%)	-1.0	-4.3
50억원	95 (38%)	-1.7	-4.7

자료: 저자 작성

근로시간 변화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보면 <표 I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단축의사를 표시한 응답자의 단축시간 정도도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성별·지원금액별 하루 평균 근로시간 단축 정도

(단위: 건, 시간)

구분	지원금액	근로시간 단축 응답자 수	평균 근로시간 변화	
			전체 샘플	근로시간 단축 응답자
남성	10억원	12	-0.2	-2.3
	30억원	22	-0.7	-3.9
	50억원	37	-1.3	-4.5
여성	10억원	19	-0.6	-4
	30억원	37	-1.4	-4.5
	50억원	54	-2.1	-4.9

자료: 저자 작성

<표 IV-18>는 지원금액별 근로시간 단축 방법을 나타낸다. 지원금액이 클수록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하겠다는 응답자와 경제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8> 지원금액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단위: 건, %)

	10억원	30억원	50억원
현재직장에서 단축	17 (52)	21 (33)	25 (26)
이직을 통해 단축	1 (3)	6 (9)	4 (4)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	5 (15)	8 (13)	22 (23)
현 사업업종유지, 규모축소	1 (3)	3 (5)	4 (4)
사업업종변경을 통해 단축	4 (12)	10 (16)	12 (13)
경제활동 중단	5 (15)	16 (25)	28 (29)
합계	33 (100)	64 (100)	95 (100)

주: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 샘플 중의 비율이 아닌 자금지원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의사를 표시한 응답자 중의 비율

자료: 저자 작성

자녀세대 설문조사에서는 가상의 시나리오하에서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변경에 대한 의사를 설문한 문항뿐만 아니라 과거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받은 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항도 포함하고 있다. <표 IV-19>는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총금액별 응답 비율이다. 총응답자 수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228명이며, 그중 총지원금액이 2억원 미만인 응답자가 110명,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응답자가 76명, 5억원 이상인 응답자가 42명이다. 전체적으로 볼 경우 약 98%의 응답자가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롭게도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자보다 증가하였다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이전을 받았을 때 근로시간 변화 (단위: %)

구분	부모로부터 총지원금액			전체
	2억원 미만	2억~5억원	5억원 이상	
단축되었다	0	0	2.38	0.44
변화없다	100	98.68	90.48	97.81
증가하였다	0	1.32	7.14	1.75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IV-20>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이전을 받았을 때 직업상의 변화에 관한 응답이다. 전체 응답자 중 85%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7%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3.5%가 기존 사업규모를 확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총 금액이 클수록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기존 사업규모를 확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이전을 받았을 때 직업상의 변화

(단위: %)

구분	부모로부터 총지원금액			전체
	2억원 미만	2억~5억원	5억원 이상	
이직	0	0	2.38	0.44
경제활동 중단	0	0	0	0
사업 시작	4.55	7.89	11.90	7.02
사업규모 확대	1.82	2.63	9.52	3.51
사업규모 축소	0	0	0	0
사업업종 변경	0.91	3.95	2.38	2.19
경제활동 시작	0	1.32	7.14	1.75
변화 없음	92.73	84.21	66.67	85.09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이상 결과를 요약하면 대부분의 자녀세대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규모의 금액이 부모로부터 이전되었을 경우 근로시간 또는 근로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남성의 경우 그러한 변화의 폭이 여성에 비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설문조사 분석에 대한 소결

설문조사 분석 결과 증여세 부담 완화를 통한 세대 간 부의 이전 장려 및 소비 촉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부모세대의 증여 규모가 크게 변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공제 금액을 확대할 경우 늘어나는 증여 계획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경향은 증여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자산가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져 증여세 공제를 확대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증여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는 자녀세대가 부모로부터 자원 지금을 받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 중 소비에 쓰는 금액이 제한적이기에 큰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평균적으로 볼 때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10% 정도만 소비에 쓰겠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부채 규모가 큰 자녀세대 응답자는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중 소비에 쓰겠다고 하는 금액이 유의미하게 더 낮았으며, 전체 자녀세대 응답자 평균을 볼 경우에도 부모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으면 소비보다 부채상환에 더 많은 금액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부채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부채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저축 및 투자에 주로 쓸 계획이며, 소비를 늘리는 데 쓰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 결과를 요약하면 증여세 완화를 통한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의 증여 및 자녀세대의 소비 진작 효과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경기활성화 목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설문조사의 근본적인 한계인 측정오류가 존재하며,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실제로 과거에 행해진 경제활동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가정하여 제시된 상황하에서 미래에 행하게 될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기에 향후 실제로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라도 응답한 내용과 다른 경제적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결과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 V.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이론적 분석

---

### 1. 일반균형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Nishiyama(2002)의 중첩세대를 가정한 일반균형모형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분석한다. Nishiyama(2002)의 모형은 자산이전의 방식으로 상속과 증여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상속세와 증여세 간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간 부의 이전문제를 다룰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노동에 대한 선택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자산이전으로 인한 노동공급의 변화 또한 내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ishiyama(2002)의 모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동기로 우발적(accidental) 동기와 함께 자녀의 효용이 부모의 효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타적(altruistic) 동기를 가정한다. 우발적 동기는 자신의 사망시점에 대한 불확실성과 연금보험(annuity)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사망시점에 남겨진 자산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발적 동기만을 지닌 부모는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의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증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은 우발적으로만 발생한다. 이에 상속·증여세제는 부모의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타적 동기는 자녀의 효용이 부모의 효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상속·증여세제는 실질적인 자산이전 규모를 변화시켜 자녀의 소비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한편 이타적 부모의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은 자녀의 능력(노동생산성), 소득 및 자산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높은 능력의 자녀는 소득 및 자산 수준도 높아 이미 높은 수준의 소비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 추가적인 자산이

전으로 인한 한계효용의 증가가 미미하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이전 규모는 작을 것이다. 또한 이질적인 여러 명의 자녀를 둔 이타적인 부모는 자녀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상대적으로 능력이 낮아 소비수준이 낮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해야 효용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대 간 자산이전을 포함하는 일반균형모형에서 자산이전의 동기로 자기만족적(joy-of-giving 또는 warm-glow) 동기를 가정하는 선행연구도 존재한다(De Nardi, 2004; Bossmann, Christian and Klaus, 2007). 이타적 동기와 달리 자기만족적 동기를 지닌 부모는 자신이 이전한 자산의 규모가 자신의 효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효용에 미치는 자산이전의 규모가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세전 규모인지, 아니면 자녀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세후 규모인지에 따라 상속·증여세제가 부모의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이타적 부모와 달리 자기만족적 부모는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 시 자녀의 능력이나 소득 및 자산 수준 등은 고려사항이 아니며, 이질적인 여러 명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자녀들 간의 형평성 또한 고려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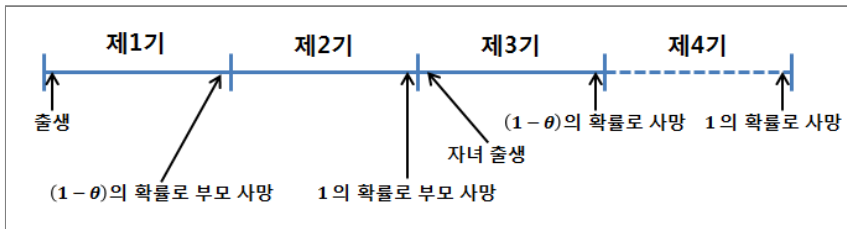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에 활용할 모형에 대해 설명한다. 모형에서 경제는 중첩세대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각각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경쟁균형에 대해 정의한다. 동 모형은 Nishiyama(2002)의 모형과 매우 유사함을 밝히며 보다 자세한 논의는 Nishiyama(2002)를 참조하길 바란다.

### 가. 중첩세대가계(overlapping generations households)

개인은 3기간 혹은 4기간 동안 존재하는 중첩세대가계를 가정한다. 한번 태어난 개인은 제3기까지는 사망하지 않고 존재하며 제3기 말에  $(1-\theta)$ 의 확률로 사망한다. 이에 제4기에는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4기에 생존할 경우 제4기 말에는 1의 확률로 사망한다. 제3기 초에 모든 개인은  $n$ 명의 자녀의 부모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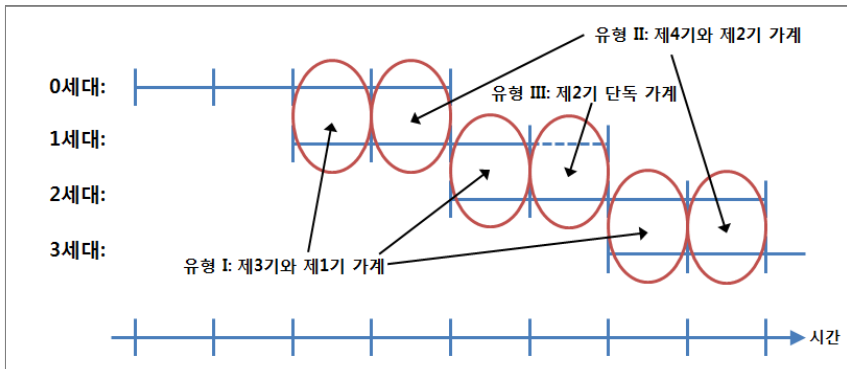
가계 내 세대의 구성을 살펴볼 경우 경제에는 3가지 유형의 가계가 존재한다. 제3기의 부모와 제1기의 자녀로 구성된 가계(유형 I)와, 제4기의 부모와 제2기의 자녀로 구성된 가계(유형 II), 그리고 부모가 제3기 말에 사망하여 제2기에 홀로 존재하는 가계(유형 III)가 그것이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이타적이어서 자녀의 효용이 부모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하에서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변수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변수에 하첨자  $p$  (parents)와  $k$  (kids)로 표시한다.

[그림 V-1] 개인의 생애주기



자료: Nishiyama(2002)의 FIG. 1.(p. 898)을 저자 수정

[그림 V-2] 가계의 세 가지 유형



자료: Nishiyama(2002)의 FIG. 2.(p. 899)를 저자 수정

개인은 기업에 노동을 공급하여 근로소득을 얻는다. 이 때 개인에게는 개별노동생산성이 식 (V-1)의 확률과정을 통해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한편,

제3기에 있는 부모의 노동생산성( $e_{p,3}$ )은 식 (V-2)의 확률과정을 통해 제1기에 있는 자녀의 노동생산성( $e_{k,1}$ )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축적한 자산을 통해 자본소득을 얻는다. 한편 자본시장은 불완전하여 개인은 차입을 할 수 없다.

$$\log(e_{t+1}) = \rho_1 \log(e_t) + \varepsilon_{t+1}, \quad \varepsilon_{t+1} \sim i.i.d.N(0, \zeta_1) \quad (t = 1, 2) \quad \text{식 (V-1)}$$

$$\log(e_{k,1}) = \rho_2 \log(e_{p,3}) + \varepsilon_{k,1}, \quad \varepsilon_{k,1} \sim i.i.d.N(0, \zeta_2) \quad \text{식 (V-2)}$$

이하에서는 제1기부터 제4기까지의 각 기간별 가치함수(value functions)를 정의하여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를 살펴본다. 이 때 가계의 유형별로 상태변수(state variables)가 다르게 정의된다. 유형 I 가계의 상태변수는  $\mathbf{s}'_I \equiv (a_p, e_k)$ 로 자녀가 기초에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 $a_p$ )과 자녀의 노동생산성( $e_k$ )으로만 구성된다. 유형 II 가계의 상태변수는  $\mathbf{s}'_{II} \equiv (a_p, a_k, e_k)$ 로 부모의 자산( $a_p$ )과 자녀의 자산( $a_k$ ), 그리고 자녀의 노동생산성( $e_k$ )으로 구성된다. 유형 III 가계의 상태변수는  $\mathbf{s}'_{III} \equiv (a, e)$ 로 부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a$ )과 노동생산성( $e$ )으로만 구성된다.

### 1) 제1기의 의사결정

제1기에 태어난 개인은 소비( $c_k$ )와 노동시간( $h_k$ ), 그리고 제2기로 이전할 자산( $a'_k$ )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생애기대효용(life-time expected utility)을 극대화한다. 한편 제2기에는 부모가  $\theta$ 의 확률로 생존하고  $(1-\theta)$ 의 확률로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경우를 고려하여 기대효용을 계산한다.

$$V_1(\mathbf{s}_I; \Psi_{I,p}) = \max_{c_k, h_k, a'_k} u(c_k, h_k) + \beta E[\theta V_2(\mathbf{s}'_{II}) + (1-\theta) W(\mathbf{s}'_{III}) | e_k]$$

$$\begin{aligned} \mathbf{s}'_{II} &= (a'_{I,p}(\mathbf{s}_I), a'_k, e'_k) \\ \mathbf{s}'_{III} &= (a'_k + (a'_{I,p}(\mathbf{s}_I) - \tau_E(a'_{I,p}(\mathbf{s}_I)))/n, e'_k) \end{aligned}$$

모든 개인의 소비는 항상 양(+)이어야 하며( $c \in (0, \infty)$ ), 다음 기로 이전하는 자산은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음(-)이 될 수 없다( $a' \in [0, \infty)$ ). 이는 제1기뿐만이 아닌 제4기까지 모든 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은 주어진 가용시간( $\bar{h}_i, i = 1, \dots, 4$ )을 노동( $h \in [0, \bar{h}_i]$ )과 여가( $l = \bar{h}_i - h$ )에 분배한다. 이 때 가용시간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고 가정한다.

위의 가치함수에서  $\Psi_{lp}$ 는 자신의 부모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녀의 예측함수집합이다. 제1기의 자녀는 제3기의 부모가 자신에게 이전할 증여와 다음 기로 이전할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소비, 노동시간,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a'_{lp}(s_t)$ 는 제3기의 부모가 제4기로 이전할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함수(policy function)로  $\Psi_{lp}$ 의 원소 중 하나이다.

제1기의 예산제약식은 아래와 같다. 제1기에 태어나는 순간에는 축적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아 소득은 근로소득( $w e_k h_k$ )과 정부로부터의 정액이전소득( $tr_{LS}$ ), 그리고 제3기에 있는 부모로부터의 증여( $g_n/n$ )로 구성된다. 제3기의 부모는  $g_n$ 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며 이를  $n$ 명의 자녀가 나누어 갖는다. 제1기의 개인은 소득세( $\tau_N(w e_k h_k)$ )와 증여세( $\tau_G(g_p/n)$ ), 그리고 연금보험료( $\tau_S w e_k h_k$ )를 납부하고 남은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하여 소비( $c_k$ )와 저축( $a'_k$ )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한편 아래의 예산제약식에서  $\mu$ 는 노동확장적 기술(labor-augmented technology)의 성장률로 경제성장모형에서 추세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a'_k = \frac{1}{1+\mu} \{ (1-\tau_S) w e_k h_k + tr_{LS} - c_k + (g_p/n) - \tau_N(w e_k h_k) - \tau_G(g_p/n) \}$$

소득세와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는 누진적이고, 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특히 누진적인 특성을 지닌 세제의 납부세액은 Gouveia and Strauss(1994)가 처음 사용하고 Nishiyama(2002)가 모형에 도입한 아래의 누진조세함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와 증여세제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동일한 누진체계를 적용하지만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공제제도에서는 상속세제와 증여세제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아래의 누진조세함수에서 다른 모수들은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고  $\kappa_E$ 와  $\kappa_G$ 를 다르게 설정하면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 세제의 특징을 묘사하게 된다.

$$\tau_X(x) = \begin{cases} \lambda_{X,0} \left\{ (x - \kappa_X) - \left( (x - \kappa_X)^{-\lambda_{X,1}} + \lambda_{X,2} \right)^{-1/\lambda_{X,1}} \right\} & (x > \kappa_X) \\ 0 & (x \leq \kappa_X) \end{cases}, \quad X = N, E, G$$

당기 효용함수는 소비와 여가가 가분적(separable)인 아래의 함수로 정의한다.

$$u(c, h) = \frac{c^{1-\sigma}}{1-\sigma} - \psi \frac{h^{1+1/\gamma}}{1+1/\gamma}$$

## 2) 제2기의 의사결정

제2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부모가 생존하여 증여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이에 각각에 대한 가치함수를 정의한다.

가) 부모가 생존하는 경우

제2기에는 제1기와 마찬가지로 소비, 노동시간,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생애기대효용을 극대화한다.

$$V_2(\mathbf{s}_{II}; \Psi_{II,p}) = \max_{c_k, h_k, a_k} u(c_k, h_k) + \beta E[V_3(\mathbf{s}'_I) | e_k]$$

$$\mathbf{s}'_I = (a'_k + (\mathbf{a}'_{II,p}(\mathbf{s}_{II}) - \tau_E(\mathbf{a}'_{II,p}(\mathbf{s}_{II}))))/n, e'_k$$

제1기와 달리 제2기에는 제1기에 축적한 자산( $a_k$ )과 이로 인한 자본소득( $r a_k$ )이 존재한다.

$$a'_k = \frac{1}{1+\mu} \{ (1-\tau_S)we_k h_k + (1+r)a_k + tr_{LS} - c_k + (g_p/n) - \tau_N(we_k h_k + ra_k) - \tau_G(g_p/n) \}$$

나) 부모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생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비, 노동시간,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W(\mathbf{s}_{III}) = \max_{c, h, a'} u(c, h) + \beta E[ V_3(\mathbf{s}'_I) | e ]$$

$$\mathbf{s}'_I = (a', e'_k)$$

부모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태변수(state variables)가 자신의 자산과 노동생산성으로만 정의된다. 다만 자신의 자산에는 부모가 생존하는 경우와는 달리 자신이 제1기에 축적한 자산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우발적 상속재산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3기의 의사결정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부모가 생존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의사결정을 예측할 필요가 없다. 특히, 예산제약식에 부모로부터의 증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a' = \frac{1}{1+\mu} \{ (1-\tau_S)weh + (1+r)a + tr_{LS} - c - \tau_N(weh + ra) \}$$

### 3) 제3기의 의사결정

제3기에 개인은  $n$ 명의 자녀의 부모가 된다. 이에 소비, 노동시간,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추가된다. 부모가 된 제3기의 개인은 자신의 효용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효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이때 자녀의 효용에 대한 가중치는  $\eta$ 로 이타심의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제1기의 자녀의 소비와 노동시간, 저축이 자녀의 효용을 결정하고 이것이 제3기에 있는 부모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의사결정을 예측하여야 한다. 이에 제3기의 부모는

자녀의 의사결정함수  $\Psi_{I,k}$ 가 주어진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제3기의 개인은  $\theta$ 의 확률로 제4기까지 생존하거나  $(1-\theta)$ 의 확률로 제3기 말에 사망한다. 사망할 경우  $n$ 명의 자녀는 제2기에 홀로 존재하며 이 경우에 예상되는 자녀의 기대효용이 현재의 제3기 부모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제3기 말에 사망할 경우 제4기로 이전하기 위해 저축한 자산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이에 부모가 생존하지 않는 제2기 개인의 상태변수(state variable)  $\mathbf{s}_{III}'$ 의 첫 번째 원소는  $\mathbf{a}'_{I,k}(\mathbf{s}_I) + (a'_p - \tau_E(a'_p))/n$ 으로 표현된다. 이 중  $\mathbf{a}'_{I,k}(\mathbf{s}_I)$ 은 자녀가 제1기에 축적한 자산을 의미하고  $(a'_p - \tau_E(a'_p))/n$ 은 부모로부터 이전받은 세후 상속재산을 의미한다. 한편  $(a'_p - \tau_E(a'_p))/n$ 은 전체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유산세 방식을 의미한다. 반면 앞에서 살펴본 증여세는  $\tau_G(g_p/n)$ 로 표현되어 분배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개념이 적용된다.

$$V_3(\mathbf{s}_I; \Psi_{I,k}) = \max_{c_p, h_p, g_p, a'_p} [u(c_p, h_p) + \eta mu(c_k, h_k) + \beta E[\theta V_4(\mathbf{s}_{II}') + (1-\theta)\eta m W(\mathbf{s}_{III}') | e_k]]$$

$$\mathbf{s}_{II}' = (a'_p, \mathbf{a}'_{I,k}(\mathbf{s}_I), e_k')$$

$$\mathbf{s}_{III}' = (\mathbf{a}'_{I,k}(\mathbf{s}_I) + (a'_p - \tau_E(a'_p))/n, e_k')$$

제3기의 예산제약식에서 주목할 점은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을 통한 이전소득( $tr_{SS}$ )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증여( $g_p$ )는 받는 입장이 아닌 자녀에게 주는 입장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한편, 제3기 이후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은퇴 이후의 근로로 인한 것으로 가사노동 등으로 인한 생산을 의미한다.

$$a'_p = \frac{1}{1+\mu} \{w_e h_p + (1+r)a_p + tr_{SS} + tr_{LS} - c_p - g_p - \tau_N(ra_p)\}$$

#### 4) 제4기의 의사결정

제4기는 생존하는 마지막기로 가치함수는 자신의 당기 효용함수와 자녀의 가치함수로 구성된다. 제4기의 개인은 소비, 노동시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효용을 극대화한다. 제3기에서는 상속에 대한 의사결정 대신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제3기 말에 사망할 경우 저축한 자산이 자녀에게 상속되지만 이는 부분적으로는 우발적 동기에 의한 상속으로 해석된다. 반면 제4기 말에는 1의 확률로 사망하기 때문에 남겨둔 재산은 우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닌 이타적 동기에 의한 상속으로 해석할 수 있다.

$$V_4(\mathbf{s}_{II}; \Psi_{IIk}) = \max_{c_p, h_p, g_p, a_p} u(c_p, h_p) + \eta mu(c_k, h_k) + \beta \eta m E[V_3(\mathbf{s}'_I) | e_k]$$

$$\mathbf{s}'_I = (\mathbf{a}'_{IIk}(\mathbf{s}_{II}) + (a'_p - \tau_E(a'_p)) / n, e'_k)$$

제4기의 예산제약식은 제3기와 동일하다.

$$a'_p = \frac{1}{1+\mu} \{ we_p h_p + (1+r)a_p + tr_{SS} + tr_{LS} - c_p - g_p - \tau_N(ra_p) \}$$

#### 나. 가계의 분포

$\phi_{I,k}(\mathbf{s}_I)$ 와  $\phi_{II,k}(\mathbf{s}_{II})$ 는 각각 유형 I과 II 가계 중 상태변수  $\mathbf{s}_I$ 과  $\mathbf{s}_{II}$ 에 해당하는 자녀의 인원 수이며,  $\phi_{III}(\mathbf{s}_{III})$ 은 유형 III 가계 중 상태변수  $\mathbf{s}_{III}$ 에 해당하는 인원 수라 하자. 유형 I과 II 가계에서 부모의 인원 수는 자녀의 인원 수의  $1/n$ 으로 결정된다. 한편  $\Phi_{I,k}(\mathbf{s}_I)$ ,  $\Phi_{II,k}(\mathbf{s}_{II})$ ,  $\Phi_{III}(\mathbf{s}_{III})$ 은 각각에 해당하는 인원의 분포를 의미한다. 제1기 개인의 전체 인구는 1로 정규화한다.

$$\int_{A \times E} d\Phi_{I,k}(\mathbf{s}_I) = 1$$

각 가계의 자녀의 인원은 다음과 같은 이행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래에서  $I_{[y=x]}$ 는  $y=x$ 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이다.  $\pi_{1,2}(e_2|e_1)$ 은 제1기의 노동생산성이  $e_1$ 인 개인이 제2기의 노동생산성  $e_2$ 으로 이행할 확률이며,  $\pi_{2,1}(e_{k,1}|e_{p,2})$ 은 제2기의 노동생산성이  $e_{p,2}$ 인 개인이 제3기에 노동생산성이  $e_{k,1}$ 인 자녀를 둘 확률이다.  $\pi_{1,2}(e_2|e_1)$ 와  $\pi_{2,1}(e_{k,1}|e_{p,2})$ 은 식 (V-1)과 식 (V-2)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인구는 인구증가율인  $\nu$ 의 비율로 증가한다. 이에 두 시점 간의 인구는  $(1+\nu)$ 로 조정하여 추세를 제거한다.

$$\begin{aligned} \phi'_{Ik}(\mathbf{s}'_I) &= (1+\nu) \int_{A^2 \times E} I_{[a'_p = \mathbf{a}'_{Ik}(\mathbf{s}_II) + \mathbf{a}'_{Ip}(\mathbf{s}_II) - \tau_E(\mathbf{a}'_{Ip}(\mathbf{s}_II))/n]} \pi_{2,1}(e'_k|e_k) d\Phi_{IIk}(\mathbf{s}_{II}) \\ &\quad + (1+\nu) \int_{A \times E} I_{[a'_p = \mathbf{a}'_{III}(\mathbf{s}_{III})]} \pi_{2,1}(e'_k|e) d\Phi_{III}(\mathbf{s}_{III}) \end{aligned} \quad \text{식 (V-3)}$$

$$\phi'_{IIk}(\mathbf{s}'_{II}) = \frac{\theta}{1+\nu} \int_{A \times E} I_{[a'_p = \mathbf{a}'_{Ip}(\mathbf{s}_I)]} I_{[a'_k = \mathbf{a}'_{Ik}(\mathbf{s}_I)]} \pi_{1,2}(e'_k|e_k) d\Phi_{Ik}(\mathbf{s}_I) \quad \text{식 (V-4)}$$

$$\phi'_{III}(\mathbf{s}'_{III}) = \frac{1-\theta}{1+\nu} \int_{A \times E} I_{[a'_k = \mathbf{a}'_{Ik}(\mathbf{s}_I) + \mathbf{a}'_{Ip}(\mathbf{s}_I) - \tau_E(\mathbf{a}'_{Ip}(\mathbf{s}_I))/n]} \pi_{1,2}(e'_k|e_k) d\Phi_{Ik}(\mathbf{s}_I) \quad \text{식 (V-5)}$$

#### 다. 동질적 기업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무수히 많은 동질적 기업이 존재한다. 각 기업은 요소시장에서 자본( $K$ )과 노동( $L$ )을 고용하여 산출물 ( $Y=F(K, AL)$ )을 생산한다. 여기서  $A$ 는 경제의 노동생산성을 의미한다. 자본의 요소비용은 임대료( $r$ )와 감가상각률( $\delta$ )의 합이며, 노동의 요소비용은 임금( $w$ )과 기업이 부과하는 연금보험료( $\tau_s w$ )의 합으로 구성된다. 연금보험료의 경우 가계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max_{K,L} F(K, AL) - (1+\tau_s)wL - (r+\delta)K$$

생산기술은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인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한편 노동확장적 기술(labor-augmented technology)과 인구는 각각  $\mu$ 와  $\nu$ 의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Y_t = F(K_t, A_t L_t) = K_t^\alpha (A_t L_t)^{1-\alpha}$$

$$A_t = e^{\mu t} A_0$$

$$L_t = e^{\nu t} L_0$$

위의 이윤극대화 문제로부터 각 요소의 가격은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r = \alpha \frac{Y}{K} - \delta \quad \text{식 (V-6)}$$

$$w = \left( \frac{1-\alpha}{1+\tau_S} \right) \frac{Y}{L} \quad \text{식 (V-7)}$$

## 라. 정부

정부의 예산은 기초부터 존재하는 정부자본( $K_g$ ), 그리고 당기에 발생하는 조세수입( $T$ )과 자본수입( $rK_g$ )으로 구성된다. 조세수입은 가계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소득세( $T_N$ ), 상속세( $T_E$ ), 증여세( $T_G$ )와 가계와 기업 양쪽으로부터 받는 연금보험료( $T_S$ )로 구성된다. 정부는 주어진 예산을 정부소비( $C_g$ )와 정액이전지출( $tr_{LS}N$ ), 그리고 사회보장지출( $tr_{SS}N_{OLD}$ )에 사용하며 나머지는 저축( $K'_g$ )하여 다음 기로 이전한다. 한편  $N$ 과  $N_{OLD}$ 는 각각 경제 전체의 인구수와 부모(제3기와 제4기)의 인구 수를 의미한다.

$$K'_g = \frac{1}{1+\mu+\nu} \{ (1+r)K_g + T - C_g - tr_{SS}N_{OLD} - tr_{LS}N \}$$

$$T = T_N + T_E + T_G + T_S$$

정부의 총세수입 중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로 인한 세수입은 아래의 식에 의해 결정된다.

$$\begin{aligned}
 T_N &= \int_{A \times E} \tau_N(ra_p)/n + \tau_N(we_k \mathbf{h}_{I,k}(\mathbf{s}_I)) d\Phi_{I,k}(\mathbf{s}_I) \\
 &+ \int_{A^2 \times E} \tau_N(ra_p)/n + \tau_N(we_k \mathbf{h}_{II,k}(\mathbf{s}_{II}) + ra_k) d\Phi_{II,k}(\mathbf{s}_{II}) \\
 &+ \int_{A \times E} \tau_N(we \mathbf{h}_{III}(\mathbf{s}_{III}) + ra) d\Phi_{III}(\mathbf{s}_{III})
 \end{aligned}$$

$$T'_E = (1-\theta) \int_{A \times E} \tau_E(\mathbf{a}'_{Ip}(\mathbf{s}_I))/n d\Phi_{I,k}(\mathbf{s}_I) + \int_{A^2 \times E} \tau_E(\mathbf{a}'_{II,p}(\mathbf{s}_{II}))/n d\Phi_{II,k}(\mathbf{s}_{II})$$

$$T_G = \int_{A \times E} \tau_G(\mathbf{g}_I(\mathbf{s}_I)/n) d\Phi_{I,k}(\mathbf{s}_I) + \int_{A^2 \times E} \tau_E(\mathbf{g}_{II}(\mathbf{s}_{II})/n) d\Phi_{II,k}(\mathbf{s}_{II})$$

기업으로부터 받는 연금보험료 수입( $T_{SF}$ )은 아래의 식에 의해 결정되며, 총연금보험료( $T_S$ )는 가계로부터 받는 연금보험료도 존재해  $2T_{SF}$ 이다. 한편 당기에 건한 연금보험료는 제3기와 제4기의 개인에게 동일하게 분배된다.

$$T_{SF} = \tau_S w L$$

$$T_S = 2T_{SF}$$

$$tr_{SS} = \frac{T_S}{N_{OLD}}$$

#### 마. 일반경쟁균형

일반경쟁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부의 정책함수집합( $\Psi_g$ )이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다.

$$\Psi_g = \{\tau_N(\cdot), \tau_E(\cdot), \tau_G(\cdot), \tau_S, tr_{SS}, tr_{LS}, C_g, K_g\}$$

요소가격  $r$ 과  $w$ 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에 의해 식 (V-6)와 식 (V-7)로 결정된다. 각 가계는 정부의 정책함수와 요소가격이 주어진 상황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며, 이때의 가치함수와 정책함수집합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V_i(\mathbf{s}_I)\}_{i=1,3} \\ \Psi_{I,p} &= \{c_{I,p}(\mathbf{s}_I), h_{I,p}(\mathbf{s}_I), g_{I,p}(\mathbf{s}_I), a'_{I,p}(\mathbf{s}_I)\} \\ \Psi_{I,k} &= \{c_{I,k}(\mathbf{s}_I), h_{I,k}(\mathbf{s}_I), a'_{I,k}(\mathbf{s}_I)\} \end{aligned}$$

$$\begin{aligned} & \{V_i(\mathbf{s}_{II})\}_{i=2,4} \\ \Psi_{II,p} &= \{c_{II,p}(\mathbf{s}_{II}), h_{II,p}(\mathbf{s}_{II}), g_{II,p}(\mathbf{s}_{II}), a'_{II,p}(\mathbf{s}_{II})\} \\ \Psi_{II,k} &= \{c_{II,k}(\mathbf{s}_{II}), h_{II,k}(\mathbf{s}_{II}), a'_{II,k}(\mathbf{s}_{II})\} \end{aligned}$$

$$\begin{aligned} & W(\mathbf{s}_{III}) \\ \Psi_{III} &= \{c_{III}(\mathbf{s}_{III}), h_{III}(\mathbf{s}_{III}), a'_{III}(\mathbf{s}_{III})\} \end{aligned}$$

생산물시장과 자본시장, 그리고 노동시장은 다음과 같이 청산된다.

$$\begin{aligned} & Y + (1 - \delta)K \\ &= \int_{A \times E} (c_{I,p}(\mathbf{s}_I) + (1 + \mu)a'_{I,p}(\mathbf{s}_I))/n + (c_{I,k}(\mathbf{s}_I) + (1 + \mu)a'_{I,k}(\mathbf{s}_I)) d\Phi_{I,k}(\mathbf{s}_I) \\ &+ \int_{A^2 \times E} (c_{II,p}(\mathbf{s}_{II}) + (1 + \mu)a'_{II,p}(\mathbf{s}_{II}))/n + (c_{II,k}(\mathbf{s}_{II}) + (1 + \mu)a'_{II,k}(\mathbf{s}_{II})) d\Phi_{II,k}(\mathbf{s}_{II}) \\ &+ \int_{A \times E} (c_{III}(\mathbf{s}_{III}) + (1 + \mu)a'_{III}(\mathbf{s}_{III})) d\Phi_{III}(\mathbf{s}_{III}) + (1 + \mu + \nu)K_g + C_g \\ K &= \int_{A \times E} a_p/n d\Phi_{I,k}(\mathbf{s}_I) + \int_{A^2 \times E} a_p/n + a_k d\Phi_{II,k}(\mathbf{s}_{II}) + \int_{A \times E} a d\Phi_{III}(\mathbf{s}_{III}) + K_g \end{aligned}$$

$$\begin{aligned}
L &= \int_{A \times E} e_p \mathbf{h}_{I,p}(\mathbf{s}_I) / n + e_k \mathbf{h}_{I,k}(\mathbf{s}_I) d\Phi_{I,k}(\mathbf{s}_I) \\
&+ \int_{A^2 \times E} e_p \mathbf{h}_{II,p}(\mathbf{s}_{II}) / n + e_k \mathbf{h}_{II,k}(\mathbf{s}_{II}) d\Phi_{II,k}(\mathbf{s}_{II}) \\
&+ \int_{A \times E} e \mathbf{h}_{III}(\mathbf{s}_{III}) d\Phi_{III}(\mathbf{s}_{III})
\end{aligned}$$

모든 개인과 정부의 정책함수는 일관적(consistent)이어야 하며, 식 (V-4) ~ 식 (V-6)의 분포는 정상상태(steady-state)에서 일정해야 한다.

## 2. 모수(parameter) 설정

### 가. 주요 모수 설정

모형에서 1기간은 15년으로 가정한다. 제1기초는 30세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제2기, 제3기, 제4기는 각각 45세, 60세, 75세에 시작되며, 개인은 최대 89세까지 생존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난 15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에 경제성장률  $\mu$ 는 3.42%로, 그리고 인구증가율  $\nu$ 은 0.49%로 설정하였다. 인구증가율 0.49%는 자녀의 수  $n$ 을 1.16명으로 결정한다.<sup>18)</sup> 4기의 생존확률  $\theta$ 는 2015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인 81.7세를 기준으로 44.67%라 가정한다.<sup>19)</sup>

효용함수의 위험회피도인  $\sigma$ 와 노동공급 탄력성인  $\gamma$ 는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1로 가정한다. 이타심에 대한 모수  $\eta$ 는 『재정패널자료』에서 총사적자산 중 총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1.64%를 설명하도록 0.8로 설정한다. 주관적 시간할인률인  $\beta$ 는 우리나라의 지난 15년 평균 GDP 대비 총자산 비율인 3.8091을 설명하도록 0.99로 설정한다. 노동공급에 대한 비효용 모수인  $\psi$ 는 연간 실질이자율이 약 3%가 되도록 90으로 설정한다. 생산함수의 자본소득분배율과 감가상각률이 주어지면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18) 자녀 수  $n = (1 + \nu)^{30} = 1.0049^{30} = 1.1579$ 명

19) 생존확률  $\theta = (\text{평균수명} - \text{제3기 말 연령}) / (\text{제4기 말 연령} - \text{제3기 말 연령}) = (81.7 - 75) / (90 - 75) = 0.4467$

에서 실질이자율은 총자산 대비 노동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노동공급에 대한 비효용 모수를 통해 실질이자율을 설명한다는 것은 총자산 대비 노동의 비율을 설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한편, 제1기와 제2기의 노동 가용 시간인  $\bar{h}_1$ 과  $\bar{h}_2$ 는 각각 1이며, 제3기와 제4기의 노동 가용 시간  $\bar{h}_3$ 과  $\bar{h}_4$ 는 각각 0이라 가정한다. 생산함수의 자본소득분배율은 0.36이라 가정한다.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우리나라의 지난 15년 평균 감가상각률인 11.18%라 가정한다.

개별 노동생산성의 연간 지속성인  $\rho_1$ 은 0.98로 가정하여 노동생산성이 상당기간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인  $\rho_2$ 는 0.75로 설정한다. 이는 제2기의 노동생산성이 제3기 초 제1기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노동생산성에 대한 지속성이 약 0.55임을 의미한다.<sup>20)</sup> 노동생산성 충격의 표준편차인  $\zeta_1$ 은 지난 15년 평균 GDP 대비 상속·증여세의 비중인 0.24%를 설명하도록 0.28로 설정한다. 부모의 노동생산성이 자녀의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때 독립적인 확률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이의 표준편차인  $\zeta_2$ 는  $\zeta_1$ 과 같다고 가정한다.<sup>21)</sup>

20)  $\rho_2 \times \rho_1^{15} = 0.75 \times 0.98^{15} = 0.5539$

21) 본 연구에서 개별노동생산성에 대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개별 노동생산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모수들은 노동패널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하지만 노동패널자료 등과 같이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저소득 계층과 고소득 계층이 과소표집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적절한 모수를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동 일반균형모형에서 기존 문헌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모수를 이용하여 균형을 도출하면 GDP 대비 상속·증여세의 비중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에 대한 모수설정 시 지속성에 대한 모수에는 가정을 부여하고, 두 표준편차에 대한 모수는 같으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의 비중을 설명하도록 설정하여 분석한다.

〈표 V-1〉 주요 모수 설정

(단위: %)

	모수	설명	값	출처 또는 목표값
경제 구조	$\mu$	경제성장률	0.0342	한국은행 국민계정
	$\nu$	인구증가율	0.0049	통계청 인구추계
	$\theta$	제4기 생존확률	0.4467	평균수명 = 81.7세, 통계청 인구추계
효용 함수	$\eta$	이타심	0.8	총자산이전/총사적자산 = 0.0165, 재정패널
	$\beta$	주관적 시간할인률	0.99	자본/GDP = 3.8091, 한국은행 국민계정
	$\sigma$	위험회피도	1	-
	$\gamma$	노동공급 탄력성	1	-
	$\psi$	노동공급에 대한 비효용	90.0	연간이자율 = 3%
	$\bar{h}_1 = \bar{h}_2$	노동 가용 시간 (제1기와 제2기)	1	-
	$\bar{h}_3 = \bar{h}_4$	노동 가용 시간 (제3기와 제4기)	0	-
생산 함수	$\alpha$	생산함수의 자본소득 분배율	0.36	-
	$\delta$	자본의 감가상각률	0.1118	한국은행 국민계정
노동 생산성	$\rho_1$	본인 노동생산성의 지속성	0.98	-
	$\zeta_1$	본인 노동생산성 충격의 표준편차	0.28	상속 · 증여세/GDP
	$\rho_2$	부모 자녀 간 노동생산성의 지속성	0.75	-
	$\zeta_2$	부모 자녀 간 노동생산성 충격의 표준편차	0.28	상속 · 증여세/GDP

자료: 저자 작성

#### 나. 조세제도 관련 모수 설정

본 모형에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누진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각 세목별로 공제액 혹은 면세점에 해당하는  $\kappa_X$ 와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3

개의 모수  $\lambda_{X,0}$ ,  $\lambda_{X,1}$ ,  $\lambda_{X,2}$ 가 존재한다. 소득세의 경우  $\kappa_N$ 은 2015년 국세 통계연보의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자료 상 평균공제금액인 1,700만원으로 설정한다.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3개의 모수는 동 자료의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세율을 설명하도록 설정하였다. 소득세제 관련 모수를 <표 V-2>와 같이 가정할 경우 [그림 V-3]과 같이 누진적인 소득세제 함수가 설정된다. [그림 V-3]의 (A)에서 푸른 점들은 『국세통계연보』상의 자료를 의미하고 붉은 선이 모형의 모수 설정을 통해 도출된 값이다. 동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모형에서 설정된 소득세제의 모숫값들은 현행 소득세제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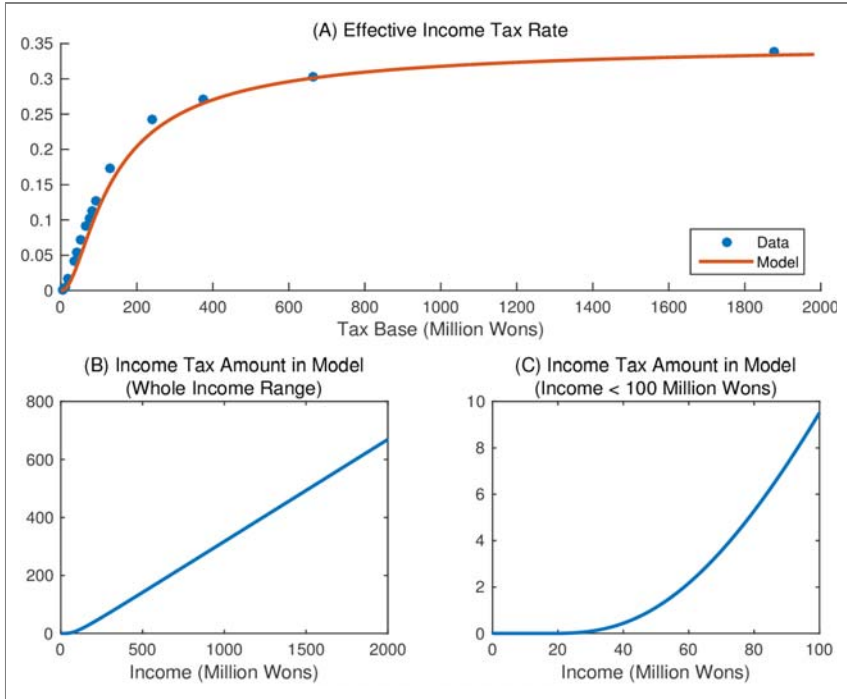
<표 V-2> 조세제도 관련 모수 설정

(단위: %)

	모수	설명	값	출처 또는 목표값
소득세	$\kappa_N$	소득세 면세점	1,700만원	2015 『국세통계연보』
	$\lambda_{N,0}$	누진조세함수 모수	0.3521	
	$\lambda_{N,1}$		1.7722	
	$\lambda_{N,2}$		0.0004	
상속세	$\kappa_E$	상속세 면세점	5억원	현행 제도
	$\lambda_{E,0}$	누진조세함수 모수	0.6966	
	$\lambda_{E,1}$		0.4421	
	$\lambda_{E,2}$		0.0106	
증여세	$\kappa_G$	증여세 면세점	5천만원	
	$\lambda_{G,0}$	누진조세함수 모수	0.6966	
	$\lambda_{G,1}$		0.4421	
	$\lambda_{G,2}$		0.0106	
연금보험료	$\tau_S$	국민연금 보험료율	0.045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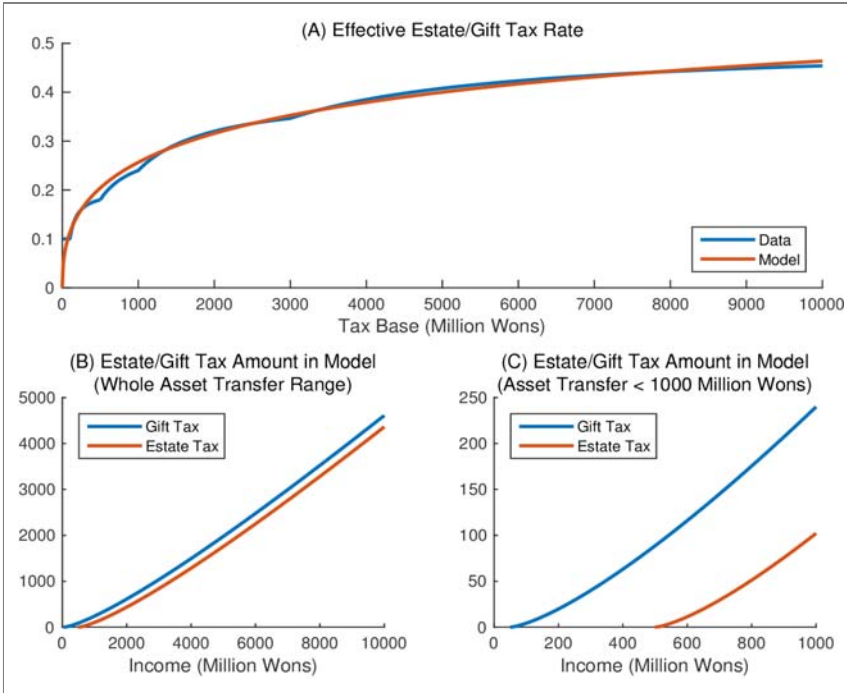
[그림 V-3] 소득세제의 모수 설정 결과



자료: 저자 작성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모수 설정은 면세점, 즉 공제액에 대한 모수인  $\kappa_E$ 와  $\kappa_G$ 만 달리하고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3개의 모수는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설정한다. 증여세의 경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  $\kappa_G$ 는 5천만원으로 설정한다. 한편, 상속세는 자녀 수 등 가족 구성원과 상관없이 5억원까지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어  $\kappa_E$ 는 5억원으로 설정한다. 상속·증여세제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3개의 모수는 <표 V-2>와 같이 설정한다. 이와 같은 모수 설정은 [그림 V-4]에서 나타나듯이 현행 제도를 잘 설명한다.

[그림 V-4] 상속·증여세제의 모수 설정 결과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연금보험료율  $\tau_s$ 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이며, 이를 사용자와 피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0.045로 설정한다.

### 3. 상속·증여세제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현행제도 하에서는 증여보다는 상속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는 상속의 경우 5억원까지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아 세부담이 없지만 증여는 5천만원부터 세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증여세제에서 공제제도를 각각 2억원과 5억원으로 완화할 경우 세대 간 자산 이전 및 소비, 노동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는 기준모형에서 다른 모수들은 고정시킨 채  $\kappa_G$ 의 값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제의 전반적인 실효세율의 변화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에 대한 시나리오로는 현행제도의 0.8배로 세부담을 완화시키거나, 1.2배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lambda_{E0}$ 와  $\lambda_{G0}$ 를 기준모형 대비 0.8배와 1.2배로 변화시킨다.

## 가. 자산이전

〈표 V-3〉에서 총 자산이전 규모를 살펴보면 증여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거나 실효세율은 낮추어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경우 부모세대로부터 자녀세대로의 자산이전이 확대된다. 또한, 증여세제의 공제규모를 확대하여 상속과 증여 간의 세부담 격차가 작아질 경우 부모세대는 상속을 줄이고 증여를 확대한다. 이는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의 자산이전의 시기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산이전에 대한 절대적인 세부담 수준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증여의 증가폭이 상속의 감소폭보다 커 절대적인 세대 간 자산이전의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을 낮출 경우에도 상속을 줄이고 증여를 확대하여 전반적인 자산이전의 시기가 빨라진다. 다만 실효세율을 낮출 경우 제3기의 상속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제4기의 상속은 감소한다. 이는 제3기와 제4기의 상속에 대한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제3기의 상속은 우발적 동기로 인한 상속이 포함되어 있고, 제4기의 상속은 모두 이타적 동기로 인한 상속이다. 증여 또한 이타적 동기로 인한 자산이전이기에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이 낮아질 경우 이타적 동기로 인한 자산이전의 규모와 시기가 빨라져 제4기의 상속은 감소한다. 제3기에 발생하는 우발적 동기로 인한 상속은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하려던 자산이 아닌 본인이 제4기에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저축한 자산이 우발적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이다.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낮아질 경우 제3기의 저축에 대한 비용이 감소해 우발적 상속이 증가하는 효과가 존재한다. 다만 제3기의 상속이 모두 우발적 동기로 인한 상속은 아니다. 이는 경제주체가 제3기 말에  $(1-\theta)$ 의 확률로 사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타적

동기에 의한 상속으로 볼 수 있다.

〈표 V-3〉 상속·증여세제에 따른 자산이전 규모 변화

(단위: %)

		공제금액 증가		실효세율 변화	
		2억원	5억원	0.8배	1.2배
총자산이전	경제 전체	9.71	19.01	5.45	-4.99
	제1기	11.23	20.46	4.46	-4.15
	제2기	-0.64	9.15	12.23	-10.72
상속	경제 전체	-7.23	-11.18	-0.03	0.29
	제1기	-4.51	-6.38	1.79	-1.44
	제2기	-39.84	-68.75	-21.86	21.02
증여	경제 전체	33.23	60.93	13.05	-12.32
	제1기	36.40	63.38	8.71	-8.49
	제2기	20.44	51.03	30.56	-27.79

주: 현행 제도 대비 변화율임

자료: 저자 작성

## 나. 자산수준

상속·증여세의 세부담 완화는 경제 전체의 자산을 증가시킨다. 상속·증여세는 부모세대가 축적한 자산을 자녀세대에게 이전할 때 발생한다. 이는 상속·증여세가 자산축적, 즉 저축에 대한 비용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속·증여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는 저축을 유인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자산 규모가 증가한다.

하지만 증여세제의 공제규모를 확대한 경우 자산규모의 증감 여부는 세대 별로 상이하다. 특히, 다른 세대와는 달리 제4기 초의 자산수준이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실효세율을 감소시킨 경우와 비교해 증여세제의 공제규모를 확대시킨 경우 부모세대는 자녀세대로 증여를 통해 자산이전을 앞당길 유인이 더 크다. 즉, 증여세제의 공제규모를 확대한 경우 제3기의 부모들은 저축을 통해

제4기로 자산을 이전하기 보다는 자녀세대로 이전하는 자산의 규모가 더 커져 제4기 초의 자산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V-4〉 상속·증여세제에 따른 기초자산 수준 변화

(단위: %)

		공제금액 증가		실효세율 변화	
		2억원	5억원	0.8배	1.2배
경제 전체		0.96	2.41	1.10	-0.89
자녀 세대	소계	2.67	5.66	1.35	-1.11
	제1기	-	-	-	-
	제2기	2.67	5.66	1.35	-1.11
부모 세대	소계	0.55	1.88	1.45	-1.18
	제3기	1.29	3.08	1.40	-1.14
	제4기	-4.51	-6.38	1.79	-1.44

주: 1. 현행 제도 대비 변화율임  
 2. 제1기 초에는 자산이 없음  
 자료: 저자 작성

#### 다. 노동시간

상속·증여세의 세부담 완화는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상속·증여세의 세부담 완화는 자녀세대의 노동시간에 두 가지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수준의 증가로 인한 소득효과는 자녀세대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세부담 완화는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인 포기해야 하는 자신 또는 자녀의 미래의 소비를 증가시킨다. 기회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여가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즉,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상속·증여세의 세부담 완화는 대체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다만, 제2기에는 실효세율을 증가시켰을 경우에도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체효과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 모형에서 제3기와 제4기에는 은퇴한 가구로 가정해 노동공급을 하지 않는다.

〈표 V-5〉 상속·증여세제에 따른 노동시간 변화

(단위: %)

		공제금액 증가		실효세율 변화	
		2억원	5억원	0.8배	1.2배
자녀 세대	경제 전체	-0.54	-1.04	-0.33	0.19
	제1기	-0.76	-1.55	-0.52	0.46
	제2기	-0.30	-0.50	-0.13	-0.10

주: 현행 제도 대비 변화율임  
자료: 저자 작성

### 라. 소비

세대 간 자산이전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경제의 전체적인 소비수준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세대별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자녀세대의 경우 부모 세대로부터의 자산이전이 증가하여 소비 또한 증가한다. 반면, 부모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비수준이 감소한다. 부모세대의 소비 감소가 부모세대의 효용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세대의 효용은 자신의 소비뿐만 아니라 자녀의 효용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자산이전으로 인한 자녀의 효용 증가는 결국 부모의 효용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표 V-6〉 상속·증여세제에 따른 소비 수준 변화

(단위: %)

		공제금액 증가		실효세율 변화	
		2억원	5억원	0.8배	1.2배
경제 전체		0.21	0.62	0.35	-0.18
자녀 세대	소계	0.82	1.81	0.64	-0.47
	제1기	1.23	2.56	0.89	-0.79
	제2기	0.33	0.93	0.34	-0.09
부모 세대	소계	-0.86	-1.50	-0.18	0.34
	제3기	-0.73	-1.15	-0.29	0.46
	제4기	-1.31	-2.71	0.23	-0.09

주: 현행 제도 대비 변화율임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을 감소시켰을 경우 제4기의 소비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속세의 실효세율 감소가 저축에 대한 비용의 감소로 인하여 부모세대의 소비 평탄화에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4. 상속·증여세제의 변화가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

상속·증여세제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부의 재분배이다. 이에 상속·증여세제가 자산, 소득, 소비에 대한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앞 절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와 동일한 상황에 대해 분석한다. 불평등도에 대한 지표로는 지니계수를 살펴본다.<sup>22)</sup>

##### 가. 자산

증여세의 공제제도가 확대될 경우 지니계수를 통해 측정된 경제 전체적인 불평등도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속·증여세의 강화가 부의 불평등도를 완화시킨다는 통념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단순한 가정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모형에서 가계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자산수준과 노동생산성에 대한 차이 이외의 다른 요소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특히 부모세대의 효용은 동일한 효용함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때 자신의 소비 이외에 자녀의 소비 수준이 부모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자녀의 소비 수준이 낮다면 부모는 자산이전을 통해 자녀의 소비 수준을 높임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큰 반면, 소비 수준이 높은 자녀를 둔

---

22) 본 일반균형모형의 자산, 소득, 소비의 지니계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의 데이터 상에서 나타나는 지니계수보다 크게 나타난다. 설문조사에 기초한 자산, 소득, 소비에 대한 자료는 분포의 양 꼬리 부분이 과소표집되는 문제점이 있어 불평등도를 과소계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자료들은 상속·증여세제의 대상이 되는 고자산가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불평등도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본 일반균형분석에서는 상속·증여세제의 효과 분석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고자산가들을 분포에 포함시켜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난다. 특히, 모수 설정 시 우리나라의 GDP에서 상속·증여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하도록 분포를 설정하였다.

부모의 경우 자산이전으로 인한 한계효용이 상대적으로 작다. 소비의 수준은 자산의 수준과 비례한다. 이에 증여세의 공제제도를 확대할 경우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부모가 낮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자녀에게 이전하는 자산의 규모가 커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자산 불평등도는 감소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동기에 대한 가정이 달라질 경우 본 연구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제Ⅲ장에서 논의하였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동기는 이타적(altruistic) 동기 이외에도 자기만족적(joy-of-giving 또는 warm-glow), 전략적(strategic 또는 exchange), 우발적(accidental) 동기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이 중 어느 하나의 동기에 의해서만 자산이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자기만족적 동기에 의해서 자산을 이전한다는 가정 하에 모형을 설정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로의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 시 자녀의 자산 수준이나 소비 수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재분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증여세제의 완화가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자산이전의 동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을 완화한 경우 자산의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V-7>에서 앞의 경우와는 달리 실효세율이 낮아질 경우 자산의 불평등도는 오히려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 모형에서 증여는 이타적(altruistic) 동기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반면 상속은 이타적(altruistic) 동기와 함께 우발적(accidental) 동기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에 증여세의 공제제도 확대는 증여를 확대하고 상속을 축소시키는 정책으로 이타적(altruistic) 동기에 의한 자산이전을 강화하고 우발적(accidental) 동기에 의한 자산이전은 약화시킨다.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을 낮추는 정책은 상속이나 증여와 관계없이 자산이전 전반을 촉진시키는 정책으로 이타적(altruistic) 동기와 우발적(accidental) 동기에 의한 자산이전을 모두 강화시킨다. 즉, 증여세의 공제규모를 확대한 경우와는 다르게 실효세율을 낮춘 경우 고자산가인 부모가 자녀의 자산수준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우발적으로 상속하는 규모가 증가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노동생산성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고자산가인 경우 자녀도 고자산가일 확률이 높아 실효세율이 감소할 경우 자산의 불평등도는 악화된다. 이와 더불어 실효세율의 감소는 자산축적의 동기도 강화시킨다. 이는 자산 수준이 이미 높고 노동생산성도 높은 자들의 자산을 빠르게 축적시켜 부모 세대의 불평등도가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효세율의 감소는 부모세대의 자산이 자녀세대로 대물림되는 경로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7〉 상속·증여세제에 따른 기초자산 지니계수 변화

		현행제도	공제금액 증가		실효세율 변화		
			2억원	5억원	0.8배	1.2배	
지니 계수	경제 전체	0.7577	0.7533	0.7507	0.7611	0.7551	
	자녀 세대	소계	0.7931	0.7834	0.7773	0.7961	0.7911
		제1기	-	-	-	-	-
		제2기	0.7931	0.7834	0.7773	0.7961	0.7911
	부모 세대	소계	0.7279	0.7268	0.7266	0.7315	0.7249
		제3기	0.6915	0.6898	0.6887	0.6948	0.6888
		제4기	0.7922	0.7877	0.7877	0.7979	0.7870
변 화 율 (%)	경제 전체	0.00	-0.59	-0.92	0.44	-0.34	
	자녀 세대	소계	0.00	-1.22	-2.00	0.38	-0.25
		제1기	-	-	-	-	-
		제2기	0.00	-1.22	-2.00	0.38	-0.25
	부모 세대	소계	0.00	-0.15	-0.19	0.49	-0.41
		제3기	0.00	-0.25	-0.41	0.48	-0.40
		제4기	0.00	-0.57	-0.57	0.72	-0.66

주: 제1기 초에는 자산이 없음  
자료: 저자 작성

## 나. 소득

상속·증여세제가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 지니계수와 다소 다르다. 상속·증여세제가 완화될수록 경제 전체의 소득 불평등도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녀세대의 소득 불평등도가 자산 불평등도와는 달리 악화된 것에 기인한다. 한편, 부모세대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고 자산소득과 정부로부터의 정액 이전소득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도는 자산 불평등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녀세대의 경우 소득 불평등도가 자산 불평등도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는 증여세의 공제제도를 완화한 경우이다. 즉, 이타적(altruistic) 동기에 의한 자산이전 경로가 강화되고 우발적(accidental) 동기에 의한 자산이전 경로가 약화된 경우에 자녀세대의 소득 불평등도가 자산 불평등도와 달리 악화된다. 이는 자녀세대의 근로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된 것에 기인한다. 부모가 이타적(altruistic) 동기에 의해 자산을 이전할 경우 부모는 근로소득이 낮아 소비수준도 낮은 자녀에게 더 많은 자산을 이전한다. 이에 노동생산성이 낮은 자녀의 경우 자신의 여가를 포기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을 통해 증가시키는 효용보다는 자신의 근로소득을 낮춤으로써 부모로부터의 이전소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여가를 증가시킴으로써 얻는 효용이 더 클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낮은 근로소득을 부모가 이전소득으로 완전히 상쇄시켜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녀세대의 소득 불평등도는 악화된다. 부모의 이전소득 증가 크기가 자녀의 근로소득 감소 크기보다 작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타적(altruistic)인 부모의 효용은 자녀의 소비뿐만 아니라 여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앞의 경우 자녀의 여가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감소하여 줄어드는 자녀의 소비를 부모가 완전히 보완할 필요는 없다. 또한 자산이전으로 인한 부모 자신의 소비수준이 감소하는 것도 부모의 효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감소한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이전의 규모는 작게 된다.

〈표 V-8〉 상속·증여세제에 따른 소득 지니계수 변화

		현행제도	공제금액 증가		실효세율 변화		
			2억원	5억원	0.8배	1.2배	
지니계수	경제 전체	0.7465	0.7478	0.7491	0.7484	0.7453	
	자녀세대	소계	0.6943	0.6957	0.6971	0.6962	0.6933
		제1기	0.6921	0.6947	0.6971	0.6939	0.6905
		제2기	0.6875	0.6877	0.6882	0.6895	0.6869
부모세대	소계	0.7281	0.7272	0.7270	0.7318	0.7253	
	제3기	0.6917	0.6901	0.6891	0.6951	0.6891	
	제4기	0.7925	0.7882	0.7884	0.7983	0.7876	
변화율 (%)	경제 전체	0.00	0.17	0.35	0.25	-0.16	
	자녀세대	소계	0.00	0.20	0.40	0.27	-0.15
		제1기	0.00	0.37	0.73	0.26	-0.22
		제2기	0.00	0.03	0.11	0.29	-0.09
	부모세대	소계	0.00	-0.13	-0.16	0.50	-0.39
		제3기	0.00	-0.24	-0.38	0.49	-0.38
		제4기	0.00	-0.53	-0.51	0.74	-0.61

자료: 저자 작성

#### 다. 소비

소비에 대한 지니계수는 상속·증여세제가 완화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타적(altruistic) 동기에 의한 자산이전은 궁극적으로 자녀의 소비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자산 불평등도의 변화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이타적(altruistic) 동기에 의한 자산이전을 강화시키고 우발적(accidental) 동기에 의한 자산이전을 약화시키는 증여세의 공제규모를 확대할 경우에는 부모세대의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세대의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자산이전과 궁극적으로 소비이전이 강화되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소비의 불평등도가 개선된다.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자산의 불평등도가 증

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불평등도는 감소한다. 이는 우발적(accidental) 상속의 증가와 저축의 증가는 자산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자산의 불평등도를 증가시키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만, 소비에는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부모의 이타심은 자녀의 소비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공제규모를 확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을 감소시킨 경우에도 이타적(altruistic) 동기로 인한 자산이전이 소비의 불평등도를 설명하는데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9〉 상속·증여세제에 따른 소비 지니계수 변화

		현행제도	공제금액 증가		실효세율 변화		
			2억원	5억원	0.8배	1.2배	
지니 계수	경제 전체	0.4362	0.4348	0.4329	0.4350	0.4375	
	자녀 세대	소계	0.4613	0.4595	0.4567	0.4600	0.4629
		제1기	0.4278	0.4256	0.4222	0.4267	0.4287
		제2기	0.4933	0.4920	0.4899	0.4918	0.4956
	부모 세대	소계	0.3793	0.3773	0.3755	0.3774	0.3810
		제3기	0.3850	0.3840	0.3824	0.3828	0.3870
		제4기	0.3142	0.3074	0.3012	0.3137	0.3147
변 화 율 (%)	경제 전체	0.00	-0.31	-0.75	-0.26	0.31	
	자녀 세대	소계	0.00	-0.39	-0.99	-0.27	0.36
		제1기	0.00	-0.50	-1.30	-0.24	0.22
		제2기	0.00	-0.26	-0.69	-0.31	0.48
	부모 세대	소계	0.00	-0.52	-1.01	-0.49	0.45
		제3기	0.00	-0.27	-0.67	-0.58	0.51
		제4기	0.00	-2.15	-4.14	-0.16	0.15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소비의 경우 효용함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이 낮아질 경우 전반적으로 소비의 수준이 증가한다. 이 때 저소비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저소비 계층의 소비가 고소비 계층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 또한 소비의 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이 낮아질 경우 저축의 동기도 증가하는데, 저자산·저소득 계층은 저축보다는 소비를, 그리고 고자산·고소비 계층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더 빠르게 증가시켜 소비의 불평등도는 낮아지고 자산 및 소득의 불평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5. 일반균형모형 분석에 대한 소결

본 장에서는 Nishiyama(2002)를 토대로 구축한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상속·증여세제의 변화가 세대 간 자산이전 및 소비, 노동시간 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속·증여세제의 완화는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의 자산이전 규모와 시기를 앞당기고, 이로 인해 자녀세대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부모세대의 소비는 감소한다. 상속·증여세제의 완화는 자산의 이전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축에 대한 비용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자산 축적을 증가시킨다. 한편, 자녀세대로의 자산 이전은 소득효과로 인하여 자녀세대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상속·증여세제가 자산, 소득, 소비의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제의 완화가 경제 전체의 자산 불평등도를 오히려 개선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상속·증여세제의 완화는 궁극적으로 경제주체의 효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의 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결과 또한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이타적(altruistic) 동기에 의해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타적(altruistic) 동기에 의한 자산이전은 부모세대가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 시 자녀세대의 소비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소비 수준이 낮은 자녀에게 더 많은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부모의 효용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상속·증여세제를 완화할 경우 경제 주체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부의 재분배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 불평등도가

낮아진다. 이 경우 상속·증여세제는 오히려 경제주체의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에 왜곡을 발생시켜 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상속·증여세제가 불평등도를 악화시킨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이 현실에서의 마찰적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현실에서는 자산이전에 대한 동기로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이타적(altruistic) 동기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타심의 정도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는데, 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면 이타심은 자산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속·증여세제가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이에 자산이전의 동기에 따른 상속·증여세제와 불평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상속·증여세제의 완화가 불평등도를 오히려 개선시킬 수 있는 이론적인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 VI. 실증회귀분석

---

### 1.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증여행위에 미치는 영향

#### 가. 가설설정

부모세대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wealth)를 생전에 증여할지, 아니면 사후에 상속할지 여부를 고민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이전에 대한 비용 또는 가격이기 때문에 부모세대의 상속·증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된 이론적 모형을 통해서도 설명된다. 하지만 부모세대가 자산이전의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자식을 위해서라기보다 주는 행위자체에 기쁨을 얻을 경우에는 상속세제와 증여세제가 상속·증여행위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제가 상속·증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실증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검증한다.

(가설 1)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수록 자산이전의 비용이 증가하여 증여행위가 위축된다.

자산이전동기가 이타적 동기이거나 전략적 동기의 경우에는 상속세제와 증여세제가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자산이전의 ‘가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증여세 부담의 증가는 자산이전의 가격 증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수록 자산이전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증여행위가 위축된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세청에서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제공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1965~2014년까지의 시계열 자료와 한국은

행에서 제공하는 실질 GDP 자료 등을 사용한다.

## 나. 분석모형

본 연구의 시계열 분석은 기본적으로 Joulfaian(2004), 김진·원종학(2006), 김진(2009)를 토대로 한다. 김진·원종학(2006)과 김진(2009)은 Joulfaian(2004)의 연구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되, 한국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진(2009)은 김진·원종학(2006)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1975~2003년)을 1975~2007년으로 확장하여 동일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증여행위의 대리변수로 실질증여세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실질증여재산가액으로 사용한다. 실질증여세수는 [과세표준×세율을 소비자 물가지수(CPI)로 조정한 값이기 때문에 세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율의 변화는 크게 과세표준 효과와 세수 효과로 구분된다. 전자는 세율의 변화가 과세표준의 변화를 통해 세수입에 영향을 주고, 후자는 세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예컨대 증여세율의 증가는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켜 증여행위가 위축되고, 이는 결국 과세표준 감소로 이어져 증여세수가 감소한다. 반면 세율의 증가는 증여세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기존 연구들이 추정한 증여가격과 증여세수 간의 음(-)의 관계는 세율 증가에 따른 과세표준 감소가 세수입 증가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세율의 변화가 증여행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율의 변화 자체가 실질증여세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율의 변화가 증여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경우에도 증여세수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증여세수는 증여행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실질증여세수 대신 과세표준을 증여행위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적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증여행위가 아닌 공제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증여행위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실질증여재산가액을 사용한다.

둘째, Joulfaian(2004)과 달리 김진·원종학(2006)과 김진(2009)은 상속가격과 증여가격 산출 시 유효세율(=세수/과세표준)을 사용한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유효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공제제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예컨대 증여세율과 증여세 공제한도가 변화하지 않아도 경제성장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세수입과 과세표준은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증여세율이 인하되어 증여행위가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증여행위가 증가할수록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가한다. 하지만 증여세율의 인하는 증여세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세율변화로 인한 증여세수 감소가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증여세수 증가를 어느 정도 상쇄하느냐에 따라 유효세율의 변화가 달라진다. 따라서 유효세율은 상속·증여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의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에 한계를 가진다. Joulfaian(2004)은 상속·증여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를 반영할 수 있는 상속가격과 증여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추정된 한계세율(predicted marginal tax rates)을 사용한다. Joulfaian(2004)은 매년 동일한 금액의 재산이 증여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매년 고정된 증여재산가액에 이용 가능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한계세율로 사용한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실질 GDP의 증가를 고려하여 조정한다. Joulfaian(2004)은 상속세 과세자료에서 제공하는 1995년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600만달러)을 사용하여 한계세율을 추정한다. 미국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여러 차례 개편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이 증여된다 하더라도 어떤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Joulfaian(2004)에서 추정한 한계세율은 이러한 세제개편 내용을 반영한다. 그리고 각 연도별로 이용 가능한 공제액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공제제도의 변화 역시 반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Joulfaian(2004)의 동일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s) 추정하고 이를 상속 및 증여가격 산출 시 사용한다.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은 증여가격과 증여재산가액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사용하는 증여가격은 Joulfaian(2004)의 자산이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근거로 추정된다. Joulfaian(2004)의 자산이전모형은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sup>23)</sup>

-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부(wealth)를 상속 또는 증여한다.
- Joulfaian(2004)의 자산이전모형은 3기간 모형으로 1기와 2기 중 한 시점을 정하여 증여를 할 수 있고 3기에는 상속을 한다.
-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격을 서로 비교하여 생전(1기 또는 2기)에 증여할지 아니면 사후(3기)에 상속할지를 결정한다.

부모는 다음의 식 (VI-1)에 제시된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며, 1계조건 식 (VI-2)는 1기 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은 1기의 증여가격과 2기의 증여가격 및 상속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text{Max } U = (G_1, G_2, B) \quad \text{s.t. } P_{G1}G_1 + P_{G2}G_2 + P_B B = W \quad \text{식 (VI-1)}$$

$$\frac{U_{G1}}{U_{G2}} = \frac{P_{G1}}{P_{G2}}, \quad \frac{U_{G1}}{U_B} = \frac{P_{G1}}{P_B} \quad \text{식 (VI-2)}$$

여기서  $G_1$ 은 1기의 증여를,  $G_2$ 는 2기의 증여를,  $B$ 는 상속을 의미한다. 1기는 현재를 의미하고 2기는 미래를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증여, 미래증여, 미래상속을 경제적 재화(economic goods)로 보고 각 재화의 가격을  $P_{G1}$ ,  $P_{G2}$ ,  $P_B$ 로 정의한다.

1계조건하에서 (t+n)기의 상속을 하는 경우, Joulfaian(2004)에서 제시한 t기의 상속 및 증여가격은 각각 식 (VI-3)과 식 (VI-4)를 통해 산출되며, 자산 수익률( $\delta$ )과 할인율( $\pi$ )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식 (VI-3)과 식 (VI-4)는 각각 식 (VI-5)과 식 (VI-6)으로 표현된다.

$$P_B = \frac{(1+\delta)^n}{(1-\tau_e)(1+\pi)^n} \quad \text{식 (VI-3)}$$

---

23) 김진·원종학(2006)과 김진(2009)에서도 Joulfaian(2004)의 이론적 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 모형은 향후 실증회귀분석 모형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Joulfaian(2004)의 이론적 모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P_G = \frac{(1 + \tau_g)(1 + \delta)^n}{(1 + \pi)^n} \quad \text{식 (VI-4)}$$

$$P_B = \frac{1}{(1 - \tau_e)} \quad \text{식 (VI-5)}$$

$$P_G = 1 + \tau_g \quad \text{식 (VI-6)}$$

여기서  $\tau_e$ 는 상속세 세율,  $\tau_g$ 는 증여세 세율,  $\delta$ 는 자산 수익률,  $\pi$ 는 시간 할인율을 의미한다.

증여자 자산이 주식, 부동산 등인 경우에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경우 미국의 양도소득세 제도하에서 증여세 가격은 식 (VI-7) 또는 식 (VI-8)을 통해 산출된다.

$$1976 \text{ 이전: } P_G = \frac{(1 + \tau_g + \frac{\tau_d \beta \tau_g}{1 - \tau_d \beta})(1 + \delta)^n}{(1 + \pi)^n + \tau_c(\beta - \tau_g) - \tau_c[(1 + \pi)^n - 1]} \quad \text{식 (VI-7)}$$

$$1977 \text{ 이후: } P_G = \frac{(1 + \tau_g + \frac{\tau_d \beta \tau_g}{1 - \tau_d \beta})(1 + \delta)^n}{(1 + \pi)^n + \tau_d \beta(1 - \tau_g) - \tau_c[(1 + \pi)^n - 1]} \quad \text{식 (VI-8)}$$

여기서  $\tau_c$ 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beta$ 는 양도차익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Joulfaian(2004)와 동일하게 모든 자산은 현금으로 이전되었다고 가정하고 식 (VI-5)와 식 (VI-6)을 사용하여 상속가격과 증여가격을 산출한다.

Joulfaian(2004)의 이론적 모형을 근거로 다음의 회귀방정식 식 (VI-9)을 구축하여 증여가격과 증여행위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

$$\ln rGtaxes_t = c + \beta_1 \ln GP_t + X_t \gamma + \epsilon_t \quad \text{식 (VI-9)}$$

- $\ln rGtaxes_t$ : t년도의 실질 증여재산가액의 로그변수
- $\ln GP_t$ : t년도 증여가격의 로그변수
- $X_t$ 는 다음의 설명변수들을 의미함
- $d2004$ : 2004년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포함된 설명변수로 2004년 이후에는 1의 값을, 그 이전에는 0의 값을 갖는 가변수(dummy variable)
- $\ln rGDP_t$ : 실질 GDP의 로그변수

본 연구는 증여행위에 대한 대리변수로 증여재산가액을 사용한다. 증여재산가액에는 재차증여가액을 포함한다.<sup>24)</sup>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CPI로 조정된 실질 증여재산가액의 로그변수이고, 주요 설명변수는 증여가격이다. 본 연구는 Joulfaian(2004)가 사용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s)을 추정하고 추정된 한계세율을 사용하여 상속 및 증여가격을 산출한다. 본 연구가 추정한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s)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단계: 2014년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제공된 피상속인수, 증여 신고인원수, 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의 정보를 사용하여 1인당 상속재산가액(17억 7,600억원)과 증여재산가액(2억 8,900억원)을 산출한다.
- (2) 단계: 물가상승률로 조정된 후 연도별 자녀 1명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 (3) 단계: (2)단계에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한계세율을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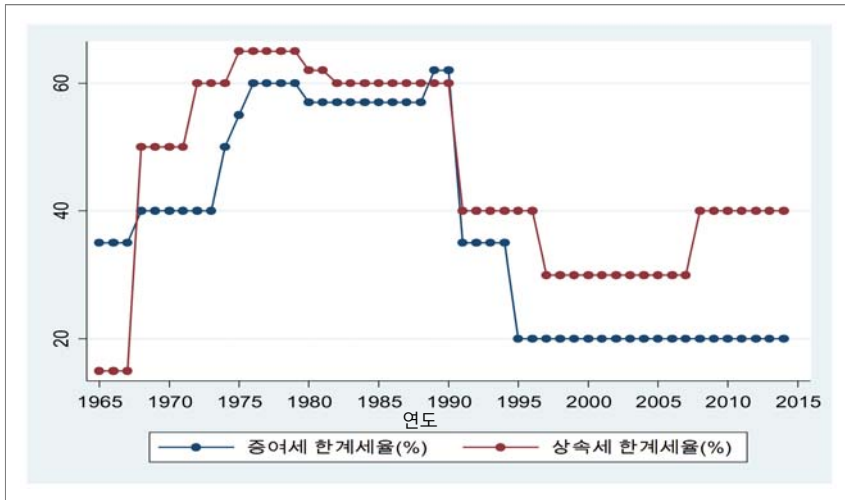
본 연구가 추정한 상속세와 증여세 한계세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VI-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계단 모양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 기의 한계세율과 다음 기의 한계세율이 동일한 경우가 있다. 이는 t기와 t+1기 한계세율

24) 재차증여란 과거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의미한다.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t$ 기와  $t+1$ 기 한계세율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각 0.907과 0.956으로 거의 1에 가깝게 나타났다. 또한 상속세제 개편은 일반적으로 증여세제 개편과 함께 이루어지고 세제개편 방향 역시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율 간의 상관관계 역시 높다.<sup>25)</sup>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증여 및 상속 가격이 증여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Joulfaian(2004)의 이론적 모형에서 제시한 것처럼 미래 증여가격과 상속가격이 증여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증여가격과 증여행위의 대리변수인 실질증여재산가액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림 VI-1] 연도별 상속·증여세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s)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본 연구의 설명변수는 (1) 2004년 이후에는 1의 값을, 그 이전에는 0의 값을 갖는 가변수(dummy variable)와 (2) 실질 GDP의 로그변수를 포함한다.

25) 분석대상 표본에서 산출한 상속세와 증여세 한계세율 간의 상관계수는 0.806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전자는 2004년 도입된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후자는 자산가격 증가 및 경기순환 등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 다. 분석자료 및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은 <표 VI-1>에 제시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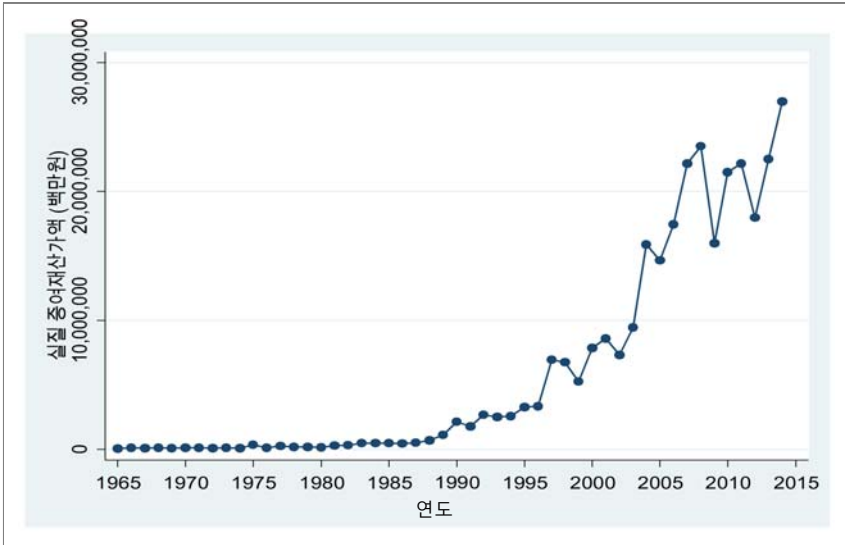
<표 VI-1> 기초통계량 I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실질 증여재산가액(백만원)	50	5,970,584	8,152,618	51,125	26,983,830
증여세 한계세율(%)	50	37.34	16.48	20.00	62.00
상속세 한계세율(%)	50	45.28	14.90	15.00	65.00
증여가격	50	1.37	0.16	1.20	1.62
상속가격	50	1.97	0.54	1.18	2.86
실질 GDP(십억원)	50	535,111	446,297	38,825	1,426,97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 각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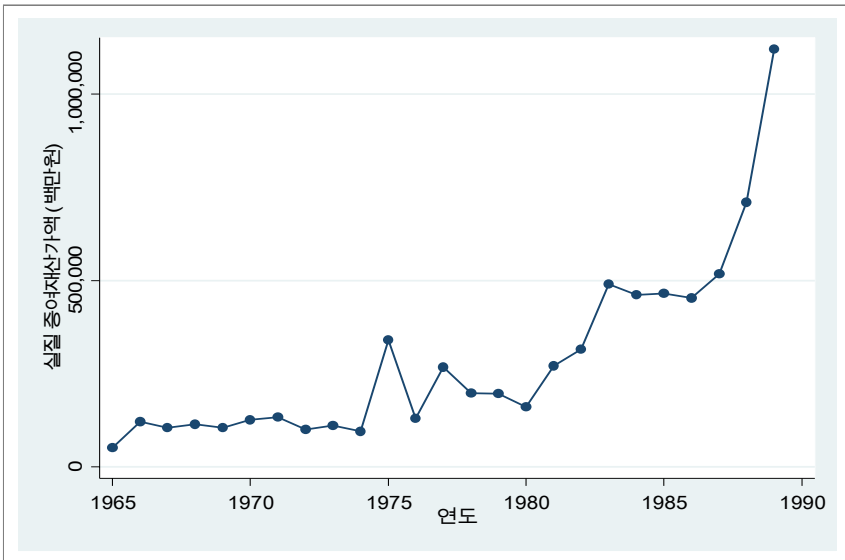
실질 증여재산가액은 [그림 VI-2]에서 제시된 것처럼 1980년대 말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1990년대 이전의 실질증여재산가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 증여재산가액이 크게 변하지 않다가 197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특징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실질증여재산가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01년과 2004년에 유형별 포괄주의와 완전포괄주의가 각각 도입되면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VI-2] 연도별 실질증여재산가액: 1965~2014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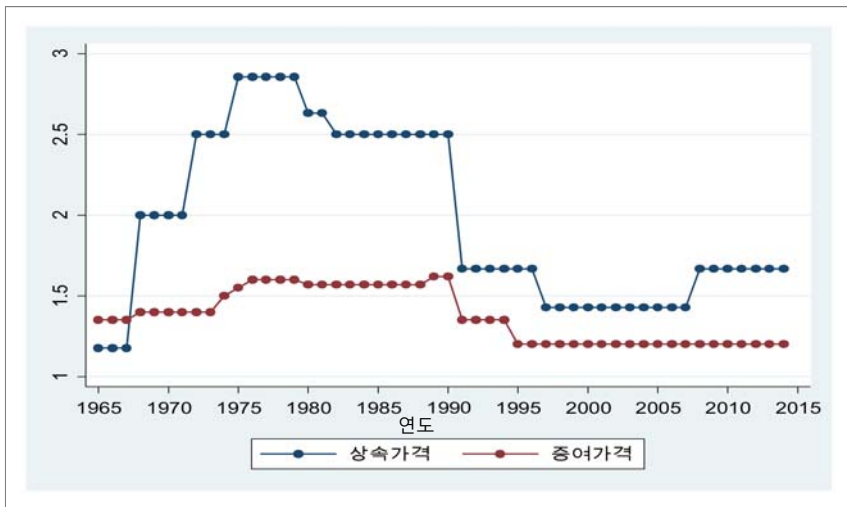
[그림 VI-3] 연도별 실질증여재산가액: 1965~1990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 각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우리나라 과세체제와 공제제도를 반영하여 산출한 상속가격과 증여가격은 [그림 VI-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상속가격은 1965년에 상당히 낮았으나 1975년까지 단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1975년에 정점을 찍은 후 2000년대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하락하였다가 2008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증여가격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그 이후 1990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1990년부터 단계적으로 하락하여 1995년에는 가장 낮은 1.20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그 수준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림 VI-4] 연도별 상속가격과 증여가격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본 연구는 통상최소자승법(OLS)를 사용하여 회귀방정식 (VI-9)를 추정하며, 그 결과는 [표 VI-2]에 제시한다.<sup>26)</sup> <표 VI-2>의 첫 번째 열을 먼저 살펴보면 현재 기(t)의 증여가격에 대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3.496%로 이는 현재 기(t)의 증여가격 1% 증가는 실질 증여재산가액(t)의 3.496% 감소

26) 일반적으로 1차 자기상관(first order autocorrelation)이 관측된다면 회귀방정식을 1차 차분한 후 OLS를 사용하여 다시 추정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차 자기상관이 관측되지 않았다.

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증여가격과 실질 증여재산가액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VI-5]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여기서 x축은 증여가격(로그값)을, y축은 실질증여재산가액을 의미한다. 증여가격에 대한 추정치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평균 증여한 계세율은 37.34%이다. 여기서 한계세율을 1%p 증가하면 증여가격( $=[1 + \tau_g]$ )은 0.73% 증가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증여가격의 0.73% 증가가 실질 증여재산가액의 2.55%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추정치는 한계세율이 1%p 증가가 실질증여재산가액의 2.55%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 기의 증여가격 증가는 자산이전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켜 현재 기의 증여를 불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I-2〉 회귀분석 결과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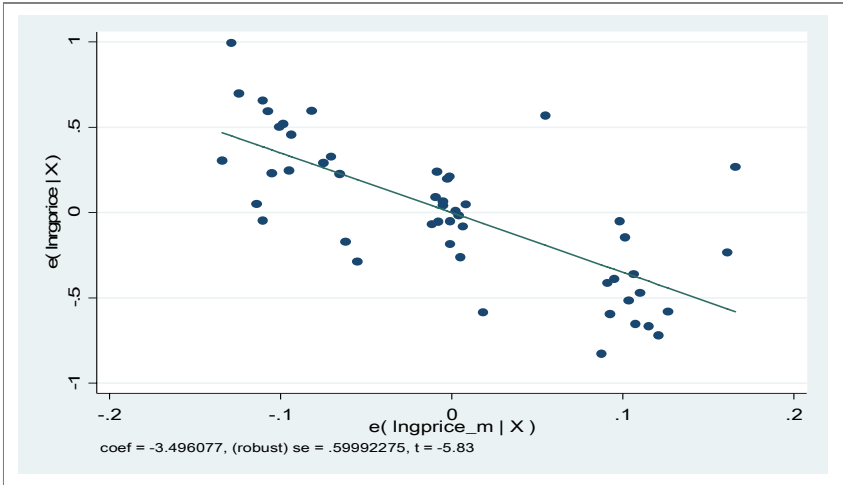
모델	모델 (1)
추정방법	OLS
종속변수	ln(실질증여재산가액)
ln(증여가격)	-3.496*** (0.600)
ln(실질 GDP)	1.413*** (0.065)
2004년 이후 더미변수	0.524*** (0.093)
상수	-9.385*** (1.253)
표본 수	50
R-squared	0.980

주: 1. 모델 (1)의 괄호안은 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한다.

2.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I-5] 증여가격과 실질증여재산가액 간의 관계



자료: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본 연구는 강건성 검증을 위해 추정된 한계세율을 최고법정한계세율로 대체하여 증여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VI-3>에 제시된 증여가격에 대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7.287로 이는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증여가격의 증가가 실질증여재산가액의 감소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추정치는 <표 VI-2>에 제시된 추정치보다 거의 2 배 이상 큰 수준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최고법정한계세율이 공제제도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VI-3> 회귀분석 결과 II

모델	모델 (2)
추정방법	OLS
종속변수	ln(실질증여재산가액)
ln(증여가격)	-7.287***
	(1.947)
ln(실질 GDP)	1.187***
	(0.112)

〈표 VI-3〉의 계속

2004년 이후 더미변수	0.894***
	(0.127)
상수	-3.225
	(2.746)
표본 수	50
R-squared	0.972

주: 1. 모델 (2)의 괄호안은 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한다.

2.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 2. 소득이 소비, 저축,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 가. 가설설정

주요 국가들의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부(wealth)가 부모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빠르게 이전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과세환경을 가지며, 이는 부(wealth)의 이전시점을 좀 더 앞당겨 궁극적으로 젊은 세대의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성장 기조하에서 소비가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증여세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증여세 완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증여로 인한 소득 및 자산 증가가 소비 및 저축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 및 저축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소비에 대한 소득 및 자산탄력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은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산이전은 이론적으로(여가를 정상재로 가정할 경우) 여가의 소비를 증가시켜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소득과 노동시간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sup>27)</sup>

27) 다만 자료의 한계로 본 연구의 소득변수에는 근로소득 등도 포함되어 있어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전자산과 노동시간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 2)와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미시자료인 재정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회귀분석을 수행한다.

- (가설 2) 증여로 인한 소득 및 자산증가는 소비와 저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가설 3) 증여로 인한 소득 및 자산증가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킨다.

본 연구는 (가설 2)를 검증하면서 증여로 인한 소득 및 자산증가가 단기적인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것이 증여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나. 분석모형

본 연구의 주 목적은 부모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부가 이전되었을 때 젊은 세대의 소비, 저축, 근로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 범위를 3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제한한다.<sup>28)</sup> 재정패널자료에서 타 가구 이전소득에 대한 정보는 2010년부터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분석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상속·증여를 포함한 타 가구 사적이전소득의 변화가 소비, 저축, 근로시간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추정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패널자료는 타 가구 이전소득을 받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로 상당히 낮고 상속·증여를 받은 가구의 비중은 더 낮다.<sup>29)</sup> 따라

---

것이 필요하나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28) 증여가 발생할 경우 자녀세대에는 자산이 증가하지만 부모세대에는 자산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부모세대의 행동도 경제 전체의 소비 및 저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 전체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증여로 인한 자녀세대의 소비 및 저축 효과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소비 및 저축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는 본 회귀분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29) 향후 연구에서 상속·증여재산액에 대한 소비 및 저축 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은 상속·증여세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 본 연구는 총소득 및 자산과 소비, 저축, 근로시간 간의 관계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V 장의 이론적 모형분석결과에 따르면, 증여로 인한 소득 및 자산증가는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비와 저축은 각각 소득 및 자산의 함수로 정의하고 회귀방정식을 구축한다. 우선 소비에 대한 회귀방정식식 (VI-10)을 살펴보자. 종속변수는 가구 소비지출액으로 가구의 소비지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소비지출은 비내구성 소비지출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는 가구 소득액이다. 가구 소득액이란 가구원들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자산이 증가할수록 순자산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부채의 증가는 한편으로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인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유동성제약을 완화시켜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소득 및 자산과 소비 간의 관계를 추정할 경우에 부채의 효과를 통제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변수에 포함한다. 본 연구는 가구원 수, 연도별 터미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였으며 이는 각각 가구 규모, 거시경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의 실증회귀분석 모형은 고정효과모형으로 관측되지 않는 시간불변요인뿐만 아니라 가구만이 가지는 고유한 시간추세도 고려한다.

$$\ln Const_{it} = c + \beta \ln Hinc_{it} + X_{it}\gamma + m_i + t_t + m_i t + e_{it} \quad \text{식 (VI-10)}$$

- $\ln Const_{it}$ :  $i$ 가구  $t$ 년도의 가구 지출소비액의 로그변수
- $\ln Hinc_{it}$ :  $i$ 가구  $t$ 년도의 가구 소득액의 로그변수
- $X_{it}$ 는 다음의 설명변수들을 의미
  - $Asset_{it}$ :  $i$ 가구  $t$ 년도의 총자산액의 로그변수
  - $Debt_{it}$ :  $i$ 가구  $t$ 년도의 총부채액의 로그변수
  - $Hfnum_{it}$ :  $i$ 가구  $t$ 년도의 가구원 수
- $m_i$ :  $i$ 가구의 관측되지 않는 시간불변요인(time invariant factors)
- $t_t$ :  $t$ 연도에서는 1의 값을, 그 밖에 다른 연도에서는 0의 값을 갖는 연

도별 가변수(dummy variable)

- $m_i t$ :  $i$ 가구만이 가지는 고유한 시간추세(individual specific time trends)
- $e_{it}$ : 오차항

본 연구는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회귀방정식 식 (VI-10)을 추정한다. 이때 가구만이 가지는 고유한 시간추세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회귀방정식 식 (VI-10)을 추정한다.

- (1 단계)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를 모두 1차 차분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가구의 고유한 시간불변요인은 제거된다. 하지만 가구만이 가지는 고유한 시간추세 변수가 1차 차분이 되면서 가구의 고유한 시간불변요인이 된다.
- (2 단계)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1 단계) 과정을 거쳐 1차 차분된 회귀방정식을 추정한다.

저축에 대한 회귀방정식은 식 (VI-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종속변수는 가구 저축액이다. 일반적으로 가구는 이전소득 발생 시 이를 소비하거나 저축을 한다. 이때, 부채를 상환하는 것도 저축으로 볼 수 있다. 재정패널자료에 있는 저축액 변수는 부채상환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자료에 있는 저축액에 부채상환액을 더하여 종속변수를 생성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는 소득, 자산 및 부채, 가구원 수, 연도별 터미로 이는 소비에 대한 회귀방정식에서 사용한 변수와 동일하나, 저축이 순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산 및 부채 변수는 1년 래그(lag)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또한 소비에 대한 회귀방정식 식 (VI-10)을 추정하는 데 사용했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저축에 대한 회귀방정식 식 (VI-11)을 추정한다.

$$\ln Saving_{it} = c + \beta \ln Hinc_{it} + X_{it} \gamma + m_i + t_i + m_i t + e_{it} \quad \text{식 (VI-11)}$$

- $\ln Saving_{it}$ :  $i$ 가구  $t$ 년도의 저축액(부채상환 포함)의 로그변수
- $\ln Hinc_{it}$ :  $i$ 가구  $t$ 년도의 총 가구소득액의 로그변수
- $X_{it}$ 는 다음의 설명변수들을 의미
  - $\ln Asset_{it-1}$ :  $i$ 가구  $t-1$ 년도의 총자산액의 로그변수
  - $\ln Debt_{it-1}$ :  $i$ 가구  $t-1$ 년도의 총부채액의 로그변수
  - $Hfnum_{it}$ :  $i$ 가구  $t$ 년도의 가구원 수
- $m_i$ :  $i$ 가구의 관측되지 않는 시간불변요인(time invariant factors)
- $t_i$ :  $t$ 연도에서는 1의 값을, 그 밖에 다른 연도에서는 0의 값을 갖는 연도별 가변수(dummy variable)
- $m_{it}$ :  $i$ 가구만이 가지는 고유한 시간추세(individual specific time trends)
- $e_{it}$ : 오차항

마지막으로 노동시간과 소득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방정식 식 (VI-12)를 구축한다. 노동시간과 소득은 내생성 문제가 존재한다. 이론적으로 소득의 변화가 노동시간에 영향을 주지만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내생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본 연구는 1년 래그(lag)된 소득변수를 사용한다. 또한 자산과 부채 역시 노동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자산의 증가로 인해 일하는 것보다 여가를 즐기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또한 부채가 많을수록 노동시간을 증가시켜 소득을 높이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구 규모, 거시경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가구원 수, 연도별 더미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노동시간에 대한 회귀방정식 식 (VI-12)는 1차 차분한 후 고정효과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ln Lh = c + \beta \ln Hinc_{it-1} + X_{it} \gamma + m_i + t_i + e_{it} \quad \text{식 (VI-12)}$$

- $\ln Lh$ :  $i$ 가구  $t$ 년도의 노동시간의 로그변수
- $\ln Hinc_{it-1}$ :  $i$ 가구  $t-1$ 년도의 총 가구소득액의 로그변수

- $X_{it}$ 는 다음의 설명변수들을 의미
  - $\ln Asset_{it}$ :  $i$ 가구  $t$ 년도의 총자산액의 로그변수
  - $\ln Debt_{it}$ :  $i$ 가구  $t$ 년도의 총부채액의 로그변수
  - $Hfnum_{it}$ :  $i$ 가구  $t$ 년도의 가구원 수
- $m_i$ :  $i$ 가구의 관측되지 않는 시간불변요인(time invariant factors)
- $t_i$ :  $t$ 연도에서는 1의 값을, 그 밖에 다른 연도에서는 0의 값을 갖는 연도별 가변수(dummy variable)
- $m_{it}$ :  $i$ 가구만이 가지는 고유한 시간추세(individual specific time trends)
- $e_{it}$ : 오차항

#### 다. 분석자료 및 결과

회귀분석을 위한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VI-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구 소비지출액은 평균 5,086만원이며, 가구 총소득은 평균 5,551만원이다.<sup>30)</sup> 여기서 가구 소비지출액은 주거비, 식료품비, 외식비, 유류비, 통신비, 가전제품 구입비, 사교육비, 보건 의료비 등으로 비내구재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을 의미하며, 가구 총소득은 <표 VI-4>에 제시된 모든 소득의 합을 의미한다. 일주일 총가구노동시간은 모든 가구원의 일주일 노동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가구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67시간으로 나타난다. 가구 총자산액과 총부채액은 각각 평균 2억 7,018만원과 5,2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자산은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등의 가치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가구원 수는 평균 3.62명이다.

---

30) 가구 총소득 대비 가구 소비지출액 비율이 10이상 되고 순자산이 음의 값을 갖는 표본은 이상치로 간주하여 본 연구의 회귀분석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VI-4〉 가구 총소득

소득		비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의미
부동산 임대소득		- 토지, 주택, 상가 및 사무실, 기타
이자 및 배당소득		
그 외 기타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퇴직연금 등		- 사회보험보조금, 퇴직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보장보험, 저축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타 가구 이전소득, 상속·증여재산
	공적이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정부지원연금소득, 보조금, 노인장기요양특별급여

자료: 원내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VI-5〉 기초통계량 II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비고
가구 소비지출액(만원)	6,345	5,086	2,909	
가구 저축액(만원)	6,345	1,122	1,699	부채상환액을 포함시킴
가구 주당 노동시간(시간)	5,747	67	27	
가구 총소득(만원)	6,345	5,551	12,814	
가구 총자산(만원)	6,345	27,018	36,650	
가구 총부채(만원)	6,345	5,237	10,882	
가구원 수(명)	6,345	3.62	1.12	

자료: 재정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소비와 저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각각 〈표 VI-6〉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열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첫 번째 열을 살펴보자. 열 (1)에서 모든 설명변수(가변수 제외)가 로그변수이기 때문에 설명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탄력성을 의미한다. 소비지출액에 대한 총소득의 탄력성은 0.084이며, 이는 총소득이 10% 증가할 경우 소비지출액은 0.84%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지출액에 대한 총자산의 탄력성은 0.012이며, 이는 총자산이 10% 증가

할 경우 소비지출액은 0.12%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 총부채는 소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탄력성은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원 수 1명의 증가는 소비지출의 0.1%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열을 살펴보자. 열(2)에서도 모든 설명변수는 로그변수이기 때문에 설명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탄력성을 의미한다. 저축액에 대한 소득의 탄력성은 0.346으로 이는 총소득의 10% 증가는 저축액의 3.46%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총자산은 저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부채는 저축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시간과 소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분석 결과는 <표 VI-6> 열(3)에 제시된다. 열(3)에서 총소득(t-1)의 추정치는 -0.0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진다. 이는 가구 총소득의 10% 증가가 가구의 1주일 총노동시간이 0.35%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총자산은 노동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이는 10% 유의수준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노동시간에 대한 총자산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는 총부채와 노동시간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표 VI-6> 회귀분석 결과 III

모델	모델 (1)	모델 (2)	모델 (2)
추정방법	FE	FE	FE
종속변수	$\Delta \ln(\text{가구 소비지출액})$	$\Delta \ln(\text{가구 저축액})$	$\Delta \ln(\text{가구 주당 노동시간})$
$\Delta \ln(\text{가구 총소득})$	0.084*** (0.015)	0.346*** (0.097)	
$\Delta \ln(\text{가구 총소득})$ t-1			-0.035*** (0.011)

〈표 VI-6〉의 계속

모델	모델 (1)	모델 (2)	모델 (2)
Δln(가구 총자산)	0.012**		0.013*
	(0.006)		(0.007)
Δln(가구 총부채)	0.003**		0.001
	(0.001)		(0.002)
Δln(가구 총자산) t-1		-0.002	
		(0.067)	
Δln(가구 총부채) t-1		-0.027*	
		(0.016)	
Δ가구원 수	0.112***	0.304*	0.099***
	(0.024)	(0.183)	(0.025)
상수	0.035***	0.180***	0.005***
	(0.001)	(0.006)	(0.001)
표본 수	5,076	3,807	3,438
R-squared	0.079	0.023	0.025

주: 1. 연도별 더미는 통제변수에 포함시켰으나, 추정결과본 표에서 생략함

2. 괄호 안은 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3.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 3. 실증회귀분석에 대한 소결

본 장에서는 상속세제와 증여세제가 증여시기에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증여가 소비, 저축, 노동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증여세의 한계세율의 증가는 증여재산가액의 감소와 관계가 있으며, 이는 한계세율의 증가로 인해 자산이전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증여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소비의 소득탄력성은 0.084, 저축의 소득탄력성은 0.346으로 추정되었다.
- 소비의 자산탄력성은 0.012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자산의 증가는 저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과 노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며, 노동시간의 소득탄력성은 -0.035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증여세제가 수증인의 증여행위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완화가 부(wealth)가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이전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현실에서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증여세제가 실질적인 자산이전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상속·증여로 이전된 자산은 일반적으로 소비나 저축 및 투자로 사용된다. 여기서 저축은 부채상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기초통계량의 평균을 이용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증여를 통해 총소득이 약 1백만원 증가할 경우 소비지출액은 약 8만원 증가하고 저축액은 약 7만원 증가한다. 이는 총소득의 증가가 비내구적 재화에 대한 단기적인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함을 보여준다. 본 실증분석 결과는 설문조사 결과와 다소 상이하다. 설문조사에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약 1억원 정도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경우 향후 1년간 평균 1,261만원 가량을 소비로 지출하고 약 7,043만원 가량은 부채상환 및 저축·투자에 사용된다고 분석되었다. 즉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증여를 통해 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보다는 저축·투자에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분석의 결과가 차이나는 이유는 자료의 제약으로 실증분석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실증분석 결과는 증여를 통해 증가한 총소득 중 약 15만원은 소비와 저축을 통해 사용되고 그 나머지는 주택구매, 투자,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설문조사와 달리 본 실증분석에서 사용하는 소비는 비내구재 재화와 관련된 것이다. 즉 주택구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저축(부채상환 포함)뿐만 아

나라 투자,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본 실증분석에서 사용하는 저축은 부채상환만 포함될 뿐 투자나 사업자금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증여를 통한 자금지원이 재정패널 조사자료의 총소득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속·증여 등의 이전소득을 직접적으로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실증분석 결과를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할 경우 실증분석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증여는 현금이나 자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 결과는 상속·증여가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그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소비에 대한 자산탄력성을 사용하여 자산의 증가가 소비지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해본 결과, 일정한 가정하에 상속·증여를 통해 약 1백만원의 자산이 증가할 경우 소비지출액은 1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산의 증가가 단기적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증가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증여를 통해 자산이 증가할 경우 이는 미래의 가용자산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소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비에 대한 장기적인 자산증가의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증분석 모형은 자산이전이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의 설문조사 분석과 일반균형분석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본 회귀분석 결과는 소득의 증가가 노동시간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이전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할 경우 노동시간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된 결과와 유사하다.

---

## 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분석, 일반균형모형 분석, 실증분석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상속·증여세제가 경제주체들의 자산이전과 이에 따른 소비 등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균형모형 분석에서는 상속·증여세제가 자산 등의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과 일반균형모형 분석 결과 상속·증여세제가 자산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설문조사 분석에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완화하더라도 자산이전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한다. 다른 두 분석과는 달리 설문조사 분석의 결과는 상속·증여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응답에 기초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이 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증분석이나 일반균형분석과 유사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결과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와는 달리 일반균형모형과 실증분석에서 상속·증여세제의 완화가 세대 간 자산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두 분석에서 경제주체가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현실에서 이미 자산을 이전하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고 있다면 증여세제의 완화가 실질적으로 자산이전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를 반영하여 응답하지만 일반균형모형과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설문조사 분석에서는 응답자의 조세회피 여부 및 정도를 분석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세회

피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균형분석과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자녀세대로 이전된 자산이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분석에서 이전된 자산은 소비 보다는 저축으로 사용될 유인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실증분석 또한 자산이전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균형모형 분석에서 또한 자녀세대의 소비는 증가하지만 부모 세대의 소비는 감소하여 경제 전체적인 소비 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증여세제의 완화를 통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세대로의 자산 이전을 증가시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논리를 강하게 뒷받침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제는 부의 대물림을 축소하여 자산 불평등도를 개선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일반균형모형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가정된 경우처럼 부모가 이타적인 동기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부모는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수준을 고려해 자산이전의 규모를 결정한다. 즉 자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는 자녀에게 더 많은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 경우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증여세제의 완화는 오히려 이러한 자발적인 부의 재분배를 활성화시켜 자산 불평등도를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이론적 모형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킴으로써 도출된 결론일 수 있지만,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동기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자산이전 동기에 따른 상속·증여세제가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상속·증여세는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고 부의 집중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상속·증여세제가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제의 개편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상속·증여세제를 소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생각하기 보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는 기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일반균형모형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속·증여세제의 강화가 반드시 부의 재분배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상속·증여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처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다른 주요 국가들의 상속·증여세제만을 분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상속·증여세제는 소득세, 그리고 자본이득세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가 잘 설계된 국가일수록 상속·증여세제의 부담이 낮거나 폐지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 참고문헌

---

- 강성훈·윤지현, 「재산과세」, 안종석(편), 『증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연구: 제2편 세목별 발전방향 (제4장, pp. 238~321)』,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김동수·윤탤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분석적 연구」, 『회계정보연구』, 34권 1호, 2016, pp. 229~246.
- 김명휘·김주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10권 3호, 2009, pp. 97~130.
- 김진, 『자산이전과세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09-10, 한국조세연구원, 2009.
- 김진·원종학,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 연구보고서 06-15, 한국조세연구원, 2006.
- 나성길·정찬우·정평조, 『사례와 함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삼일인포마인인, 2015.
- 안재환·전영준·전규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와 순소득가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 38권 3호, 2013, pp. 1~40.
- 이대규·노준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Ohlson 모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세무학연구』, 31권 4호, 2014, pp. 247~274.
- 전병욱,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영법률』, 제 24권 1호, 2013, pp. 493~516.
- 조경엽,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한 분석」, 『공공경제』, 12, 2007, pp. 29~64.
- 조경엽,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5.

- 조명환, 「상속증여세」, 안종석(편), 『경제위기 이후의 세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제8장, p. 33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 차진아, 「현행 상속세제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점 -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9권, 2013, pp. 127~173.
- 최명근·조경엽,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200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티포트: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재정포럼』, 217권, 2014, pp. 36~50.
- Arrondel, Luc, and Andre Masson, “Altruism, exchange or indirect reciprocity: what do the data on family transfers show?” in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Giving, Altruism and Reciprocity*, Vol. 2, Serge-Christophe Kolm and Jean Mercier Ythier eds., 2006, pp. 971~1053.
- Altonji, Joseph G., Fumio Hayashi, and Laurence J. Kotlikoff, “Parental Altruism and Inter Vivos Transfer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6), 1997, pp. 1121~1166.
- Bernheim, B. Douglas, Robert J. Lemke, and John Karl Scholz, “Do estate and gift taxes affect the timing of private transf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12), 2004, pp. 2617~2634.
- Bernheim, B. Douglas, Andrei Shleifer, and Lawrence H. Summers,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1985, pp. 1045~1076.
- Bossmann, Martin, Christian Kleiber, and Klaus Wälde, “Bequests, tax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a general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1(7), 2007, pp. 1247~1271.
- Brown, Jeffrey R., Courtney C. Coile, and Scott J. Weisbenner. “The effect of inheritance receipt on retirem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2(2), 2010, pp. 425~434.

- Carnegie, Andrew, "The Advantages of Poverty," in *The Gospel of Wealth and Other Timely Essays*, Edward C. Kirkland, ed.,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 De Nardi, Mariacristina, "Wealth inequality and intergenerational link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1(3), 2004, pp. 743~768.
- EY,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6.
- Gouveia, Miguel, and Robert P. Strauss, "Effective federal individual income tax functions: An exploratory empirical analysis," *National Tax Journal*, 47(2), 1994, pp. 317~339.
- Holtz-Eakin, Douglas, David Joulfaian, and Harvey Rosen, "The Carnegie Conjecture: Some Empirical Evidenc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8(2), 1993, pp. 413~435.
- IBFD, *Individual Taxation-Germany*, 2016.
- IBFD, *Individual Taxation-United States*, 2016.
- Joulfaian, David, "Gift taxes and lifetime transfers: time series evide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9), 2004, pp. 1917~1929.
- Joulfaian, David, "Choosing between gifts and bequests: how taxes affect the timing of wealth transf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11), 2005, pp. 2069~2091.
- Joulfaian, David, and Kathleen McGarry, "Estate and gift tax incentives and inter vivos giving," *National Tax Journal*, 57(2), 2004, pp. 429~444.
- Joulfaian, David, and Mark O. Wilhelm, "Inheritance and labor supply,"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4), 1994, pp. 1205~1234.
- Laitner, John, and Henry Ohlsson, "Bequest motives: a comparison of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9(1), 2001, pp. 205~236.
- Laferrère, Anne, and François-Charles Wolff, "Microeconomic models of family transfers," in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Giving, Altruism*

- and Reciprocity*, Vol. 2, Serge-Christophe Kolm and Jean Mercier Ythier eds., 2006, pp. 889~969.
- Mirrless, James A., *Tax By Design: The Mirrlees Review*,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11.
- McGarry, Kathleen, "The cost of equality: unequal bequests and tax avoida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9(1), 2001, pp. 179~204.
- Nishiyama, Shinichi, "Bequests, inter vivos transfers, and wealth distribution," *Review of Economic Dynamics*, 5(4), 2002, pp. 892~931.
- Page, Benjamin R., "Bequest taxes, inter vivos gifts, and the bequest motiv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5), 2003, pp. 1219~1229.
- Perozek, Maria G. "A reexamination of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2), 1998, pp. 423~445.
- Poterba, James, "Estate and gift taxes and incentives for inter vivos giving in the U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9(1), 2001, pp. 237~264.
- Wilhelm, Mark O., "Bequest behavior and the effect of heirs' earnings: Testing the altruistic model of bequ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6(4), 1996, pp. 874~892.

#### <기타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연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 제22조~제24조, 제26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 각 연도.

#### <웹사이트>

- 민법 제1009조 제2항, 상속분 기준, 참조:<http://onedclick.law.go.kr/CSP/CnpClsMain>.

laf?csmSeq=255&ccfNo=3&cciNo=2&cnpClsNo=1(접속일: 2016. 10. 19)  
IRS, What's New - Estate and Gift Tax,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whats-new-estate-and-gift-tax>(접속일: 2016. 8.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nwRvsLsInfoR.do?lsiSeq=109453>  
(접속일: 2015. 6. 22.)

## 부 록

### 부록 1. 자산이전에 관한 설문조사(부모세대)

SQ1. 선생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시도는 어디입니까?

- 1) 서울 2) 인천 3) 대전 4) 광주 5) 부산  
6) 울산 7) 대구 8) 경기도 9) 그 외 지역 (→ 조사중단)

SQ2. 올해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SQ3. 귀하는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 ① 예 (→ SQ3-1) ② 아니오

SQ3-1. (SQ3에서 ①응답자만) 배우자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SQ2 와 SQ3-1 중 하나라도 만 55세 이상이 나오면 조사 진행 (둘 다 만 55세 미만이면 → 조사중단)

SQ4.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SQ5.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예 (→ SQ6) ② 아니오(→조사 중단)

SQ6. 귀하와 배우자의 부동산, 금융, 기타 자산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 ① 5억원 미만(→조사 중단)  
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③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④ 20억원 이상

A1. 귀하의 자녀는 몇 명 이십니까?  명

(※ 자녀의 수만큼 A2문항을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 각 자녀의 연령은 만 나이, 결혼여부, 각 자녀(자녀의 배우자 합산)의 소득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 번호	연령	성별	결혼여부	결혼시점 (결혼한 경우만)	연간소득 (자녀+자녀의 배우자)
1	만 ( )세	① 남자 ② 여자	① 예 ② 아니오	년	(보기 참고)
2	만 ( )세	① 남자 ② 여자	① 예 ② 아니오	년	(보기 참고)
3	만 ( )세	① 남자 ② 여자	① 예 ② 아니오	년	(보기 참고)
4	만 ( )세	① 남자 ② 여자	① 예 ②아니오	년	(보기 참고)
5	만 ( )세	① 남자 ② 여자	① 예 ②아니오	년	(보기 참고)

소득 보기	
① 0원	⑦ 1억 5천만원 이상 2억 미만
② 0원 초과 2천만원 미만	⑧ 2억 이상 3억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⑨ 3억 이상 5억 미만
④ 4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⑩ 5억 이상 10억 미만
⑤ 7천만원 이상 1억 미만	⑪ 10억 이상
⑥ 1억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A3. 귀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A4)                      ② 아니오 (→ A5)

A4. 2015년을 기준으로 귀사의 매출액, 총자산, 그리고 종사자 수는 각각 어떻게 되십니까?

사업체	a4-1. 총자산	a4-2. 매출액	a4-3. 종사자 수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	a4-4. 지분
1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
2				%
3				%
4				%
5				%

- \* **총자산**: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합계  
 -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환급할 수 있는 자산으로 현금이나 예금, 일시소유의 유가증권, 상품 제품 원재료 저장품 등임  
 - 고정자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토지나 기계·설비, 건물처럼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함
- \* **매출액**: 상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반제품, 부산품, 작업폐물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에서 매출환입액 및 예누리액을 공제한 순매출액을 말함

자산 보기	
① 1억 미만	⑦ 50억 이상 100억 미만
② 1억 이상 3억 미만	⑧ 100억 이상 200억 미만
③ 3억 이상 5억 미만	⑨ 200억 이상 500억 미만
④ 5억 이상 10억 미만	⑩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⑤ 10억 이상 20억 미만	⑪ 1,000억 이상
⑥ 20억 이상 50억 미만	

매출액 보기	
① 5천만원 미만	⑥ 30억 이상 50억 미만
②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⑦ 50억 이상 100억 미만
③ 1억 이상 5억 미만	⑧ 100억 이상 500억 미만
④ 5억 이상 10억 미만	⑨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⑤ 10억 이상 30억 미만	⑩ 1,000억 이상

종사자 수 보기	
① 0명	⑤ 10명 이상 50명 미만
② 1명 이상 3명 미만	⑥ 50명 이상 100명 미만
③ 3명 이상 5명 미만	⑦ 100명 이상 300명 미만
④ 5명 이상 10명 미만	⑧ 300명 이상

A5. 귀하(및 배우자 합산)의 자산 및 부채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a5-1. 총자산 (부동산, 금융, 기타 자산 등)	a5-2. 부동산자산 (주택, 토지, 건물 (상가 및 사무실, 오피스텔 등) 등)	a5-3. 금융자산 (예·적금, 펀드, 주식, 채권,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 등)	a5-4. 기타자산 (골프장 및 콘도 회원권, 귀금속, 임대보증금(임차인) 등)	a5-5. 총부채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대출, 임대보증금(임대인) 등)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자산 및 부채 보기	
① 0원	⑧ 15억 이상 20억 미만
② 0원 초과 5천만원 미만	⑨ 20억 이상 30억 미만
③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⑩ 30억 이상 50억 미만
④ 1억원 이상 3억 미만	⑪ 50억 이상 100억 미만
⑤ 3억 이상 5억 미만	⑫ 100억 이상 300억 미만
⑥ 5억 이상 10억 미만	⑬ 300억 이상
⑦ 10억 이상 15억 미만	

A6. 2015년을 기준으로 귀해(및 배우자 합산)의 연간 소득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a6-1. 총소득	a6-2. 근로소득	a6-3. 사업소득 (임대소득 제외)	a6-4.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연금소득 제외)	a6-5. 임대소득	a6-6. 양도소득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소득 보기	
① 0원	⑦ 1억 5천만원 이상 2억 미만
② 0원 초과 2천만원 미만	⑧ 2억 이상 3억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⑨ 3억 이상 5억 미만
④ 4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⑩ 5억 이상 10억 미만
⑤ 7천만원 이상 1억 미만	⑪ 10억 이상
⑥ 1억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A7. 귀해(및 배우자 포함)는 과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아래와 같은 형태의 자산 혹은 자금을 지원 또는 이전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래의 사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A7-1.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으시거나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여 이전하신 경우에는 이전 당시 가치를 부동산 구입 자금을 지원하신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적어 주십시오.

본인의 부모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지원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연도	지원당시금액	지원/이전당시 가치	현재 보유 여부	"① 보유" 응답자		
					현재연도 (2016년 입력)	현재가치	
					"② 미보유" 응답자		
		양도/자산이전 연도	양도금액/ 자산이전 당시 가치				
1	년	만원	만원	① 보유 ② 미보유	년	만원	
2	년	만원	만원	① 보유 ② 미보유	년	만원	
3	년	만원	만원	① 보유 ② 미보유	년	만원	

배우자의 부모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지원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연도	지원당시금액	지원/이전당시 가치	현재 보유 여부	"① 보유" 응답자		
					현재연도 (2016년 입력)	현재가치	
					"② 미보유" 응답자		
		양도/자산이전 연도	양도금액/ 자산이전 당시 가치				
1	년	만원	만원	① 보유 ② 미보유	년	만원	
2	년	만원	만원	① 보유 ② 미보유	년	만원	
3	년	만원	만원	① 보유 ② 미보유	년	만원	

A7-2.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식 이전 당시의 가치를 적어주십시오.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1	년	만원	1	년	만원		
2	년	만원	2	년	만원		
3	년	만원	3	년	만원		

A7-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부터 사업체를 이전받거나 사업자금을 지원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업체를 이전받으신 경우 당시 사업체의 평가가치를, 사업자금을 지원받으신 경우 중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금액을 적어 주십시오.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1	년	만원	1	년	만원
2	년	만원	2	년	만원
3	년	만원	3	년	만원

A7-4.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부터 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괴, 미술품,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의 기타 실물자산을 이전받거나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전 혹은 구입 당시의 가치를 적어주십시오.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1	년	만원	1	년	만원
2	년	만원	2	년	만원
3	년	만원	3	년	만원

A7-5.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부터 위에 포함되지 않는 현금, 예금 등의 기타 금융자산을 이전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전 당시의 가치를 적어 주십시오.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1	년	만원	1	년	만원
2	년	만원	2	년	만원
3	년	만원	3	년	만원

A8. 귀하(및 배우자 포함)는 과거 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형태의 자산 혹은 자금을 지원 또는 이전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아래의 사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A8-1.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시거나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여 이전하신 경우에는 이전 당시 가치를 부동산 구입자금을 지원하신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적어 주십시오.

자녀1			자녀2			자녀3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1, 자녀2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자녀에 대해 조사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1	년	만원	1	년	만원	
2	년	만원	2	년	만원	
3	년	만원	3	년	만원	

A8-2. 자녀의 전월세보증금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자녀의 전월세보증금 중 도와주신 금액을 적어 주십시오.

자녀1			자녀2			자녀3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1, 자녀2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자녀에 대해 조사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1	년	만원	1	년	만원	
2	년	만원	2	년	만원	
3	년	만원	3	년	만원	

A8-3.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주식 이전 당시의 가치를 적어주십시오.

자녀1			자녀2			자녀3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1, 자녀2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자녀에 대해 조사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1	년	만원	1	년	만원	
2	년	만원	2	년	만원	
3	년	만원	3	년	만원	

A8-4. 자녀의 자동차 구입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자동차 구입비 중 도와주신 금액을 적어 주십시오.

자녀1			자녀2			자녀3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1, 자녀2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자녀에 대해 조사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1	년	만원	1	년	만원	
2	년	만원	2	년	만원	
3	년	만원	3	년	만원	

A8-5. 자녀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도와주신 사업자금을 적어 주십시오.

자녀1			자녀2			자녀3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1, 자녀2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자녀에 대해 조사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1	년	만원	1	년	만원	
2	년	만원	2	년	만원	
3	년	만원	3	년	만원	

A8-6. 자녀의 결혼 시 예단, 예물, 혼수 등을 위해 직접 지출하셨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도와주신 금액을 적어 주십시오. 단, 예식비, 피로연비와 같이 예식 당일 예식을 위해 사용한 금액과 신혼집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1			자녀2			자녀3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1, 자녀2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자녀에 대해 조사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1	년	만원	1	년	만원	
2	년	만원	2	년	만원	
3	년	만원	3	년	만원	

A8-7. 현재 자녀에게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시고 계십니까? 있으시다면 연간 생활비 지원금액과 현재까지 총 지원기간을 적어 주십시오. 단, 자녀가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 지원해 주신 금액만을 포함하며, 대학원 진학이나 졸업 후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사회에 진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녀1			자녀2			자녀3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1, 자녀2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자녀에 대해 조사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1	년	만원	1	년	만원	
2	년	만원	2	년	만원	
3	년	만원	3	년	만원	

A8-8. 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괴, 미술품, 가구, 가전제품 등의 기타 실물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시거나 구입을 지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실물자산을 이전하신 경우에는 이전 당시 가치를 구입을 지원하신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단, 자녀의 결혼 시 혼수를 위한 가구 및 가전제품의 구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1			자녀2			자녀3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1, 자녀2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자녀에 대해 조사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1	년	만원	1	년	만원	
2	년	만원	2	년	만원	
3	년	만원	3	년	만원	

A8-9. 위에 포함되지 않는 현금, 예금 등의 기타 금융자산을 각각의 자녀에게 이전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전 당시의 가치를 적어주십시오.

자녀1			자녀2			자녀3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1, 자녀2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자녀에 대해 조사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지원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한 경우 아래 응답			
1	년	만원	1	년	만원	
2	년	만원	2	년	만원	
3	년	만원	3	년	만원	

A8-10. A8-1~A8-9번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자녀에게 지원을 하였다는 응답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A9. 자금지원을 더 많이 하지 않았거나 전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를 지원해줄 여유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 ② 자녀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지원하였기 때문에
- ③ 자녀이지만 도움을 주기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는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④ 증여세 부담 때문에
-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A10. 귀하는 향후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시겠습니까? (향후 상황을 약속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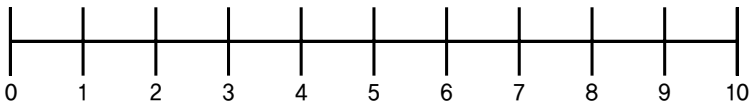
문항	상 황	지원여부
1	자녀가 결혼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① ② ③ ④
2	자녀가 주택 마련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① ② ③ ④
3	자녀가 창업이나 사업확장 및 전환 등으로 사업자금이 필요할 경우	① ② ③ ④
4	자녀의 생계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할 경우	① ② ③ ④
5	자녀의 재산 증식을 위하여	① ② ③ ④

자금지원 여부 보기	
① 반드시 지원할 것이다.	② 지원을 할 것 같다.
③ 지원하지 않을 것 같다.	④ 절대로 지원하지 않겠다.

A11. (문 A8에서 한 문항에서라도 ①응답자 또는 문 A10의 한 문항이라도 ①,② 응답자만)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셨거나 혹은 지원하실 계획이라면 그 이유는 다음 중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가까운 정도에 따라 아래의 0~10의 구간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자녀가 더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 ② 자금을 지원한다면 자녀가 나에게 보다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①번의 이유에 가까울수록 아래의 구간 중 10에 가까워지고, ②번의 이유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워집니다.



A12. (문 A8에서 한 문항이라도 ①응답자 또는 문 A10의 한 문항이라도 ①,②응답자만)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셨거나 지원하실 계획이라면 자금지원을 통해 자녀에게 바라는 대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가 잘 지낸다면 아무런 대가 필요하지 않다.
- ②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방문 또는 부양 포함)
- ③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기를 원한다.

A13. 귀하(및 배우자 포함)의 삶이 5년 정도 남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사망 시 부부의 재산을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상속할 생각이십니까?

- ① 앞으로 5년간 나의 소비수준을 줄여서라도 가능한 많은 재산을 물려주겠다.
- ② 앞으로 5년간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하며 살다가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
- ③ 앞으로 5년간 가능한 많은 재산을 나의 소비에 사용할 것이다.

A13-1. (문 A13의 ①,②응답자만) 상속할 계획이라면 그 이유는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가까운 정도에 따라 아래의 0~10의 구간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자녀가 더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 ②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녀가 나에게 보다 더 잘 할 것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①번의 이유에 가까울수록 아래의 구간 중 10에 가까워지고, ②번의 이유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워집니다.



A14~19. (문 A10의 한 문항이라도 ①,②응답자 또는 문 A13의 ①,②응답자만)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속증여세제
현행 증여세제하에서는 10년간 자녀에게 자녀당 5,000만원까지는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자녀가 두 명이라면 10년간 각각의 자녀에게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자녀수와 상관없이 남기신 자산 중 최소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14. 귀하는 현행 제도하에서 향후 5년간 자녀분에게 얼마의 자금을 증여하실 계획이십니까? 자녀구분은 A2의 자녀 번호와 동일한 순서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구분	금액
a14-1	자녀1	만원
a14-2	자녀2	만원

a14-3	자녀3	만원
a14-4	자녀4	만원
a14-5	자녀5	만원

A15. 만약 증여세 공제금액이 현행 자녀당 10년/5,000만원에서 10년/3,000만원으로 감소하고 상속세제는 변동 없다면, 귀하는 향후 5년간 자녀분에게 얼마의 자산을 증여하실 계획이십니까?

구 분	구 분	금 액
a15-1	자녀1	만원
a15-2	자녀2	만원
a15-3	자녀3	만원
a15-4	자녀4	만원
a15-5	자녀5	만원

A16. 만약 증여세 공제금액이 현행 자녀당 10년/5,000만원에서 10년/1억원으로 증가되고 상속세제는 변동 없다면, 귀하는 향후 5년간 자녀분에게 얼마의 자산을 증여하실 계획이십니까?

구 분	구 분	금 액
a16-1	자녀1	만원
a16-2	자녀2	만원
a16-3	자녀3	만원
a16-4	자녀4	만원
a16-5	자녀5	만원

A17. 만약 증여세 공제금액이 현행 자녀당 10년/5,000만원에서 10년/2억원으로 증가되고 상속세제는 변동 없다면, 귀하는 향후 5년간 자녀분에게 얼마의 자산을 증여하실 계획이십니까?

구 분	구 분	금 액
a17-1	자녀1	만원
a17-2	자녀2	만원
a17-3	자녀3	만원
a17-4	자녀4	만원
a17-5	자녀5	만원

A18. 만약 증여세 공제금액이 현행 자녀당 10년/5,000만원에서 1년/1,000만원으로 변경되고 상속세제는 변동 없다면, 귀하는 향후 5년간 자녀분에게 얼마의 자산을 증여하실 계획이십니까?

구 분	구 분	금 액
a18-1	자녀1	만원
a18-2	자녀2	만원
a18-3	자녀3	만원
a18-4	자녀4	만원
a18-5	자녀5	만원

A19. 만약 증여세 공제금액이 현행 자녀당 10년/5,000만원에서 1년/2,000만원으로 변경되고 상속세제는 변동 없다면, 귀하는 향후 5년간 자녀분에게 얼마의 자산을 증여하실 계획이십니까?

구 분	구 분	금 액
a19-1	자녀1	만원
a19-2	자녀2	만원
a19-3	자녀3	만원
a19-4	자녀4	만원
a19-5	자녀5	만원

A20. 귀하가 자녀에게 증여 혹은 상속을 한다는 가정 아래, 부의 이전 방식, 즉 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식으로 부를 물려줄지에 대한 결정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 ② 자녀가 생계에 필요한 돈은 필요할 때마다 지원하고(증여), 사망 시 남은 돈은 자연스럽게 상속하겠다.
- ③ 먼저 증여해야 자녀가 나에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되도록 상속보다는 증여를 할 것이다.
- ④ 내가 원하는 방식 및 비율로 자녀들에게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 상속보다는 증여를 할 것이다.
- ⑤ 마지막 사망 시까지 재산을 내가 갖고 있어야 자녀가 나에게 잘할 것이기에 증여 대신 상속을 할 것이다.
- ⑥ 세금이나 자녀의 태도와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재산을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상속할 것이다.

A21. 귀하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에 대한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문(컨설팅) 혹은 상담을 받거나 관련 제도에 대해 직접 검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A22.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의 차이가 상속 및 증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 귀하가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사망시점까지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자산에, 대략 다음 금액만큼의 여유자금이 더 있다고 가정합니다.

A23-1. 여유자금이 5억원일 경우, 어디에 사용하실 것이며 대략 얼마 정도 사용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연 번	보 기	금 액
a23-1-1	더욱 더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생활	만원
a23-1-2	자녀에게 자금이전	만원
a23-1-3	예상되는 사망시점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기에 일부를 저축 및 투자	만원
a23-1-4	사업자금	만원
a23-1-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만원

A23-2. 여유자금이 10억원일 경우 어디에 사용하실 것이며 대략 얼마 정도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 번	보 기	금 액
a23-2-1	더욱 더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생활	만원
a23-2-2	자녀에게 자금이전	만원
a23-2-3	예상되는 사망시점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기에 일부를 저축 및 투자	만원
a23-2-4	사업자금	만원
a23-2-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만원

A23-3. 여유자금이 50억원일 경우 어디에 사용하실 것이며 대략 얼마 정도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 번	보 기	금 액
a23-3-1	더욱 더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생활	만원
a23-3-2	자녀에게 자금이전	만원
a23-3-3	예상되는 사망시점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기에 일부를 저축 및 투자	만원
a23-3-4	사업자금	만원
a23-3-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만원

## 통계 분류 조사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 중
- ⑤ 대학교 졸업
- ⑥ 대학원 재학 이상
- ⑦ 모름/무응답

## 부록 II. 자산이전에 관한 설문조사(자녀세대)

SQ1. 선생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시도는 어디입니까?

- 1) 서울    2) 인천    3) 대전    4) 광주    5) 부산  
6) 울산    7) 대구    8) 경기도    9) 그 외 지역 (→ 조사중단)

SQ2. 올해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SQ3. 귀하는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 ① 예 (→ SQ3-1)    ② 아니오

SQ3-1. (SQ3에서 ①응답자만) 배우자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SQ2 와 SQ3-1 중 하나라도 만 30~45세 응답이 나오면 조사 진행, 둘 다 그 연령대가 아니면 → 조사중단

SQ4.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SQ5. 귀하 부모님의 부동산, 금융, 기타 자산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금액은 5억원 이상이거나, 배우자 부모님의 순자산 금액이 5억원 이상입니까? (해당되는 구간에 체크하되, 양가 부모님 모두 순자산 5억원 이상에 해당되면, 본인을 기준으로 응답)

- ① 5억원 미만(→모두 5억원 미만이라면 조사 중단)  
②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③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④ 20억원 이상

SQ6. 귀하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소득, 이익, 봉급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고용되거나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 또는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의 일을 임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 무급 가족종사자를 의미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조사 중단)

SQ6-1. (문 SQ6에서 ①응답자만) 그렇다면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임금 근로자) 상용직    ② (임금 근로자) 임시직    ③ (임금 근로자) 일용직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⑤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⑥ 무급 가족종사자

B1. 귀하의 형제자매는 전체 몇 명이십니까? 그리고 귀하는 몇 번째 자녀이신가요?

총 ( )명 중 ( )째

B1-1. (형제가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남자 형제는 몇 명이십니까? (응답자가 남자일 경우) 그리고 남자 형제 중에서는 몇 번째이신가요?

총 ( )명 중 ( )째

B1-2. (형제가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여자 형제는 몇 명이십니까? (응답자가 여자일 경우) 그리고 여자 형제 중에서는 몇 번째이신가요?

총 ( )명 중 ( )째

B2. 귀하는 현재 배우자가 있습니까? (문 SQ3 데이터 그대로 가져올 것 )

① 예 ② 아니오 (→ B5으로 갈 것)

B3. (B2에서 ①만)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소득, 이익, 봉급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고용되거나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 또는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의 일을 임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 무급 가족종사자를 의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B3-1. (문 B3에서 ①응답자만) 그렇다면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임금 근로자) 상용직      ② (임금 근로자) 임시직    ③ (임금 근로자) 일용직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⑤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⑥ 무급 가족종사자

B4. (B2에서 ①만) 귀하의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전체 몇 명이십니까? 그리고 귀하의 배우자는 몇 번째 자녀이신가요?

총 ( )명 중 ( )째

B4-1. (형제가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남자 형제는 몇 명이십니까? (응답자가 여자일 경우) 그리고 남자 형제 중에서는 몇 번째이신가요?

총 ( )명 중 ( )째

B4-2. (형제가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여자 형제는 몇 명이십니까? (응답자가 남자일 경우) 그리고 여자 형제 중에서는 몇 번째이신가요?

총 ( )명 중 ( )째

B5. 귀하(및 배우자 합산)의 자산 및 부채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b5-1. 총자산 (부동산, 금융, 기타 자산 등)	b5-2. 부동산자산 (주택, 토지, 건물(상가 및 사무실, 오피스텔 등) 등)	b5-3. 금융자산 (예·적금, 펀드, 주식, 채권,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 등)	b5-4. 기타자산 (골프장 및 콘도 회원권, 귀금속, 임대보증금(임차인) 등)	b5-5. 총부채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대출, 임대보증금(임대인) 등)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자산 및 부채 보기	
① 0원	⑧ 15억 이상 20억 미만
② 0원 초과 5천만원 미만	⑨ 20억 이상 30억 미만
③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⑩ 30억 이상 50억 미만
④ 1억원 이상 3억 미만	⑪ 50억 이상 100억 미만
⑤ 3억 이상 5억 미만	⑫ 100억 이상 300억 미만
⑥ 5억 이상 10억 미만	⑬ 300억 이상
⑦ 10억 이상 15억 미만	

B6. 2015년을 기준으로 귀하(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배우자는 문B2에서 ①응답자만 제시)

	b6-1. 총소득	b6-2. 근로소득	b6-3. 사업소득 (임대소득 제외)	b6-4.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연금소득 제외)	b6-5. 임대소득	b6-6. 양도소득
본인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배우자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보기 참고)

소득 보기	
① 0원	⑦ 1억 5천만원 이상 2억 미만
② 0원 초과 2천만원 미만	⑧ 2억 이상 3억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⑨ 3억 이상 5억 미만
④ 4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⑩ 5억 이상 10억 미만
⑤ 7천만원 이상 1억 미만	⑪ 10억 이상
⑥ 1억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B7. 귀하의 부모님의 생존 여부 및 나이와 재산은 얼마입니까?

구분	b7-1. 생존여부	b7-2. 나이	b7-3. 부모 합산 연간 소득	b7-4. 부모 합산 순자산
본인의 부	① 살아계심 ② 돌아가심	만 ( ) 세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본인의 모	① 살아계심 ② 돌아가심	만 ( ) 세		

B8. (문B2의 ①응답자만) 배우자 부모님의 생존여부 및 나이와 재산은 얼마입니까?

구분	b8-1. 생존여부	b8-2. 나이	b8-3. 부모 합산 연간 소득	b8-4. 부모 합산 순자산
배우자의 부	① 살아계심 ② 돌아가심	만 ( ) 세	(보기 참고)	(보기 참고)
배우자의 모	① 살아계심 ② 돌아가심	만 ( ) 세		

부모님 소득 보기	부모님 순자산 보기
① 0원 ② 0원 초과 2천만원 미만 ③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④ 4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⑤ 7천만원 이상 1억 미만 ⑥ 1억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⑦ 1억 5천만원 이상 2억 미만 ⑧ 2억 이상 3억 미만 ⑨ 3억 이상 5억 미만 ⑩ 5억 이상 10억 미만 ⑪ 10억 이상	① 0원 ② 0원 초과 5천만원 미만 ③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④ 1억원 이상 3억 미만 ⑤ 3억 이상 5억 미만 ⑥ 5억 이상 10억 미만 ⑦ 10억 이상 15억 미만 ⑧ 15억 이상 20억 미만 ⑨ 20억 이상 30억 미만 ⑩ 30억 이상 50억 미만 ⑪ 50억 이상 100억 미만 ⑫ 100억 이상 300억 미만 ⑬ 300억 이상

B9. 귀하(및 배우자 포함)는 과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아래와 같은 형태의 자산 혹은 자금을 지원 또는 이전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래의 사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B9-1.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으시거나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여 이전하신 경우에는 이전 당시 가치를, 부동산 구입 자금을 지원하신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적어 주십시오.

본인의 부모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지원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 연도	구분	지원당시 금액	지원/이전당시 가치	현재 보유 여부	"① 보유" 응답자		
					현재연도 (2016년 입력)	현재가치	
					"② 미보유" 응답자		
양도/자산이전 연도		양도금액/ 자산이전 당시 가치					
1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만원	① 보유 ② 미보유	년	만원
2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만원	① 보유 ② 미보유	년	만원
3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만원	① 보유 ② 미보유	년	만원

배우자의 부모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지원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 연도	구분	지원당시 금액	지원/이전당시 가치	현재 보유 여부	"① 보유" 응답자		
					현재연도 (2016년 입력)	현재가치	
					"② 미보유" 응답자		
양도/자산이전 연도		양도금액/ 자산이전 당시 가치					
1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만원	① 보유 ② 미보유	년	만원
2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만원	① 보유 ② 미보유	년	만원
3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만원	① 보유 ② 미보유	년	만원

B9-2.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전월세보증금 중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금액을 적어 주십시오.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연도	구분	금액		지원연도	구분	금액
1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1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2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2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3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3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B9-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식 이전 당시의 가치를 적어주십시오.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연도	구분	금액		지원연도	구분	금액
1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1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2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2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3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3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B9-4.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부터 자동차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동차 구입비 중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금액을 적어 주십시오.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연도	구분	금액		지원연도	구분	금액
1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1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2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2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3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3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B9-5.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부터 사업체를 이전받거나 사업자금을 지원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업체를 이전받으신 경우 당시 사업체의 평가치를, 사업자금을 지원받으신 경우 중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금액을 적어 주십시오.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연도	구분	금액		지원연도	구분	금액
1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1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2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2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3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3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B9-6. 결혼 시 예단, 예물, 혼수 등을 위해 부모님(배우자의 부모 포함)께서 직접 지출하신 자금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출하신 금액을 적어 주십시오. 단, 예식비, 피로연비와 같이 예식 당일 예식을 위해 사용한 금액과 신혼집을 위한 주택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1	년	만원	1	년	만원
2	년	만원	2	년	만원
3	년	만원	3	년	만원

B9-7. 현재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부터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원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연간 생활비 지원금액과 현재까지 총 지원기간을 적어 주십시오.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연간	만원	연간	만원
총	년간	총	년간

B9-8.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부터 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괴, 미술품, 가구, 가전제품 등의 기타 실물자산을 이전받거나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실물자산을 이전받으신 경우에는 이전 당시 가치를 구입을 지원받으신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단, 결혼 시 혼수를 위한 가구 및 가전제품의 구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연도	구분	금액		지원연도	구분	금액
1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1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2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2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3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3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B9-9.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부터 위에 포함되지 않는 현금, 예금 등의 기타 금융자산을 이전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전 당시의 가치를 적어주십시오.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지원/이전여부				지원/이전여부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① 지원/이전 ② 미지원/미이전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이전받은 경우 아래 응답			
	지원연도	구분	금액		지원연도	구분	금액
1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1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2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2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3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3	년	① 상속 ② 증여	만원

B9-10. B9-1~A9-9번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B10. (문B9에서 한 문항이라도 ①응답자) 지금 지원을 받은 후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 ① 부모님을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리지는 않지만 좀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 ②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는 않지만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리게 되었다
- ③ 부모님을 직접 모시며 부양하게 되었다
- ④ 자금지원을 받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별다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 ⑤ 자금지원을 기대했던 것만큼 받지 못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별 다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 ⑥ 자금지원을 받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소원해졌다
- ⑦ 자금지원을 기대했던 것만큼 받지 못해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소원해졌다

B11.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더)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 ① 부모님께서 더 지원하실 만큼 여유자금이 부족했다
- ② 필요로하는 만큼 부모님께서 충분히 지원해주셨다
- ③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자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 ④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 ⑤ 증여세 부담 때문에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B12. (문B9에서 한 문항이라도 ①응답자)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이전을 받았을 때 본인의 근로시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단축되었다                      ② 변함없다                      ③ 더 증가하였다.

B12-1. (문B9에서 한 문항이라도 ①응답자)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이전을 받았을 때 배우자의 근로시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단축되었다    ② 변함없다    ③ 더 증가하였다    ④ 이전 당시에는 배우자가 없었다

B13. (문B9에서 한 문항이라도 ①응답자)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이전을 받았을 때 본인에게 어떠한 직업상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다  
② 사직이나 폐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③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  
④ (자영업자였는데) 동종 또는 다른 업종으로 사업 규모를 키웠다  
⑤ (자영업자였는데) 동종 또는 다른 업종으로 사업 규모를 줄였다  
⑥ (자영업자였는데) 사업규모는 비슷하나 사업환경을 개선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였다  
⑦ 그동안 쉬고 있었지만 경제활동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다  
⑧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B13-1. (문B9에서 한 문항이라도 ①응답자)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이전을 받았을 때 배우자의 직업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다  
② 사직이나 폐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③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  
④ (자영업자였는데) 동종 또는 다른 업종으로 사업 규모를 키웠다  
⑤ (자영업자였는데) 동종 또는 다른 업종으로 사업 규모를 줄였다  
⑥ (자영업자였는데) 사업규모는 비슷하나 사업환경을 개선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였다  
⑦ 그동안 쉬고 있었지만 경제활동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다  
⑧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⑨ 이전 당시에는 배우자가 없었다

B14. (B9에서 한 문항이라도 상속으로 응답한 경우)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받기 전 상속을 기대하였습니까?

- ① 예 ( → 문 B14-1로)    ② 아니오 ( → 문 B15로)    (3) 상속 받은 적 없음

B14-1. (문 B14의 ①응답자만) 기대하셨다면, 상속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을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리지는 않지만 좀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②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는 않지만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리게 되었다

- ③ 부모님을 직접 모시며 부양하게 되었다
- ④ 상속을 받기 위해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B15.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기 위해 생전에 계획적으로 상속을 준비하셨거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B16.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지금 다음과 같은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그 돈을 향후 1년간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사용하실 곳과 금액을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16-1. 1억원을 지원받았을 경우

연 번	보 기	금 액
b16-1-1	부채상환	만원
b16-1-2	소비	만원
b16-1-3	저축 및 투자	만원
b16-1-4	사업자금	만원
b16-1-5	기타(구체적으로: )	만원

B16-2. 5억원을 지원받았을 경우

연 번	보 기	금 액
b16-2-1	부채상환	만원
b16-2-2	소비	만원
b16-2-3	저축 및 투자	만원
b16-2-4	사업자금	만원
b16-2-5	기타(구체적으로: )	만원

B16-3. 10억원을 지원받았을 경우

연 번	보 기	금 액
b16-3-1	부채상환	만원
b16-3-2	소비	만원
b16-3-3	저축 및 투자	만원
b16-3-4	사업자금	만원
b16-3-5	기타(구체적으로: )	만원

B16-4. 50억원을 지원받았을 경우

연 번	보 기	금 액
b16-4-1	부채상환	만원
b16-4-2	소비	만원
b16-4-3	저축 및 투자	만원
b16-4-4	사업자금	만원
b16-4-5	기타(구체적으로: )	만원

※ 귀하는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변화를 선택할 것입니까?

B17a. 귀하는 부모로부터 자산 및 자금을 이전받았을 때, 현재 직장(사업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시거나, 현재 일자리에서는 단축이 불가능할 경우 이직(사업 전환 포함)을 통해서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실 것입니까?

- ① 금액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 → 문 B17-1에서 본인 문항 응답)
- ② 얼마를 받더라도 단축하지 않을 것이다.

B17b. (B3=①, 배우자가 경제활동 중인 경우에만) 귀하의 배우자는 부모로부터 자산 및 자금을 이전받았을 때, 현재 직장(사업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시거나, 현재 일자리에서는 단축이 불가능할 경우 이직(사업 전환 포함)을 통해서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실 것입니까?

- ① 금액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 → 문 B17-1에서 배우자 문항 응답)
- ② 얼마를 받더라도 단축하지 않을 것이다.

B17-1. 아래의 금액만큼 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여가생활, 삶의 목표,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상하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과 이에 따른 연봉은 얼마입니까?

(각 항목별 해당없음 표기)

근로시간 단축방법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재의 직장 또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되 근로시간만 단축</li> <li>②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li> <li>③ (임금근로자) 직장은 그만두고 창업하여 사업시작</li> <li>④ (사업자) 현재의 업종은 유지한 채 사업규모를 축소</li> <li>⑤ (사업자) 시간활용이 보다 자유로운 업종으로 변경하여 근로시간 단축</li> <li>⑥ 사직이나 폐업을 하여 경제활동 중단</li> </ul>

연번	보기	구분		하루 평균 근로시간 (근로일 기준)	현재 일자리에서의 연봉 혹은 연간 사업소득(세전)	
1	현재	본인		하루    시간	연        만원	
		배우자		하루    시간	연        만원	
	보기	구분	단축 여부	(단축:①만) 예상하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 (근로일 기준)	(단축:①만) 예상하는 연봉 혹은 연간 사업소득(세전)	(단축:①만) 근로시간 변경방법
2	10억원	본인	①예 ②아니오	하루    시간	년        만원	
		배우자	①예 ②아니오	하루    시간	년        만원	
3	30억원	본인	①예 ②아니오	하루    시간	년        만원	
		배우자	①예 ②아니오	하루    시간	년        만원	
4	50억원	본인	①예 ②아니오	하루    시간	년        만원	
		배우자	①예 ②아니오	하루    시간	년        만원	
5	70억원	본인	①예 ②아니오	하루    시간	년        만원	
		배우자	①예 ②아니오	하루    시간	년        만원	
6	100억원	본인	①예 ②아니오	하루    시간	년        만원	
		배우자	①예 ②아니오	하루    시간	년        만원	

## 통계 분류 조사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 중
- ⑤ 대학교 졸업
- ⑥ 대학원 재학 이상
- ⑨ 모름/무응답

### 부록 Ⅲ. 설문조사를 통한 자산이전에 대한 인식 분석

본 보고서 제IV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세대의 증여 성향, 자녀세대의 소비성향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증여와 소비 등에 대한 금전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자산이전의 동기, 상속·증여세에 대한 인식, 자산이전 이후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의 변화 등에 관한 질문도 포함되었기에 그에 대한 분석을 부록에서 제시한다.

#### 1. 부모세대

자산이전과 관련된 동기 및 인식은 부모세대의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부부합산 순자산을 기준으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그룹에 속한 응답자 수는 각각 100명, 100명, 50명이다. 또한 자녀에게 지원한 총금액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에 현재까지 본인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그룹에 속한 응답자 수는 각각 124명, 82명, 44명이다.

〈부록 표 Ⅲ-1~2〉에서는 자금지원을 더 많이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부록 표 Ⅲ-1〉은 자산규모별, 〈부록 표 Ⅲ-2〉는 현재까지 자녀에게 지원한 총금액규모별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가 경제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지원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20.8%로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산규모와 자녀지원 규모가 가장 큰 집단에서는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해 자금지원을 더 많이 하지 않았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충분히 지원했다는 응답은 자녀지원 규모가 클수록 높았으며, 증여세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자산 규모와 자녀지원 규모가 클수록 높아졌다.

〈부록 표 Ⅲ-1〉 자금지원을 더 많이 하지 않은 이유(자산규모별)

(단위: %)

구분	총자산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전체
여유자금 부족	21	7	2	11.6
충분히 지원	24	19	18	20.8
스스로 해결	54	69	66	62.4
증여세 부담	0	2	8	2.4
기타	1	3	6	2.8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2〉 자금지원을 더 많이 하지 않은 이유(총지원규모별)

(단위: %)

구분	자녀 총지원금액			
	1억원 미만	1억~3억원	3억원 이상	전체
여유자금 부족	10.5	18.3	2.3	11.6
충분히 지원	14.5	25.6	29.6	20.8
스스로 해결	68.6	52.4	63.6	62.4
증여세 부담	0.8	3.7	4.6	2.4
기타	5.7	0	0	2.8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3~7〉에서는 각각 자녀의 결혼, 주택 마련, 창업 또는 사업자금, 생계지원, 재산증식 등의 경우별 자금지원 의사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부모의 자산 규모가 클수록 지원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 주택 마련, 생계지원의 경우 90% 이상이 반드시 지원 또는 지원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지만 창업 또는 사업확장 및 전환, 재산 증식의 경우 지원의사를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록 표 III-3〉 자녀가 결혼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단위: %)

구분	총자산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전체
반드시 지원	26	40	40	34.4
지원할듯	69	56	54	60.8
지원하지 않을듯	4	4	4	4.0
절대 지원 안 함	1	0	2	0.8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III-4〉 자녀가 주택 마련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단위: %)

구분	총자산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전체
반드시 지원	11	23	30	19.6
지원할 듯	74	75	66	72.8
지원하지 않을 듯	14	2	4	7.2
절대 지원 안 함	1	0	0	0.4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III-5〉 자녀가 창업이나 사업확장 및 전환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단위: %)

구분	총자산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전체
반드시 지원	0	5	14	4.8
지원할 듯	51	66	72	61.2
지원하지 않을 듯	46	26	12	31.2
절대 지원 안 함	3	3	2	2.8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6〉 자녀가 생계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단위: %)

구분	총자산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전체
반드시 지원	23	41	52	36
지원할 듯	69	53	46	58
지원하지 않을 듯	8	6	2	6
절대 지원 안 함	0	0	0	0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7〉 자녀의 재산 증식을 위하여

(단위: %)

구분	총자산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전체
반드시 지원	2	7	8	5.2
지원할 듯	45	47	46	46.0
지원하지 않을 듯	50	46	44	47.2
절대 지원 안 함	3	0	2	1.6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8-9〉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0에 가까울수록 자금을 지원하면 자녀가 나한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고, 10에 가까울수록 자녀가 잘 살기 바라고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자산규모가 클수록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고 지원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지만 다른 집단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자녀에게 지원한 총금액별 구분에서는 뚜렷한 패턴을 찾기 어려웠다. 자산 또는 현재까지 지원규모에 따른 부모 집단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록 표 Ⅲ-8〉 자녀에게 자금 지원 이유(자산규모별)

구분	총자산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전체
평균	8.97	9.08	9.32	9.08

주: 0~10 사이의 정수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의 평균이며, 0에 가까울수록 자금을 지원하면 자녀가 나한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 10에 가까울수록 자녀가 잘 살기 바라고 때문에 지원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9〉 자녀에게 자금 지원 이유(총지원규모별)

구분	자녀 총지원금액			
	1억원 미만	1억~3억원	3억원 이상	전체
평균	9.14	8.87	9.34	9.08

주: 0~10 사이의 정수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의 평균이며, 0에 가까울수록 자금을 지원하면 자녀가 나한테 잘 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 10에 가까울수록 자녀가 잘 살기 바라고 때문에 지원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10~11〉은 자금지원을 통해 자녀에게 바라는 대가에 대한 응답이다.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바란다는 응답이었다. 이 문항에 대한 답변도 자산 또는 현재까지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구분한 집단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부록 표 Ⅲ-10〉 자금지원을 통해 자녀에게 바라는 대가

(단위: %)

구분	총자산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전체
대가 불필요	57	51	60	55.2
자녀와 친밀한 관계	30	46	32	36.8
금전적인 보상	13	3	8	8.0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11〉 자금지원을 통해 자녀에게 바라는 대가

(단위: %)

구분	자녀 총지원금액			
	1억원 미만	1억~3억원	3억원 이상	전체
대가 불필요	54.8	54.9	56.8	55.2
자녀와 친밀한 관계	37.1	35.4	38.6	36.8
금전적인 보상	8.1	9.8	4.6	8.0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12~13〉은 삶이 5년 정도 남았다고 가정할 경우 남은 생애 동안의 소비와 상속에 관한 계획이다.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하며 살다가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은 생애 또한 가능한 많은 재산을 나의 소비에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13.6%)이 소비수준을 줄여서 자녀에게 가능한 많은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응답한 비율(4.8%)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다.

〈부록 표 Ⅲ-12〉 삶이 5년 정도 남았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 및 상속 계획

(단위: %)

구분	총자산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전체
소비축소 상속확대	7	4	2	4.8
현재 소비수준 유지	78	82	88	81.6
소비확대	15	14	10	13.6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13〉 삶이 5년 정도 남았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 및 상속 계획

(단위: %)

구분	자녀 총지원금액			
	1억원 미만	1억~3억원	3억원 이상	전체
소비축소 상속확대	4.0	6.1	4.6	4.8
현재 소비수준 유지	82.3	76.8	88.6	81.6
소비확대	13.7	17.1	6.8	13.6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14~15〉에서는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0에 가까울수록 상속을 계획할 경우 자녀가 나에게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10에 가까울수록 나의 사후에 자녀가 잘 살기 바라고 때문이다. 조사 결과 자산 규모 또는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 규모로 구분한 집단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록 표 Ⅲ-14〉 상속 동기(자산규모별)

구분	총자산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전체
평균	9.01	8.78	8.96	8.91

주: 0~10 사이의 정수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의 평균이며, 0에 가까울수록 상속을 계획할 경우 자녀가 나한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10에 가까울수록 자녀가 잘 살기 바라고 때문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15〉 상속 동기(총지원규모별)

구분	자녀 총지원금액			
	1억원 미만	1억~3억원	3억원 이상	전체
평균	9.01	8.79	8.83	8.91

주: 0~10 사이의 정수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의 평균이며, 0에 가까울수록 상속을 계획할 경우 자녀가 나한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10에 가까울수록 자녀가 잘 살기 바라고 때문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16~17〉은 증여와 상속 중 자산이전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금이나 자녀의 태도와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재산을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상속한다는 응답비율이 28.8%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생계에 필요한 돈은 필요할 때마다 증여하고, 사망 시 남은 돈은 자연스럽게 상속하겠다는 응답비율이 26.0%로 뒤를 이었다. 자산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현재까지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이 클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부록 표 III-16〉 증여와 상속 결정방식(자산규모별)

(단위: %)

구분	총자산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전체
세금	7	16	14	12.0
생계 증여	19	28	36	26.0
자녀행동 증여	4	4	0	3.2
배분결정 증여	9	17	22	14.8
자녀행동 상속	18	15	10	15.2
최대한 보유	43	20	18	28.8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III-17〉 증여와 상속 결정방식(총지원규모별)

(단위: %)

구분	자녀 총지원금액			
	1억원 미만	1억~3억원	3억원 이상	전체
세금	10.5	13.4	13.6	12.0
생계 증여	26.6	20.7	34.1	26.0
자녀행동 증여	2.4	4.9	2.3	3.2
배분결정 증여	13.7	13.4	20.5	14.8
자녀행동 상속	16.1	15.9	11.4	15.2
최대한 보유	30.7	31.7	18.2	28.8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 세금: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 생계 증여: 자녀가 생계에 필요한 돈은 필요할 때마다 지원하고(증여), 사망 시 남은 돈은 자연스럽게 상속하겠다.
- 자녀행동 증여: 먼저 증여해야 자녀가 나에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되도록 상속보다는 증여를 할 것이다.
- 배분결정 증여: 내가 원하는 방식 및 비율로 자녀들에게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 상속보다는 증여를 할 것이다.

- 자녀행동 상속: 마지막 사망 시까지 재산을 내가 갖고 있어야 자녀가 나에게 잘할 것이기에 증여 대신 상속을 할 것이다.
- 최대한 보유: 세금이나 자녀의 태도와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재산을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상속할 것이다.

〈부록 표 Ⅲ-18~19〉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자문 또는 상담을 받았거나 관련 제도에 대해 직접 검색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전체 응답자의 11.6%만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자산규모가 클수록,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이 클수록 그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Ⅲ-18〉 자문(컨설팅) 또는 직접 검색 경험(자산규모별)

구분	총자산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전체
있다 비율	5	13	22	11.6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19〉 자문(컨설팅) 또는 직접 검색 경험(총지원규모별)

구분	자녀 총지원금액			
	1억원 미만	1억~3억원	3억원 이상	전체
있다 비율	8.06	10.98	22.73	11.6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20~21〉은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 차이가 상속 및 증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영향을 준다는 응답 비율이 58.4%이며, 그 비율은 자산규모가 클수록,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Ⅲ-20〉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 차이가 상속/증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자산규모별)

(단위: %)

구분	총자산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전체
매우 그렇다	3	6	18	7.2
그렇다	52	52	48	51.2
보통이다	28	30	20	27.2
아니다	16	12	14	14
매우 아니다	1	0	0	0.4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21〉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 차이가 상속/증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총지원규모별)

(단위: %)

구분	자녀 총지원금액			
	1억원 미만	1억~3억원	3억원 이상	전체
매우 그렇다	5.7	8.5	9.1	7.2
그렇다	50.8	51.2	52.3	51.2
보통이다	27.4	29.3	22.7	27.2
아니다	15.3	11.0	15.9	14
매우 아니다	0.8	0	0	0.4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22~27〉은 여유자금이 각각 5억원, 10억원, 50억원 생겼을 경우 더욱 더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생활, 자녀에게 자금이전, 저축 및 투자, 사업자금 등에 각각 얼마를 쓸지에 대한 질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유자금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저축 및 투자에 쓰겠다고 응답하였으며, 5억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급스러운 생활을 위한 본인의 소비와 자녀에게 이전하는 금액에 각각 1억원 정도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유자금이 10억원일 경우 자녀에게 이전하는 금액이 본인의 호화로운 소비를 위해 쓰는 금액의 1.5배 가까이 많으며, 여유자금이 50억원일 경우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유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본인의 고급스러운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금액의 증가속도보다 자녀에게 이전하는 금액의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III-22〉 여유자금 5억원 사용방법(자산규모별)

(단위: 만원)

구분	총자산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전체
고급스러운 생활	10,250	10,120	11,860	10,520
자녀에게 이전	10,440	12,230	8,600	10,788
저축 및 투자	24,950	23,720	24,800	24,428
사업자금	3,590	3,850	3,940	3,764
기타	770	80	800	5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III-23〉 여유자금 5억원 사용방법(총지원금액별)

(단위: 만원)

구분	자녀 총지원금액			
	1억원 미만	1억~3억원	3억원 이상	전체
고급스러운 생활	10,685	9,500	11,955	10,520
자녀에게 이전	10,379	10,610	12,273	10,788
저축 및 투자	24,863	25,244	21,682	24,428
사업자금	3,831	3,488	4,091	3,764
기타	242	1,159	0	5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III-24〉 여유자금 10억원 사용방법(자산규모별)

(단위: 만원)

구분	총자산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전체
고급스러운 생활	19,160	19,130	19,500	19,216
자녀에게 이전	27,460	29,900	25,000	27,944
저축 및 투자	43,750	42,370	44,900	43,428
사업자금	7,430	6,000	6,600	6,692
기타	2,200	2,600	4,000	2,72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III-25〉 여유자금 10억원 사용방법(총지원규모별)

(단위: 만원)

구분	자녀 총지원금액			
	1억원 미만	1억~3억원	3억원 이상	전체
고급스러운 생활	19,710	19,024	18,182	19,216
자녀에게 이전	27,427	26,280	32,500	27,944
저축 및 투자	42,661	45,146	42,386	43,428
사업자금	7,339	6,683	4,886	6,692
기타	2,863	2,866	2,045	2,72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III-26〉 여유자금 50억원 사용방법(자산규모별)

(단위: 만원)

구분	총자산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이상	전체
고급스러운 생활	65,470	74,470	74,800	70,936
자녀에게 이전	141,700	168,150	141,600	152,260
저축 및 투자	230,780	204,180	227,900	219,564
사업자금	34,950	26,250	23,000	29,080
기타	27,100	26,950	32,700	28,16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III-27〉 여유자금 50억원 사용방법(총지원규모별)

(단위: 만원)

구분	자녀 총지원금액			
	1억원 미만	1억~3억원	3억원 이상	전체
고급스러운 생활	75,419	67,463	64,773	70,936
자녀에게 이전	147,258	139,085	190,909	152,260
저축 및 투자	216,395	231,988	205,341	219,564
사업자금	31,411	30,793	19,318	29,080
기타	29,516	30,671	19,659	28,160

자료: 저자 작성

## 2. 자녀세대

자산이전에 대한 경험 또는 인식과 관련하여 자녀세대에게는 자산이전을 받은 후 부모님과과의 관계 변화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더 받지 못한 이유를 질문하였다. 현재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총지원금액별로 응답이 달라질 수 있기에 지원받은 금액의 합이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각 그룹별 표본 수는 2억원 미만 132명, 2~5억원 76명, 5억원 이상 42명이다.

〈부록 표 Ⅲ-28〉은 자금 지원을 받은 후 부모님과의 관계 변화에 관한 질문이다. 자금 지원을 받은 후 부모님과의 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66.23%로 가장 많았으며 좀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는 응답(19.74%)과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는 않았지만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리게 되었다는 응답(9.65%)이 그다음 순이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가장 큰 집단에서 부모님을 좀 더 자주 방문하거나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렸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록 표 Ⅲ-28〉 자금 지원을 받은 후 부모님과의 관계 변화

(단위: %)

구분	부모로부터 총지원금액			
	2억원 미만	2억~5억원	5억원 이상	전체
좀 더 자주 방문	10.9	27.6	28.6	19.7
금전적으로 도움	8.2	7.9	16.7	9.7
직접 부양	0	1.3	2.4	0.9
자금지원 받았지만 관계에 변화없음	76.4	59.2	52.4	66.2
자금지원이 기대보다 적어 관계에 변화없음	4.6	4.0	0	3.5
자금지원 받았지만 관계가 소원해짐	0	0	0	0
자금지원이 기대보다 적어 관계가 소원해짐	0	0	0	0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Ⅲ-29〉는 부모님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더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다.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는 자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을 한 비율이 52.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받았다는 응답(32%)과 부모님께서 더 지원하실 만큼의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는 응답(12.8%) 순이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클수록 부모님의 여유자금이 부족했다는 응답비율은 낮아지고, 필요한 만큼 지원받았다는 응답비율은 높아졌다.

〈부록 표 Ⅲ-29〉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더) 받지 못한 이유

(단위: %)

구분	부모로부터 총지원금액			
	2억원 미만	2억~5억원	5억원 이상	전체
부모님의 여유자금 부족	17.4	9.2	4.8	12.8
필요한 만큼 지원받음	18.2	39.5	61.9	32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는 자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	61.4	50	31.0	52.8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음	0.8			0.4
증여세 부담	2.3	1.3	2.4	2
기타	0	0	0	0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저자 작성

## 상속·증여세제가 세대 간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

오종현 · 최승문 · 강성훈

본 보고서는 상속·증여세가 세대 간 자산이전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고자산가 부모세대 및 고자산가 부모의 자녀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상속세·증여세 관련 연도별 시계열 자료 및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방법별로 상속·증여세 개편이 세대 간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소 상이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였다. 우선 모형분석 결과 상속·증여세가 완화될 경우 자산이전의 규모가 커지며 시기도 앞당겨진다. 그 결과 증여를 받은 자녀세대의 소비가 증가하지만 부모세대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어 전체적인 소비 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실증분석 결과 증여세 세율이 높아질 경우 증여 규모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경우 세대 간 자산이전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증분석의 추정 결과 소득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탄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 증여를 통한 사적이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가장 비관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즉 부모세대의 경우 상속·증여세 제도가 완화되더라도 자녀

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현상은 고자산가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그리고 자녀세대의 경우 부모로부터 자산이전을 받을 경우 대부분 부채상환 및 저축에 사용하며 극히 일부만을 소비에 쓰겠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세대의 결과와 자녀세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상속·증여세 제도 완화로 인한 소비 증가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침체된 소비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해 증여세 완화를 통한 세대 간 자산이전이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현재 국가의 많은 자산이 고령자층에 묶여 있어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있기에, 증여세 완화를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층으로 자산이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이 같은 세제 개편은 세대 간 자산이전에 대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소비 진작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 The Impact of Estate and Gift Taxes on Inter Vivos Wealth Transfer and Consumption

---

Jonghyeon Oh · Sungmun Choi · Sung Hoon Kang

We analyze the effects of estate and gift taxation on wealth transfers between generations and on aggregate consumption. For a comprehensive analysis, we combine three methodologies; a survey on parents with high net worth and on children with such parents, general equilibrium model featuring heterogeneous agents, and empirical analysis using annual data on estate and gift taxation and other aggregate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se studies, we draw general conclusions and policy suggestions.

Depending on the methodology, the effect of estate and gift taxation on wealth transfers differs, but the general conclusion that it does not affect aggregate consumption is the same across these analyses. First, in the general equilibrium model, we get the result that the estate and gift taxation affects the size and timing of wealth transfers. Therefore, if we reduce the burden of estate and gift taxation, there will be more wealth transfers early in life. Even in this case, however, the aggregate consumption does not change much since the increased consumption of

children is mostly offset by decreased consumption of parents. Second, in the empirical analysis, we observe that increases in gift tax rates lead to less wealth transfer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from the general equilibrium model. In this case, we can induce more wealth transfers by lowering the gift tax rates. But the empirical results find very low levels of income elasticity of consumption, i.e. consumption does not increase much as income increases. Therefore, the increases in private transfer income from wealth transfers will not increase consumption very much. Finally, in the survey analysis, we get the most pessimistic results. Parents answer that they will not increase wealth transfer very much even if the gift tax burden is reduced and this pattern is more prominent among parents with very high levels of net worth. Moreover, children answer that they will not increase consumption very much even when they get wealth transfers from parents and they spend most of it on debt repayment and savings. Therefore, the effect of estate and gift taxation on consumption will be very limited.

Reducing gift taxation is being mentioned as a policy alternative for stimulating consumption. Proponents argue that by encouraging wealth transfers to young people who have higher spending propensities than older people, the aggregate consumption will increase. The results of this report, however, suggest that such tax reform may generate more wealth transfers between generations but will not be a good policy tool for stimulating aggregate consumption.



## ■ 저자약력

### 오종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졸업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최승문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경제학과 졸업  
미국 Prince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강성훈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졸업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응용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선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16-05

## 상속·증여세제가 세대 간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

---

발행	행	2016년 12월 30일
저자	자	오종현·최승문·강성훈
발행인	인	박형수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jpf.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가	9,000원
조판 및 인쇄	쇄	일지사
I S B N		978-89-8191-842-2 93320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